

연구보고서 2025-0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이주연

류정희·양미연·백지선·조휘래·양은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미연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백지선	University of St Andrews 박사수료
	조휘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양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085-4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06>

발|간|사

아동학대는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개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동의 삶의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신고접수와 판단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아직까지 공개되거나 혹은 활발히 연구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을 주제로 실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험과 더불어 가상의 아동학대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여, 이들의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학대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 등에 있어서 공공의 의사결정 주체, 기준 등 정당성 확보 방식과 의사결정 저해요인 등에 주목하였으며, 해외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방안은 향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이주연 부연구위원의 책임으로 류정희 연구위원, 조휘래 연구원, 양은정 연구원과 계명대학교 양미연 교수,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백지선 선생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귀중한 조언을 해 준 본 연구원의 이상정 연구위원과 강릉원주대학교의 이세원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5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이론적 논의	19
제2절 선행연구 분석	54
제3절 소결	66
제3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현황과 어려움 ...	71
제1절 분석 개요	73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	78
제3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	108
제4절 소결	123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127
제1절 미국 사례	129
제2절 영국 사례	166
제3절 시사점	205

제5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특성	213
제1절 조사 개요	215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비넷 조사 결과	225
제3절 시사점	269
제6장 결론	27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75
제2절 정책적 개선 방안	279
참고문헌	293
부록	307
1차 심층인터뷰 조사표	307
Abstract	309

표 목차



〈표 2-1〉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	20
〈표 2-2〉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범위	21
〈표 2-3〉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	22
〈표 2-4〉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23
〈표 2-5〉 사례 판단 결과 (아동학대 판단율)	30
〈표 2-6〉 시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및 아동학대 판단율(2023년 기준)	31
〈표 2-7〉 즉각분리 사례 수	32
〈표 2-8〉 피해아동 상황 - 보호 조치 유형별	33
〈표 2-9〉 피해아동 전체 사례 종결 현황	34
〈표 2-10〉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36
〈표 2-1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 현황 및 1인 담당 건수(2022.7.5. 기준)	40
〈표 2-12〉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역할과 본 연구 대상으로서 공공의 범위	42
〈표 2-13〉 의사결정 생태학의 체계별 요인	52
〈표 3-1〉 주요 질문 내용	76
〈표 3-2〉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77
〈표 3-3〉 아동학대 의심 사례	81
〈표 3-4〉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현장조사 시 대면조사 대상자	84
〈표 3-5〉 지자체 사례 판단 시 활용 가능 회의	96
〈표 3-6〉 이원화된 판단 구조와 판단 불일치 경우의 조합	97
〈표 3-7〉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조치 유형별 특성	100
〈표 3-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	109
〈표 4-1〉 플로리다주의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의심 사례 건수	132
〈표 4-2〉 연도별 아동보호 조사를 받은 아동의 수	132
〈표 4-3〉 연도별 학대피해 아동 수, 아동학대 판단율, 피해아동 발견율	133
〈표 4-4〉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수와 비율	134
〈표 4-5〉 플로리다 법령에 따른 아동학대, 방임, 유기의 정의	140
〈표 4-6〉 플로리다 아동가족국 아동학대 지표-27가지의 아동학대	141

〈표 4-7〉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이나 감독이 필요한 '특수 상황' 분류	141
〈표 4-8〉 일반상담 판단 기준 및 일반상담 결정 전 슈퍼바이저와 상의 사항	143
〈표 4-9〉 조사 유형별 차이	147
〈표 4-10〉 현재위험 평가도구의 10가지 위험위험	150
〈표 4-11〉 보호역량 평가 항목	155
〈표 4-12〉 플로리다 아동보호 조사관 최종 안전 판단	156
〈표 4-13〉 플로리다 아동보호 조사관 신고 사례 최종 판단 항목	158
〈표 4-14〉 아동보호 단계별 조치된 아동 수	170
〈표 4-15〉 아동보호 의뢰 양식 내용	173
〈표 4-16〉 다기관 논의 결정을 위한 핵심 기관 사례 구분	174
〈표 4-17〉 '심각한 해' 평가 요소	176
〈표 4-18〉 위험 평가도구 - 일반 위험 지표(아동)	182
〈표 4-19〉 위험 평가도구 - 일반 위험 지표(부모/보호자)	183
〈표 4-20〉 위험 평가도구 - 일반 위험 지표(환경)	184
〈표 4-21〉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수와 특성(2013, 2022, 2023)	194
〈표 4-22〉 아동보호 훈련 강의 개요	204
〈표 5-1〉 비넷별 시나리오의 세부 특성	220
〈표 5-2〉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221
〈표 5-3〉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223
〈표 5-4〉 참여자 특성	224
〈표 5-5〉 【비넷 ①-1단계】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27
〈표 5-6〉 【비넷 ①-2단계】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29
〈표 5-7〉 【비넷 ①-3단계】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31
〈표 5-8〉 【비넷 ②-1단계】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34
〈표 5-9〉 【비넷 ②-2단계】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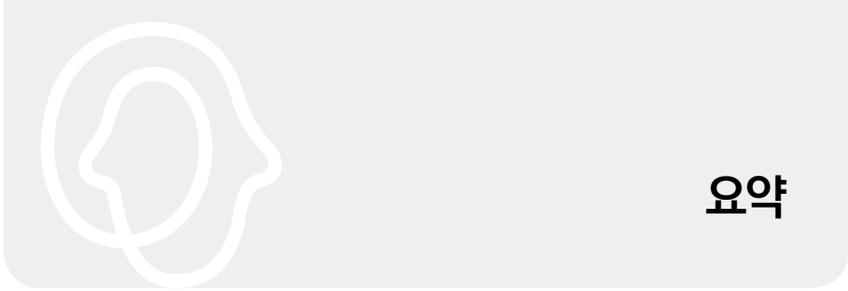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표 목차



〈표 5-10〉 【비넷 ②-3단계】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39
〈표 5-11〉 【비넷 ③-1단계】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42
〈표 5-12〉 【비넷 ③-2단계】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44
〈표 5-13〉 【비넷 ③-3단계】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47
〈표 5-14〉 【비넷 ④】 학교교사 - 장애아동 - 정서학대 우려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51
〈표 5-15〉 【비넷 ⑤】 한부모가정 - 방임 우려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54
〈표 5-16〉 신고 건의 접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요인	256
〈표 5-1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개인 요인	258
〈표 5-1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례 요인	260
〈표 5-19〉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조직 요인	262
〈표 5-20〉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인	263
〈표 5-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개인 요인	265
〈표 5-2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례 요인	267
〈표 5-2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조직 요인	268
〈표 5-2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인	26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학대피해아동 보호서비스 절차	25
[그림 2-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추이	29
[그림 2-3] 연도별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규모	38
[그림 2-4] 연도별 전국 평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	39
[그림 2-5] 아동학대 대응 절차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 지점	44
[그림 2-6] 의사결정 생태체계(Decision-Making Ecology)	54
[그림 4-1] 플로리다 아동학대 대응 단계 및 업무 주체	130
[그림 4-2] 플로리다주 안전 의사결정 방법 흐름도	135
[그림 4-3] 플로리다주 안전 결정 공식(Safety Decision-Making Formula)	156
[그림 4-4] 스코틀랜드 아동보호 절차의 개요	169
[그림 4-5] 국가실천모델 프레임워크	171
[그림 4-6] 아동보호 의뢰 양식	172
[그림 4-7] 다기관 논의 보고서 양식	177
[그림 4-8] 방임 평가도구 척도(위생)	187
[그림 4-9] 방임 평가도구 척도(가정안전)	187
[그림 4-10] 방임 평가도구 척도(감수성)	188
[그림 4-11]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수 (2000~2023)	193
[그림 4-12]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아동보호 계획 회의 소집 원인 (2022~2023) ..	195
[그림 4-13] 아동복지시스템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개입	206
[그림 5-1] 학대 판단의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영향요인	257
[그림 5-2] 비넷 ①~비넷 ③ 단계별 응답자의 평균 학대 판단 결정 비율	259
[그림 5-3] 아동 분리의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영향요인	263
[그림 5-4] 비넷 ①~비넷 ③ 단계별 응답자의 평균 아동 분리 결정 비율	26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의 국가 책임성 강화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공공성·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시군구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과거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해 왔던 아동학대 대응 업무 중 아동학대 현장조사, 판단 및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현재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3년 연말 기준으로 총 880명이 배치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아동과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특성상, 이들의 의사결정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른 시간 제약이 있고, 폭력 등 심각한 갈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크며, 근거 자료가 불완전하고 복잡한 특성이 있어, 담당 인력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다수는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 민원, 징계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보직 변경이나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이후에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 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 현황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신고 사례 접수 결정, 사례 판단 결정, 아동 분리 결정, 사례 종결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신고 사례 접수 결정은 대체로 비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 문의 사례나 학대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접수 단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판단 결정 시에는 법적 정의, 매뉴얼 기준, 아동학대 판단 척도, 경찰 의견, 교육감 의견서 등을 활용하며, 단독 판단과 공동 판단(사례회의 등)이 병행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학대로 판단하였음에도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동 분리 조치는 즉각적인 분리 여부와 장기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심각한 학대 사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사례 종결 결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이나,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결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감은 업무 경험이 장기화될수록 완화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슈퍼비전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강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수준이 낮아 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나. 국외 사례의 분석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모든 대응 단계에서 ‘안전’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으며, 조사와 서비스 제공의 초점을 아동보호에 둔다. 또한, 아동 분리나 예외적인 사례의 경우 슈퍼바이저의 승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아동 분리는 법원에서 최종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다기관 협업과 다전문가 논의를 강조하며, 심각한 사례에서는 아동 청문회를 통해 아동 중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지표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관련 모든 전문 인력에게 기본적인 보호 훈련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신고된 사례의 접수 선별성을 높여, 과잉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접수를 결정하는 인력의 역할이 크고 전문적이며, 단독 판단이 아닌, 팀 단위(미국)와 다기관 차원(영국)의 의사결정을 활용한다.

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특성과 영향요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고 접수 및 학대 판단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은 다층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공무원의 기존 사례 경험이 많을수록 신고 접수의 선별성이 높아지며, 자녀 유무나 민감한 성격 또한 학대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사례 요인으로서 신고 내용의 정보가 부족할수록 접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4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학대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비행 또는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학대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역량, 가정환경 및 학대 인식 수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경찰 및 사법기관의 판단과 외부의 압력 또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 분리 결정에서는 학대의 심각성, 반복성, 중복 학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다. 아동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있는지, 분리로 인해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며, 부모의 보호역량과 원가정 보호 가능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조직적 요인으로는 의료진의 견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아동 분리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며, 외부 요인으로는 지역 내 보호시설의 부족, 교육감 의견서 등의 영향이 작용하였다. 아동을 분리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 등 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도 원활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생태체계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의사결정자의 개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 전에 철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의사결정 업무 수행 전 수련 기간을 제도화하여 신규 담당자와 경력자 간의 의사결정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의사결정의 개인차를 상쇄하기 위하여 슈퍼비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사례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과 척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사례 특성에 대해서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복잡하고 불명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밀한 지침과 자료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방임 사례의 지침 미비로 인한 판단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분리 결정에 실효성 있는 객관적인 판단 척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미한 사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대로 판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례에 대해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과 연계를 통해 가정의 회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고(담당자가 1인인 지자체의 어려움 완화 시급),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단절, 의사결정의 전문성 약화,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인력의 업무 기피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슈퍼바이저 직급을 대상으로 전국에 전문경력관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부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접수 단계의 선별성을 높여, 과잉 조사로 인한 인력의 피로도와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견인하기 위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 단계별로 다기관 논의체계를 확립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방안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격차를 완화한다면,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의 국가 책임성 강화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공공성·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시군구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과거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해 왔던 아동학대 대응 업무 중 아동학대 현장조사, 판단 및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현재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0년(연말 기준) 신규 배치 인원은 292명이었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조사 공공화가 완료된 2023년 연말까지 전국에 총 880명이 배치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해왔다(보건복지부, 2025).

이들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아동과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접수할 것인지, 접수된 사례를 아동학대로 판단할 것인지 혹은 학대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것인지 등을 비롯하여 이들의 의사결정은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로 촘촘히 요구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는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하고 가족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때로 부적절한 의사결정은 재학대 발생, 아동의 회복 지연, 불필요한 아동 분리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nro, 1999).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특성상, 사안의 시급성에 따른 시간 제약이 있고, 폭력 등 강한 갈등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크며, 근거 자료가 불완전하고 복잡한 특성이 있어, 담당 인력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된다(McNellan, Gibbs, Knobel & Putnam-Horstein, 2022). 특히 아동학대 판단 및 분리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조사 및 증거수집 기술에서부터 아동상담 기술, 거부적 대상자에 대한 개입 및 복잡한 사례에 대한 판단 등의 기술을 포괄하며 단기간에 확보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배태상, 이희영, 2022; 전민경 외, 2020).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순환보직 체계에 따라 배치되므로, 아동 업무나 아동학대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배태상, 이희영, 2022; 이은주 외, 2023; 이해진 외, 2024). 전문성이 결여된 채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이들에게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업무 관련 민원과 징계에 대한 우려,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이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외, 2023; 이해진 외, 2024; 이태선, 2021; 배태상, 이희영, 2022).

이에 제도적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사례회의, 아동학대 판단 척도,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방안들을 도입해 왔으나, 이에 대한 충분성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아동학대 사례가 지닌 개인 및 가족 특성의 개별성과 문제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규격화된 매뉴얼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정선욱 외, 2023)과 더불어, 전문성이 있는 슈퍼비전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이은주 외, 2023; 김민주, 배소라, 2022), 공공의 의사결정에 충분하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대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판정 도구인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척도로는 사례별 특이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정선욱 외, 2023).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4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에서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주된 내용은 온라인교육 실시, 교육 횟수 확대 등에 그치고 있어(관계부처 합동, 2023),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듯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의 질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과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2020년) 이전 - 에 수행된 연구들은 민간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Hyun & Adams, 2016; 강지영, 2019; 강지영 외, 2017; 이경은, 김미정, 2014; 김세원 외 2020), 일부는 학대 판단(Hyun & Adams, 2016; 강지영, 2019; 강지영 외, 2017), 일부는 분리보호(이경은, 김미정, 2014; 김세원 외 2020) 결정에서의 경험과 의사결정의 영향요인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이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와 특성, 영향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조사 공공화에 따라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이후의 관련 연구는 아동학대 전달체계의 변화와 대응 인력의 현장경험 및 어려움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이은주 외, 2023; 이혜진 외, 2024; 이태선, 2021; 배태상, 이희영, 2022), 이들의 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조사 공공화 이후,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핵심 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과 어려움 및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국외의 사례를 탐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의사결정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학대피해 아동의 공공의 의사결정 경험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적으로는 향후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공공 의사결정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이론, 정책 현황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아동학대 신고의 접수 결정, 학대 사례 판정, 분리 결정, 사례 종결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구조와 기준 등의 현황과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한국과 같이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공공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각적인 의사결정 도구와 공동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아동의 최우선 이익에 기반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조사는 공공이 하고, 사례

관리는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의 단계별 의사결정 도구와 슈퍼비전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사례의 가상 시나리오인 비넷(Vignette)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일대일 인터뷰를 수행·분석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의심 사례에 대한 이들의 의사결정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학대 의사결정 이론 중 다층적이고도 맥락적인 의사결정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결정 생태학(Decision-making Ecology) 모델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의사결정 저해 요인 등 쟁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의사결정 질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분석, 심층 면접조사, 비넷 조사, 국외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의사결정 관련 현황 자료, 법·제도 및 정책자료,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 등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일대일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의 접수 결정, 아동학대 사례 판단 결정,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 사례 종결 결정 등 의사결정 단계별 현황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비넷(Vignette) 조사의 아동학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셋째,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인터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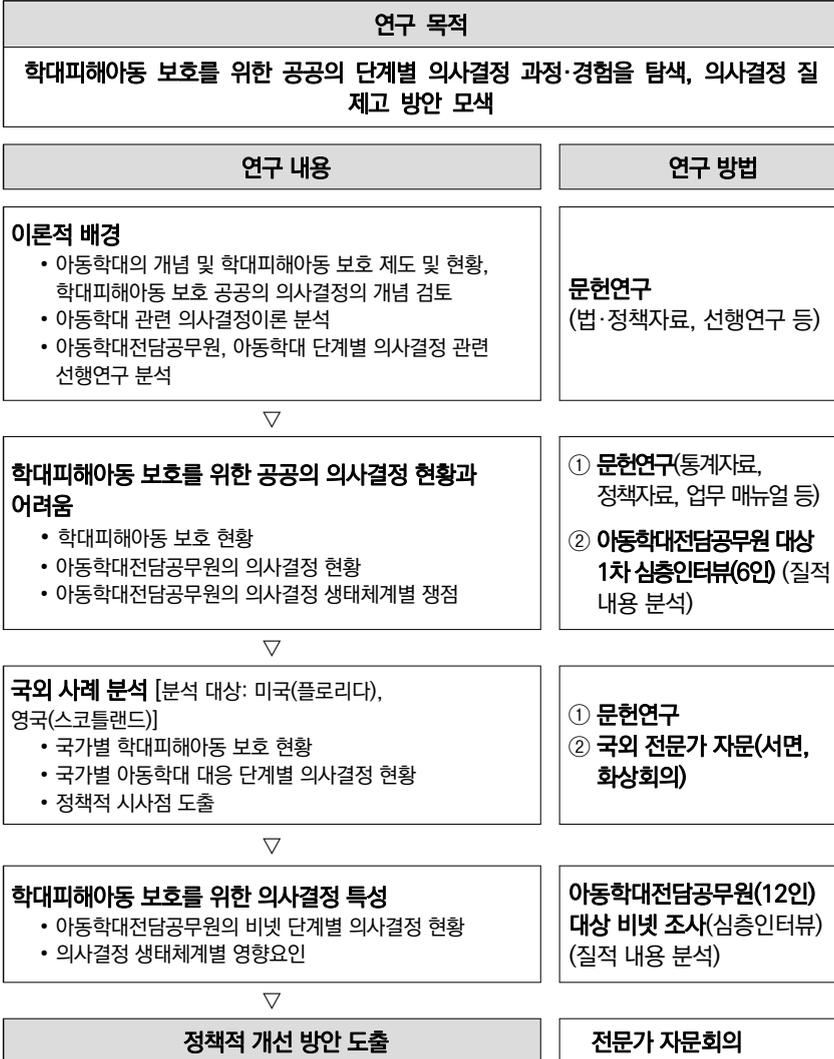
14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병행한 비넷(Vignette) 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선 일대일 심층 면접조사의 결과 확인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을 토대로, 가상의 아동학대 상황을 비넷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시나리오별로 신고 접수-학대 판단-분리 판단 등의 의사결정 의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제시된 가상 사례에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과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이들의 의사결정 특성을 살펴보았다.

넷째, 미국 플로리다주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국외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 등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계 및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비넷조사의 조사표 개발에 참고하였으며, 공공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의사결정의 질 및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소결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론적 논의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제8항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2024).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및 가혹행위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및 방임 피해를 입은 아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아동학대’의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따른 아동학대”라고 하고 있어서(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항),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간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차이는 없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와 구별되어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과 아동복지법상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제4항 가~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제2조 제6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

20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표 2-1〉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제3항,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사)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 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출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 개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아동’보다 그 범위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범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두고 있으나(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 범위는 “보호자”로 국한되어 있으며(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에는 범죄와 비범죄가 모두 포함되나 아동학대 범죄는 비범죄 사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장영인, 2022).

〈표 2-2〉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범위

범위(법적 근거)	▶	아동학대 피해아동(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 (아동학대처벌법)	비범죄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해자 범위	▶	보호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출처: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 개정); 아동학대처벌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일부 개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행위의 의도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와 더불어 행위의 결과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학대로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반면,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며, 고의적인 행위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근거하고 있다.

22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표 2-3〉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

구분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방임
행위의 주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보호자가
행위의 의도	고의로	고의로
행위의 대상	아동을	아동을
행위의 결과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유형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하거나 방임

자료: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 개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신체학대는 가해자가 신체와 도구를 사용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행위들과 완력을 사용한 위협, 유해 물질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한다(아동권리보장원, n.d.).

정서학대에는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거나 별거벗겨 내쫓는 행위, 비교, 차별 및 편애하는 행위, 따돌리는 행위, 가정폭력 목적, 유기 위협이나 내쫓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금지에 동행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노동착취,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가해 강요 행위 등이 있다(아동권리보장원, n.d.).

방임은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과 유기로 구분되며,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불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을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교육적 방임에는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경우이며, 의료적 방임은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는 아동을 버리고 가는 행위를 의미한다(아동권리보장원, n.d.)

성학대는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경험하게 하는 행위들이 포함되며, 유사성행위와 성추행, 성행위 및 성매매 등이 포함된다(아동권리보장원, n.d.).

(표 2-4)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구분	아동학대 징후
신체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리는 행위, 흉기 및 보조한 도구로 찌르는 행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드는 행위, 신체를 묶는 행위, 벽에 밀어붙이는 행위, 떠밀고 잡는 행위, 아동 던지는 행위, 거꾸로 매다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정서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성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24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구분	아동학대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 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자료: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권리보장원, n.d.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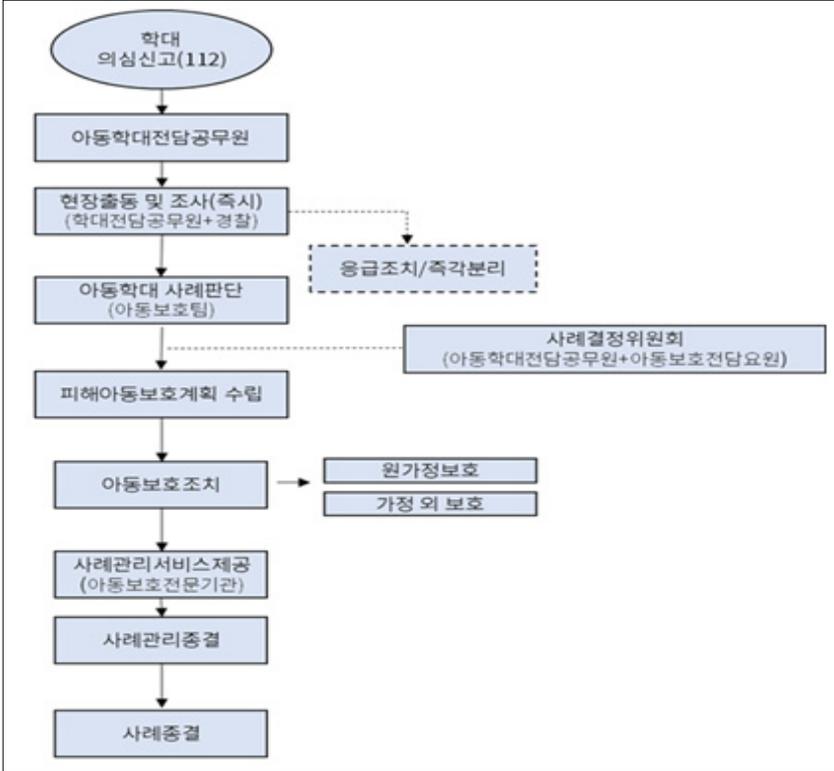
2. 학대피해아동 보호제도 및 현황

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요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된다. 신고 접수 및 조사는 공공(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이후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는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에는 피해아동의 발견과 보호를 위한 신고 접수, 현장 출동 및 조사, 응급보호, 사례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아동보호,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등과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에는 이 같은 일련의 학대 대응 절차상 서비스가 포함된다.

[그림 2-1] 학대피해아동 보호서비스 절차



출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p.75의 그림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저작권, 202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1) 신고 접수 단계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법에서 정한 특정 직군(26개 직군)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의 관계자, 보육·교육 시설의 종사자,

학원 교습소 직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경찰·119 구급대원,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의 관계자, 장애인시설의 종사자, 청소년 시설의 관계자,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된다(아동학대처벌법, 2022).

아동학대 신고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며, 112(경찰) 또는 시군구의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12로 신고된 사례는 경찰이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따른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반면, 시군구에 직접 접수된 신고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의심 여부를 판단하며, 학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상담 건으로 종결한다(이주연 외, 2023). 일반상담 건으로 종결되는 사례에는 동일 피해아동에 대한 재신고 사례, 중복신고 사례도 포함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2) 조사 단계

아동학대 조사는 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이승현 외, 2022). 현장출동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상황(예: 112 신고로 접수된 사례)의 경우 경찰이 우선 출동한다. 반면, 지자체로 신고된 사례 중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에 동행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야간이나 휴일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즉각 출동이 어려운 경우, 응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우선 출동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평일 업무시간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이승현 외, 2022).

3) 판단 단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장 판단, 자체 사례회의, 통합 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현장조사에서 학대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시 학대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 시에는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이승현 외, 2022).

학대 여부의 판단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될 경우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의료, 법률, 복지, 임상심리, 학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다. 또한, 현장조사나 자체 사례회의에서도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존 판단 결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단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운영된다(정선욱 외, 2023).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서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 사례로 사례를 종결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 피해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받도록 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학대 수준이 심각할 경우 응급조치(분리 조치) 및 사법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이승현 외, 2022).

4) 서비스 제공 단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로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연계받아 초기면접을 수행하며,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및 학대 행위자의 욕구와 상황을 평가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그리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여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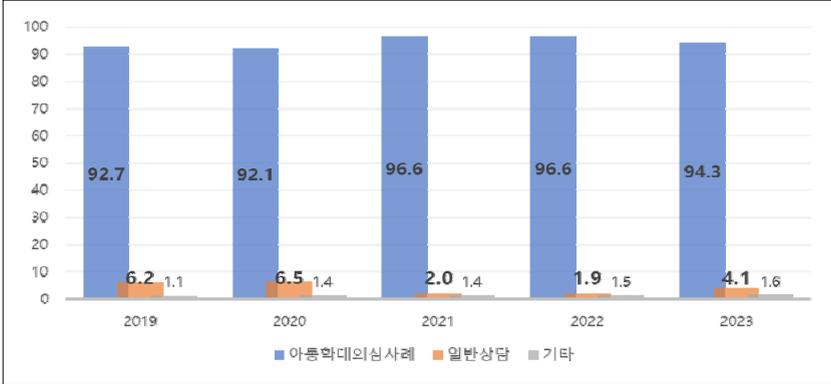
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1) 학대 신고 건의 접수 현황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90% 이상으로 신고 사례의 대부분이 접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조사 공공화 이후 더 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2019~2020년의 접수율은 92% 수준이었으나, 조사 공공화가 본격 진행된 2021~2022년은 96.6%로 다소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94.3%로 접수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조사 공공화 이전 대비 다소 높은 접수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23).

[그림 2-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추이

(단위: %)



출처: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3, p. 44에서 수정함. 저작권 2023. 보건복지부.

2) 학대 의심 사례의 판단율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아동학대로 결정하는 비율을 국내에서는 아동학대 판단율이라고 지칭하는데, 국내 아동학대 판단율은 2018년 73.4%에서 2020년 79.4%로 증가하였다가, 조사 공공화가 진행될수록 점차 감소(2021년 72.2%, 2022년 62.8%, 2023년 56.2%)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 사례 판단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이전에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일부는 조기 지원 사례로 모니터링 및 연계 등의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례의 비율은 2018년 80.5%에서 2020년 81.5%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56.2%로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각 연도).

30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표 2-5〉 사례 판단 결과(아동학대 판단율)

(단위: %, 건)

사례 판단 결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동학대 사례	73.4 (24,604)	78.3 (30,045)	79.4 (30,905)	72.2 (37,605)	62.8 (27,971)	56.2 (25,739)
조기지원 사례 ¹⁾	7.1 (2,392)	4.1 (1,577)	2.1 (827)	-	-	-
일반 사례	19.0 (6,368)	17.1 (6,549)	18.1 (7,057)	26.8 (13,945)	35.4 (15,746)	42.7 (19,530)
조사 진행 중 사례 ²⁾	0.5 (168)	0.5 (209)	0.4 (140)	1.0 (533)	1.8 (814)	1.1 (502)
계	100 (33,532)	100 (38,380)	100 (38,929)	100 (52,083)	100 (44,531)	100.0 (45,771)

¹⁾조기지원 사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20.10.1. 시행)됨에 따라 「조기지원사례」는 ‘일반 사례’로 분류

²⁾조사 진행 중 사례: ‘조사 진행중 사례’란 해당 연도에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 의심 내용의 학대 여부 판단에 필요한 근거 및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를 뜻함.
출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건복지부, 2018-2022, 국가통계포털, 사례판단 결과, 2024.12.3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4&conn_path=12: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3, p.8.

이번에는 아동학대 사례의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살펴보았다. 2023년 기준 전국의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은 3.64%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시도별 피해아동 발견율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8.06%)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5.34%)-강원특별자치도(4.75%)-제주특별자치도(4.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발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2.13%)였다(보건복지부, 2023).

2023년 기준 시도별 아동학대 판단율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65.8%)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65.2%), 강원특별자치도(64.9%), 전북특별자치도(64.8%), 충청남도(63.5%), 대구광역시(6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판단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서울특별시(43.2%), 부산광역시(49.6%), 대전광역시(4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판단율이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와 가장 낮은 서울특별시 간의 격차는 22.5%p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판단율(43.2%)의 절반을 초과하는 큰 차이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23).

〈표 2-6〉 시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및 아동학대 판단율(2023년 기준)

(단위: 명, 건, %)

지역	아동학대 의심 사례	추계아동인구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판단율 (추정치)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당)
서울특별시	6,397	1,069,644	2,766	43.2	2.59
부산광역시	2,641	402,108	1,309	49.6	3.26
대구광역시	1,801	319,865	1,133	62.9	3.54
인천광역시	3,376	423,655	1,875	55.5	4.43
광주광역시	842	220,954	470	55.8	2.13
대전광역시	1,603	206,588	731	45.6	3.54
울산광역시	2,082	169,901	1,369	65.8	8.06
세종특별자치시	321	85,565	190	59.2	2.22
경기도	12,990	2,059,291	7,612	58.6	3.70
강원특별자치도	1,417	193,577	919	64.9	4.75
충청북도	1,304	221,164	764	58.6	3.45
충청남도	2,148	312,412	1,363	63.5	4.36
전북특별자치도	1,597	234,526	1,035	64.8	4.41
전라남도	1,922	234,998	1,254	65.2	5.34
경상북도	1,933	331,860	1,099	56.9	3.31
경상남도	2,553	473,199	1,351	52.9	2.86
제주특별자치도	844	109,989	499	59.1	4.54
계	45,771	7,069,296	25,739	56.2	3.64

주 : 피해아동 발견율과 추계아동인구를 기반으로 저자가 시도별 아동학대 사례 수를 산출하였으며, 여기에 시도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수를 적용하여 아동학대 판단율(추정치)을 직접 산출하였음.
출처: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3, p. 3, p. 9;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통계청, 2023에서 수정.

3)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보호율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보호율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권한으로 조치할 수 있는 즉각분리 비율을 살펴보았다. 즉각분리 비율이 실시된 첫해인 2021년에는 3.3%이었다가 2022년에는 4.1%, 2023년에는 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대가 5.6%에 그쳤다. 즉각분리로 일시보호 조치된 보호 장소를 살펴보면, 시설 입소가 85.9%, 그다음으로 친족보호(11.4%), 가정위탁(1.9%) 등으로 나타나, 학대피해아동이 분리될 때, 가정보호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며, 주로 시설로 보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각 연도)

〈표 2-7〉 즉각분리 사례 수

(단위: %, 건)

피해아동 상황별(1)	피해아동 상황별(2)	2021	2022	2023
즉각분리 비율 ¹⁾		3.3	4.1	5.6
아동학대 판단 사례		37,605	27,971	25,739
즉각분리 (일시보호 ²⁾ 조치)	소계	1,250	1,153	1,431
	친족보호	383	132	218
	가정위탁	22	23	25
	시설입소	843	991	1,186
	기타	2	-	-
	입양	-	0	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	7	2

주: 즉각분리 제도(일시보호 조치)는 2021.3.30일부터 시행

¹⁾ 즉각분리 비율: 즉각분리 사례 수 / 전체 아동학대 판단 사례 수 * 100(단위: %)

²⁾ 일시보호: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출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건복지부, 2018-2022, 국가통계포털, 사례판단 결과, 2024.12.3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4&conn_path=12: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3, p. 22.

이번에는 학대피해아동 중 장기 분리보호되는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분리보호 조치 이후 분리 조치를 유지하는 사례의 비율은 전체의 13.4% (2018년)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3년 기준 8.0%로 나타났다. 일시분리 조치 이후 가정복귀하는 사례의 수는 2023년 기준 1.3%로 매우 낮았으며, 일시분리 후 원가정 복귀 사례 수는 분리 조치된 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 연계될 때까지 분리를 유지하는 사례 수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각 연도)

〈표 2-8〉 피해아동 상황 - 보호 조치 유형별

(단위: 건, %)

피해아동 상황	상세 조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원가정 보호 ¹⁾ (보호체계 유지)		20,164 (82.0)	25,206 (83.9)	25,916 (83.9)	31,804 (84.6)	25,028 (89.5)	23,214 (90.2)
분리보호 ²⁾ (보호체계 변경)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³⁾	1,020 (4.1)	989 (3.3)	798 (2.6)	998 (2.7)	494 (1.8)	325 (1.3)
	분리 조치 및 유지	3,287 (13.4)	3,669 (12.2)	3,926 (12.7)	4,439 (11.8)	2,293 (8.2)	2,068 (8.0)
사망		32 (0.1)	60 (0.2)	90 (0.6)	44 (0.1)	52 (0.2)	-
기타 ⁴⁾		101 (0.4)	121 (0.4)	175 (0.3)	320 (0.9)	104 (0.4)	132 (0.5)
계		24,604 (100.0)	30,045 (100.0)	30,905 (100.0)	37,605 (100.0)	27,971 (100.0)	25,739 (100.0)

¹⁾ 원가정 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²⁾ 분리보호: 과거 분리 조치라고도 일컬음.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가 모두 해당

³⁾ 가정 복귀: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보호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⁴⁾ 기타: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 "아동학대 주요통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202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3, pp. 21-22에서 수정.

4) 아동학대 사례 종결 건 비율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 사례 종결 건수는 해당 연도에 종결된 사례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발생하였거나, 장기간 사례관리가 진행되는 사례의 경우 연도별 사례 종결 건의 비율만으로 종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연간 사례 종결 건의 추이는 신고와 사례 판단 이후 종결까지의 소요 시간이 장기간이라는 점과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판단된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아동학대 사례 종결 건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8,538건에서 2021년 11,132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6,384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사례 종결 건의 비율은 해당 연도의 전체 사례 중 35.0%(2019년)에서 22.8%(2022년)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7,408건(28.8%)으로 종결된 사례 건수와 비율이 모두 다소 증가하였다.

〈표 2-9〉 피해아동 전체 사례 종결 현황

(단위: 건, %)

사례 종결 현황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례 종결	8,538 (34.7)	10,529 (35.0)	9,870 (31.9)	11,132 (29.6)	6,384 (22.8)	7,408 (28.8)
진행 중	16,066 (65.3)	19,516 (65.0)	21,035 (68.1)	26,473 (70.4)	21,587 (77.2)	18,331 (71.2)
계	24,604 (100.0)	30,045 (100.0)	30,905 (100.0)	37,605 (100.0)	27,971 (100.0)	25,739 (100.0)

출처: “아동학대 주요통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202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3. p. 21에서 수정.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현황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최근 국내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는 공공의 역할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변화해왔다. 2020년 4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국 배치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2020년 10월 시행,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¹⁾ 학대 사례 조사 및 판단 주체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공으로 이관되었으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에 대한 초기 개입, 현장조사를 맡아 학교나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참여연대, 2021.5.1.).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적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받으면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을 응급보호한다. 둘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과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둘째,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셋째, 아동정보 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1) 2020년 기준 118개 시군구(선도지역) 총 29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목표로 하였고, 122개 시군구에 292명 공무원을 배치하였다. 2021년에는 229개 시군구에 총 747명을 배치하였고, 2023년 기준으로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897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다(보건복지부, 2024b, p.210).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수행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보호 방식 중 하나로 최근에 ‘즉각분리 제도’가 도입되었다(아동복지법,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 개정). 즉각분리 제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로 조사가 필요할 때 지자체가 피해아동을 즉각분리하여 시설이나 쉼터에서 임시로 보호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 2024b, p.186).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 분리 보호 조치의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표 2-10〉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p>〈아동복지법〉</p> <p>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p> <p>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아동복지법 시행령〉</p> <p>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p> <p>② 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이하 “아동학대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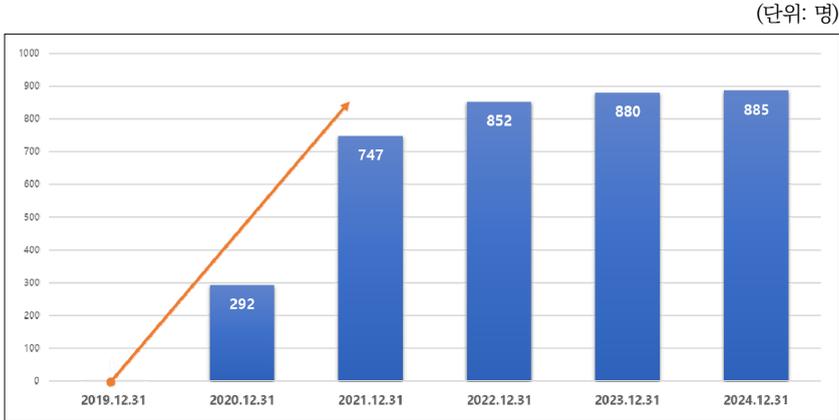
출처: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신고 접수의 권한,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수집의 역할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원가정 분리 결정과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황 자료는 행정통계 등 공표되는 자료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 중 외부에 공개 가능한 자료는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규모’ 정도이며, 시도·시군구 수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 및 특성 등의 자료는 미공개 자료이다. 공개 가능한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국 단위 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는 2020년 연말 기준 292명이었고, 2021년에는 747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22년 852명, 2023년 880명, 2024년 885명 등으로 2022년 이후에 완만히 증가해왔다(보건복지부, 2025).

[그림 2-3] 연도별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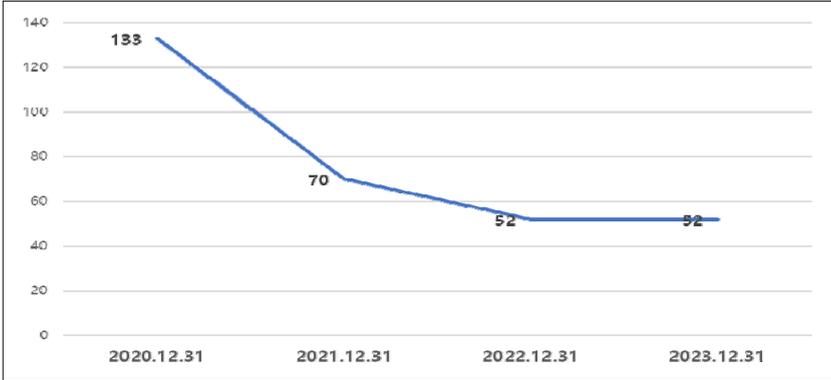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25.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수 대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접수 건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2020년 연말 기준 1인당 133건으로 매우 높았던 업무 부담은 2021년에 70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전국 단위 평균 52건으로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1인당 50건 이하)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군구별로 배치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접수 및 판단 또한 시군구 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배치 현황뿐 아니라 지역별 인력의 배치 현황이 현장의 상황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 연도별 전국 평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25.

시도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규모가 포함된 공개 자료로서 가장 최근 자료는 2022년 7월 5일 기준 시도별 배치 현황이었다. 이에 따르면, 시도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 대비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는 최소 44건에서 최대 94건으로 최소-최대 간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권고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배치 인원 충족 수준 또한 시도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배치 기준을 충족한 시도는 2개(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로 나타났고, 나머지 시도는 배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경기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은 배치 권고 규모 대비 배치 규모가 20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40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표 2-1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 현황 및 1인 담당 건수(2022.7.5. 기준)

(단위: 명, 건)

지역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수	의심 사례 건수 (2021년)	1인당 담당 사례 건수	복지부 배치 권고 공무원 수	차이 (배치 인원 - 권고 인원)
서울특별시	99	6,137	62	123	-24
부산광역시	58	3,035	52	61	-3
대구광역시	39	2,013	52	40	-1
인천광역시	51	3,720	73	74	-23
광주광역시	23	1,038	45	21	2
대전광역시	22	1,637	74	33	-11
울산광역시	33	3,114	94	62	-29
세종특별자치시	4	259	65	5	-1
경기도	168	13,578	81	272	-104
강원특별자치도	34	1,508	44	30	4
충청북도	26	1,565	60	31	-5
충청남도	49	2,793	57	56	-7
전북특별자치도	48	2,540	53	51	-3
전라남도	49	2,481	51	50	-1
경상북도	47	2,702	58	54	-7
경상남도	46	2,848	62	57	-11
제주특별자치도	15	1,115	74	22	-7
계	811	52,083	62.2(평균)	1,041	-230

출처: “아동학대는 매년 느는데…지자체 88%, 전담 공무원 배치 ‘미충족’”, 이재혁, 2022.09.08., 매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3464718610>.

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가. 공공의 개념

공공의 개념은 이론적이나 실천적으로, 학문 분야별로, 정책 분야별로, 시대와 국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공공이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 대다수를

위하여 존재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수재, 이민호, 채종현, 2008). 헌법에서 명시한 ‘공공복리’(제37조 제2항)는 국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의 공공이란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생성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윤수재, 이민호, 채종현, 2008). 예를 들면 공익, 공공재, 공공서비스, 공공기관 등이 이러한 공공의 개념과 연계되어 범주화된 개념이다.

협의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행정학에서 공공의 개념은 공공행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때에 공공은 정부 조직을 지칭하거나, 경제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배타성을 의미하거나, 공익에 봉사하는 조직을 의미하기도 한다(박용치, 송재석, 200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공공’은 정부 조직이 학대 의심 사례의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 문헌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공공의 개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정부) 조직 및 인력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포함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피해아동 및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 및 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 현장 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신변안전 조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을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이 중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범주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조사 공공화 이후 핵심적인 변화를 경험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의 목적이 아동학대

42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영역보다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영역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조사 공공화 이후의 학대 판단과 분리보호 등의 의사결정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표 2-12〉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역할과 본 연구 대상으로서 공공의 범위

아동학대 대응 절차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신고 접수	○	○
현장 출동 및 조사	○	○
응급보호(응급 조치, 긴급 임시 조치, 신변안전 조치)	○	○
아동학대 판단	○	X
아동보호사건 송치	X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X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 및 감독	○	X
피해아동의 분리 조치(배치)	○	X
아동학대 사례 종결	○	X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범위

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이란 앞으로의 행동의 방향을 검토하고 결단하는 과정이다 (오석홍, 2007). 국내에서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에는 ‘판단’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판단(judgement)은 주어진 정보에 기반하여 상황을 사정하는 인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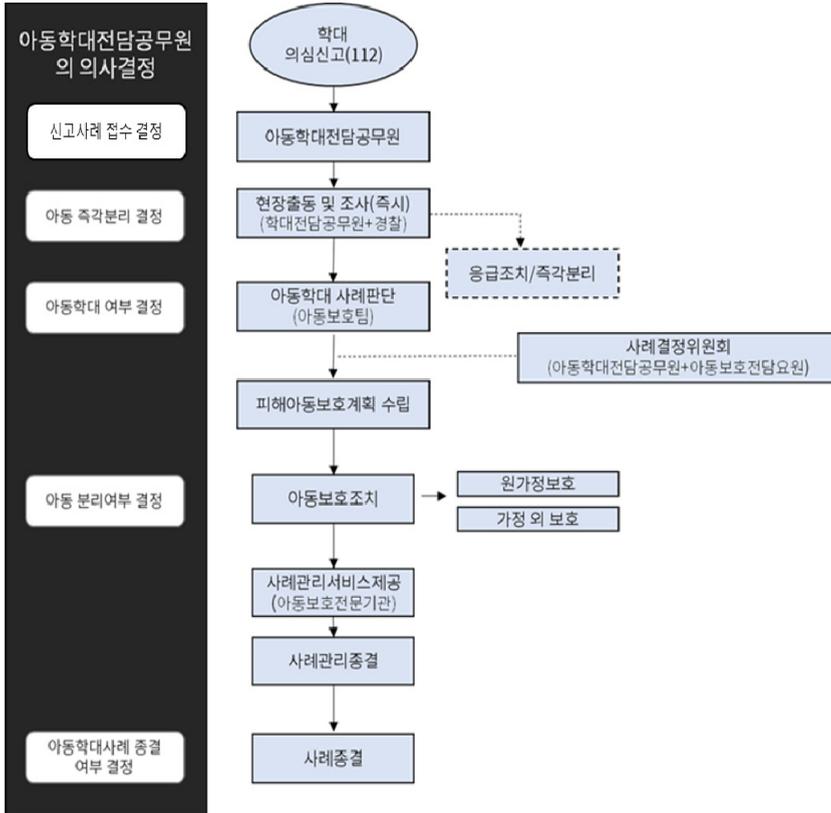
과정이다. 이에 반해 의사결정(decision-making)은 상황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 수행 여부를 결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Benbenishty & Fluke, 2021). 그럼에도 국내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업무 지침상 아동학대 여부의 의사결정을 사례 “판단”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할지 여부의 의사결정을 분리 “판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22),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혼용 하되, 인식적 과정 차원이 아닌, 행동 수행 여부의 결단 과정 차원에서의 판단 및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을 지자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단계별로 살펴보면, 학대 의심 신고 건을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장 출동 시에 피해의심아동이 즉각적이거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원가정(혹은 기존 보호 조치)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피해의심 아동을 즉각분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조사자료를 취합하고 사정하여 아동학대 사례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아동을 분리보호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후에 학대 사례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환되며,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 의하여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동학대 사례의 종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서비스의 종결 이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44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그림 2-5] 아동학대 대응 절차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 지점



출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아동학대 대응 절차상에서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은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행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긴급하게’ 현장 출동을 할 것인가? ‘한번 더’ 피해의심아동을 만나 볼 것인가? 피해의심아동의 ‘교사’도 주변인으로 조사할 것인가? 피해의심아동을 ‘병원’에 의뢰하도록 조치할 것인가? 등등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상 긴급하고, 복잡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상세한 수준의 의사결정이 일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Fluke et al., 2021).

그러나 이 연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내리는 일상적인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루기는 어렵다. 연구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이들의 의사결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으로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된 의사결정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다양한 의사결정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1)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접수 결정, 2) 아동학대 사례 판단 결정, 3) 학대피해(의심)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 4) 사례 종결 결정이라는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4. 의사결정이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게 있어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업무 비중을 차지한다. 아동학대 대응 절차에서와 같이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은 조사와 사정, 가능한 대안의 적절성과 대안의 선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절에서는 기존 문헌의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1)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Rational decision theory)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은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일 것으로 가정하며, 의사결정 상황에서 문제와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온전하게 인지할 것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알고 있을 것, 그리고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며, 비합리적 요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

한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자는 문제 인식, 목표 설정, 해결 방안 탐색, 해결방안 평가, 최적의 해결방안 선택, 실행, 결과의 평가 등 결정 단계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오석홍, 2007).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에게 있어서 문제 인식 단계는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회를 인식하게 되며, 의사결정의 출발점이 된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도 측정 가능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게 된다. 해결방안 탐색 단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을 구성한다. 해결방안의 평가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의 목표에 비추어 대안의 장단점, 실행 가능성, 비용, 잠재적 결과 등을 비교 및 평가한다. 그다음으로는 평가한 대안들 중 최적의 해결방안을 선택한다.

선택한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 수행되며, 그 결과의 효과를 평가하며 후속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결정 과정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감정이나 직관이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과정이라는 점과 사용된 정보는 완전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오석홍, 2007).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의 한계로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이상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의사결정 주체와 상황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대상의 노출하지 않고자 하는 정보와 사실을 최대한 확인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2) 주관적인 의사결정: 만족 모형(Satisfying model)

Herbert Simon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McSweeney, 2010). 제한된 합리성 이론은 인간이 현실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원 처리의 합리성이나 자원 등에 제약이 있고, 현실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합리적인(perfect rational)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객관적 합리성과 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의사결정자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오석홍, 2007). 이 이론은 의사결정자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하여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정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요소들로 문제 상황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현상을 설명한다(오석홍, 2007).

만족 모형은 시간이나 자원,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은 시간, 자원, 정보 등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현장 상황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만족 모형은 의사결정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의사결정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대안적 조치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휴리스틱 이론(Heuristic Theory)

휴리스틱 이론은 인간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순하고 직관적인 규칙이나 접근 과정, 혹은 경험적 추론(휴리스틱, heuristics) 등을 사용한다고 설명

한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며, 과거의 유사한 경험이나 일반적인 규칙 등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보의 처리나 기준 적용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다(Benbenishty & Fluke, 2021). 아동학대 현장의 의사결정 인력은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현장조사 경험과 학대 판단 경험이 많을수록 경험적 추론이나 직관적인 판단 규칙을 보유하게 되기 쉽다(Benbenishty & Fluke, 2021).

휴리스틱에는 대표성 휴리스틱,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감정 휴리스틱 등이 있는데, 대표성 휴리스틱은 의사결정 대상의 대표적인 특징이나 전형성에 기반한 추론이다.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자가 가진 기억의 회상 용이성에 따라, 즉 기억에서 얼마나 용이하게 떠오르는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는 현상이다. 쉽게 떠오르는 기억을 친숙하거나 장점이 많거나 혹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감정 휴리스틱은 과거 의사결정 경험 시 느꼈던 감정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다(윤선길, 2015).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휴리스틱의 활용이 복잡한 결정을 신속하고 단순하게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휴리스틱이 가지는 편향과 오류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Benbenishty & Fluke, 2021). 대표성 휴리스틱은 기저율 오류(Base Rate Fallacy)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의사결정을 할 때, 기저율(혹은 사전 확률)을 고려하지 않아 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과대 추정하게 되는 오류를 의미한다.

또한 휴리스틱은 사후 확증편향(hindsight bias)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사건이 발생할 줄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과거의 결정을 과대평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사례검토 회의에서 아동학대 사례의 조치 결과와 법원 판단 결과, 아동의 적응과 안전 상황 등의 결과를 모두 확인한 이후에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결과를 알기 이전 대비 훨씬 쉽게 느껴지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편향과 오류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Benbenishty & Fluke, 2021).

다. 불확실성에 따른 갈등과 대안의 선택: 의사결정 갈등 이론 (Conflict Theory of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갈등 이론은 의사결정 상황 중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즉 “결과적 선택(consequential choice)”은 결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장기적으로도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으로 불확실하고, 위험이 크거나 심리적인 갈등이 높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활용되는 이론이다(Bartelink et al., 2021). Irvin Janis(Janis, 1989; Bartelink et al., 2021로부터 재인용)가 언급한 결과적 선택은 의사결정 대상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재정적, 개인적, 윤리적 선택으로서 의사결정 자체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특성이 있으며,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는 위험과 책임감을 동시에 높이게 된다(Bartelink et al., 2021).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정에는 감정적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며,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 대안들이 장단점을 가지게

되며, 의사결정자는 각기 상충되는 가치나 이익을 수반하는 대안들 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해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Bartelink et al., 2021).

의사결정 갈등 이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안의 선택이라는 결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상적인 상황에 허용되는 최적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선택 가능한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을 위한 판단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각 대안의 이익과 손실을 균형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Janis and Mann(1977)은 각 대안의 이익, 손실, 장기적 이익, 장기적 손실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의사결정 균형표(Decisional Balance Sheet, DBS)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대안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객관적이고도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Bartelink et al., 202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갈등 이론에서 일컫는 ‘결과적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의 판단,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 조치, 사례 종결 같은 의사결정은 ‘결과적 선택’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삶과 가족의 삶에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이 설명하는 ‘결과적 선택’에 수반되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감정적 어려움, 각기 이익과 손실이 대치되는 대안들 간의 비교 등은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의 의사결정 경험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라. 다층적 요인에 기반한 의사결정:

의사결정 생태학(Decision-making Ecology, DME) 모델

Baumann et al.(2014)은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의사결정 생태학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결정자 개인의 심리적, 조직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장의 복잡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와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모델은 아동학대 절차에 따른 주요 의사결정을 생태체계적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보는데, 아동학대(의심) 사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의사결정자가 속한 조직의 문화, 자원, 지침 등 조직적 요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법적, 정책적 틀 같은 외부 요인, 의사결정자의 경험, 편견, 인지 과정 같은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아동학대 사례와 사례를 평가하는 조사자 그리고 사회의 거시적 차원 등 각 차원별 요인들이 영향을 주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련의 진행 상황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Baumann, et al., 2014).

Baumann et al.(2014)이 제안한 의사결정 생태학의 각 차원별 요인에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Allan et al.(2025)의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의사결정 생태학을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생태체계 수준별 영향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 요인(Decision Maker Factors)에는 의사결정자 개인의 경력이나 학력, 성별, 인종, 결혼 유무, 종교, 연령, 아동학대 경험 여부, 담당 사례 건수 등이 포함되며, 사례 요인(Case Factors)에는 사례에

포함된 대상 아동의 개인적 특성, 보호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의 특성,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성 등이 포함된다(Allan et al., 2025). 조직 요인(Organizational Factors)에는 기관 및 조직 관련 특성으로, 조직의 슈퍼비전, 리더십, 인력, 서비스 범위, 책임 소재, 조직 문화와 분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Allan et al., 2025). 외부 요인(External Factors)에는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의사결정의 방식 등을 규정하는 법제도, 지역사회 서비스 및 지역사회 환경 특성 등 거시적인 특성들이 포함된다(Allan et al., 2025).

〈표 2-13〉 의사결정 생태학의 체계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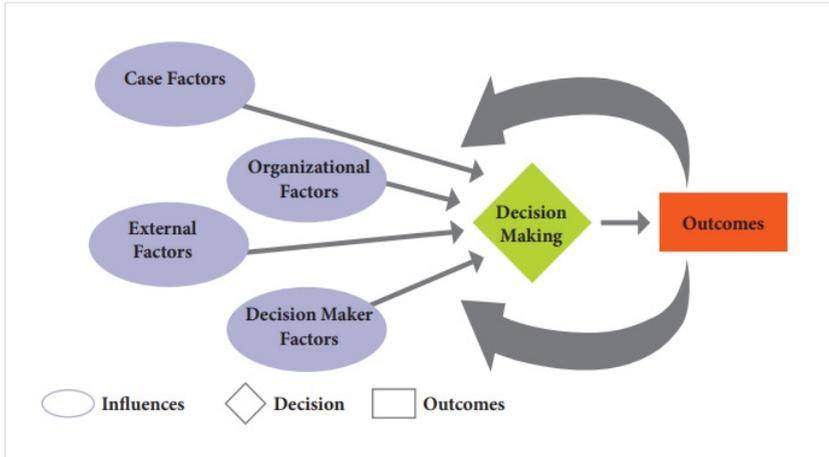
구분	예시
의사결정자 개인 요인	경력, 성별, 인종, 결혼상태, 가족상태, 종교, 연령, 교육, 역할, 아동기 학대 경험, 담당 사례 규모, 가족 보존 vs. 아동 안전에 대한 선호도, 기타 개인 요인
사례 요인	【사례/가구 수준 요인】 학대 유형, 가정폭력, 기존 아동학대 이력, 신고 경로, 가구 내 아동 수, 사례의 불확실성, 사례의 치명성, 위험사정 척도 점수, 가족사정 척도 점수, 가족강점 척도 점수, 기타 사례 및 가구 특성
	【아동 수준 요인】 아동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및 기타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보호자 수준 요인】 보호자 연령, 인종, 장애, 주거환경, 경제수준, 정신건강, 약물남용, 가족의 사회적 지지, 이주상황, 기타 보호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직 요인	전체 혹은 평균 사례 규모, 슈퍼비전, 매니저(팀장 등)의 지원, 기관 위치, 조직 내 인력의 부족, 조직 결속력/공유된 비전, 기관 서비스의 범위, 지역사회 서비스 신뢰도, 책임성 문제, 기타 조직 요인
외부 요인	지역사회 범죄율, 지역 빈곤 수준, 인구구성(인종),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정책, 인구밀도(도시 vs. 농촌), 높은 프로파일 케이스(아동 사망 관련 언론보도 여부), 외부 사건(예시: 자연재해, 전염병 발발, 내전 등), 기타 외부 요인

출처: “Fig. 2. DME Factor and Decisional Outcome Diagram,” Allan et al., 2025 중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요인 관련 내용을 발췌 및 번역하여 제시함.

조사자(사례 담당자)의 의사결정 결과는 아동학대 사례의 이해관계자(아동, 부모 등)와 의사결정자 자신 그리고 기관과 외부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후행하는 의사결정의 임계치를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당했던 사례에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후에는 종결 조치에 대한 임계점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Baumann, et al., 2014). 즉, 이 이론이 보여주는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결정 임계값’으로, 이는 충분한 정보가 축적되었을 때, 결정(행동)을 촉발시키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 임계치는 체계적 맥락에서 개인, 조직의 경험,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연속선에서, 즉 초기 결정 - 예를 들면, 해당 사례를 학대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 에서부터 최종 결정 - 예를 들면, 사례 종결 - 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에서 개념화된다. 각 단계에서 결정(행동)에 대한 임계치는 축적된 정보와 지식, 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Baumann, et al., 2014).

이 모델은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다양한 결정 지점, 예를 들면 학대의 판단, 아동의 분리 보호 판단 등에서 적용되며,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의 교육이나 정책 등이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오류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 오류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Baumann, et al., 2014). 정책적으로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의사결정을 감안하여 정밀한 지침과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자들이 체계적, 조직적, 개인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2-6] 의사결정 생태체계(Decision-Making Ecology)



출처: "Figure 1, Decision-Making Ecology," Baumann et al., 2014, p.5 Copyright by Baumann et al.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의 시행 시점이 비교적 최근(2020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 신규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 단위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관련 연구(전민경 외, 2020; 김민주, 배소라, 2022; 이혜진 외, 202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의 도입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구조와 운영상황을 진단한 연구(이은주 외, 2023; 이태선, 20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배태상, 이희영, 2022) 등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의 한계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순환보직되므로, 아동 업무나 아동학대 업무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배태상, 이희영, 2022; 이은주 외, 2023; 이혜진 외, 2024). 특히 조사 기술, 아동 대상 상담 및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며, 근무에서 짊을 내거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업무 공백 발생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워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고 하였다(배태상, 이희영, 2022; 전민경 외, 2020).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 학대 판단, 아동의 원가정 분리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업무 관련 민원, 업무 결과에 따른 징계, 현장조사 및 상담 시 민원인의 언어 및 신체 폭력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기피하며, 배치되었더라도 이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외, 2023; 이혜진 외, 2024; 이태선, 2021; 배태상, 이희영, 2022). 이혜진 외(2024)의 조사 결과, 경남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되며,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대 판단 및 아동의 원가정 분리와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태상, 이희영, 202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상시 신고체계 운영을 위해 야간에도 현장출동과 대기할 하느라 일상생활에 제약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현장조사 과정과 학대 판단 후에 강력한 민원을 경험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이혜진 외, 2024; 이태선, 2021). 또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는 여전히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소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이태선, 2021). 더구나 어렵고 전문적인 일을 해내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인사상 유인책은 매우 미흡하여, 다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이직이나 현 제도의 폐지까지도 희망하고 있었다(이혜진 외, 2024; 이태선, 20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임기제, 특채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늘려 다년간 전문성이 축적된 인력을 투입하고 장기간 근속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배태상, 이희영, 2022; 이혜진 외, 2024). 또한 학대여부의 판단, 개입 방향 설정, 원가정 분리 같은 조치의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사례와 민원 대응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전민경 외, 2020; 김민주 외, 2022).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으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2. 아동학대 단계별 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가. 신고 접수 결정의 영향요인

우리나라에서는 112로 아동학대를 신고하게 되면서, 신고된 사례의 대다수가 접수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아동학대 신고 건의 접수 결정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재하다. 다만 국외에서 일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신고된 사례에 대한 접수 결정의 선별성이 비교적 높기(이주연 외, 2023)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국의 연구에서 나타난 접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신고 내용에 신체적 손상이 보고되었거나, 성학대인 경우, 신고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의 신고 건인 경우들로 이러한 사례의 경우 접수가 되기 쉬웠다(Khoo et al., 2003). 이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인구수, 아동자녀 수, 가구소득, 지역 내 유관 기관 간의 관계 등), 접수기준의 포괄성 및 자율성, 접수결정자의 민감성 및 지역사회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도 접수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Khoo et al., 2003; Wells et al., 2004).

나. 학대 판단 결정의 영향요인

1) 국내 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업무 매뉴얼상 훈육과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이은주 외, 2023) 국내에 학대 판단 의사결정의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다만 2020년 이전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대응을 전담하던 시기에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Hyun and Adams (2016)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미국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담당자(case worker)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학대 판단, 분리보호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강지영(2019)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연구하였으며, 강지영 외(2017)는 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여 예측변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김세원 외(2022)는 유일하게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일반 사례 판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대 사례와 일반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언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학대 판단 결정의 영향요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되었는데, 사례의 요인, 행위자 요인, 의사결정자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례 요인에는 사실로서의 학대 행위 발생 여부, 학대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아동의 연령, 성별, 아동에게 끼친 영향(충격, 피해) 등이 포함되었다(강지영, 2019; 김세원 외, 2022). 즉, 학대 행위가 존재하고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경우, 학대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반복적으로 발생할수록, 행위자의 고의성이 클수록,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클수록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피해가 드러나는 사례에서는 판단하기가 용이하나, 학대 행위가 경미하거나 증거로 확인된 학대의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서는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되었다(강지영, 2019; 김세원 외, 2022).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 노출된 사례, 청소년 비행과 보호자의 학대가 혼재된 사례 등에서는 판단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강지영, 2019).

학대 행위자의 동기와 행동 특성 또한 학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는 방임 사례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변화 가능성과 협조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강지영, 2019), 또한 의사결정자의 성장 배경, 결혼 여부, 경력, 업무 역량, 학대에 대한 민감도 등에 따라 동일한 사례라도 학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강지영, 2019). 슈퍼바이저의 영향과 사례 판단회의 구성원의 차이, 신고 접수 건수가 많은 지역적 특성 등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강지영, 2019).

Hyun and Adams(2016)는 한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학대

판단 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들의 학대 판단에는 개인적 특성과 개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미국 사례 담당자는 데이터를 활용한 컴퓨터 학대 판단 알고리즘과 규정에 의거하므로 비교적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었다(Hyun & Adams, 2016). 학대 사례에 대한 문제 인식에 있어서도 한국의 상담원들은 아동학대 인식 부족, 부모의 폭력적 혹은 방임적 태도, 훈육, 양육 방식, 재학대 가능성, 부모 진술의 신뢰도 등 학대 판단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한 반면, 미국의 사례 담당자들은 학대 혹은 방임 그 자체와 가해자의 분노조절, 부모의 정신과적 문제, 양육 방식, 추가 정보 필요, 가족의 개입 필요 등 해당 사례가 당면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였다(Hyun & Adams, 2016).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사례, 조직 및 외부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강지영(2019)과 Hyun and Adams(2016)의 연구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전에 수행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으며, 김세원 외(2022)의 연구는 일반 사례 판단 기준에 중점을 두어 학대 판단 의사결정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2) 국외 연구

국외에서는 아동학대 의사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신체적 증거의 심각성, 학대 행위의 지속성, 학대피해 아동 및 가해자와 보호자의 특성, 거시적 요인(지역적, 정책적 특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체적 증거가 심각하거나 명확할수록 학대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었다. Jent et al.(2011)은 신체적 상흔이 목 위의 얼굴 등에 나타났을 경우, 혹은 도구를 사용했거나 여러 부위에 상흔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Cross and Casanueva(2009)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안전에 대한 방임을 판단할 때 신체적 위해의 정도, 위험요인의 정도, 증거의 확실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opasz et al.(2024)의 비넷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조사자가 위험사정 시 신체적 손상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glish et al.(2002)은 아동학대 사례 기록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학대 행위의 지속성이 학대 판단에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이었으며, 학대 행위의 심각성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대 증거의 심각성과 관련된 질적 분석에서는 학대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엇갈리는 진술(정보)은 판단이 'Inconclusive(결정하지 못함)'으로 처리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English et al., 2002). Stokes and Taylor(2014)는 증거의 심각성 확인이 용이한 신체학대와 성학대에서 아동방임이나 정서학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위험 인식과 학대 판단 비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신체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학대 유형에서 조사관들이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특성으로는 아동학대 의사결정 시 피해 아동의 인종의 영향이 일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Dettlaff et al.(2011)은 소득 수준보다 인종이 학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 추가될 경우 유색인종 아동이 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Maguire-Jack et al.(2020)은 흑인과 아메리칸 인디언 아동이 백인 아동에 비해 학대 및 분리 판단될 확률이 높은 반면, 아시아인 아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toke and Schmidt(2011)의 연구

에서는 인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도 학대 판단과 개입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Freeman et al.(1996)의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일수록 학대 판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학대 이후의 개입 강도(조사 및 서비스 제공 기간, 사례 관리자의 방문 및 면접 횟수 등)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보호 개입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Cross and Casanueva(2009)는 여아인 경우, 아동의 연령(6~10세)이 학대로 판단되는 데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에게 끼친 위협의 정도 또한 학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는데, Cross and Casanueva(2009)는 아동에게 나타난 위협의 수준이 중간 수준 이상일 경우, 학대로 판단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으며, English et al.(2002)은 아동의 행동 및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보호자와 가구 특성으로는 보호자의 문제 인식, 보호자의 양육 기술, 열악한 주거 수준, 배우자 폭력, 약물 사용 여부 등이 학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English et al., 2002; Stoke & Schmidt, 2011).

지역적 특성으로는 관할 지역 내에 한부모가구가 많거나, 농어촌지역인 경우 아동학대 판단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guire-Jack, et al., 2020). 기관의 특성 중에서는 기관의 자원으로 비학대 사례를 지원할 수 있을 때 학대 판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 & Maguire-Jack, 2015). 아동학대 사례 담당 인력의 특성으로는 아동학대 업무 경력이 짧을수록 의사결정 시 아동의 안전 확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Fluke et al., 2016), 아동학대 담당자의 역할 인식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인지 혹은 서비스의 연계와 모니터링 담당자인지에 따라라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위협 인식과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Keddell & Hyslop, 2020).

다. 분리 결정의 영향요인

1) 국내 연구

학대피해아동의 분리 결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영역이었으며, 협박성 민원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였다(이경은, 김미정, 2014; 배태상, 이희영, 2022). 학대피해아동 분리 결정요인에 대한 일부의 국내 연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조사 공공화 이전에 수행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드러난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학대의 심각성, 아동에게 끼친 영향(손상 정도), 정서학대보다 성학대나 방임의 경우, 아동이 남아이거나, 미취학인 경우, 아동 본인의 분리 희망 의사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구인 경우 등 사례 관련 요인이 확인되었다(이경은 외, 2014; 김세원 외 2020). 행위자 특성과 관련되어서는 행위자의 폭력적인 성향, 알코올 문제나 약물중독, 정신질환, 재학대 가능성, 행위자의 개선 의지와 이후 극단적 시도 가능성, 행위자의 성별, 연령 등이 영향을 주었다(이경은 외, 2014; 김세원 외 2020). 조직이나 지역사회 특성으로는 김세원 외(2020)의 연구에서 지역 내에 수급 가구가 많을수록 분리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관의 상담원 수가 많을수록 분리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아동 분리 결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관련 기관 담당자 간의 의견 차이에 따른 어려움, 전문성의 한계로 인한 판단의 어려움, 지역 내 시설 부족에 따른 분리아동 배치의 어려움, 분리 조치 자체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조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아동에게 상처만 되는 경우에 가지게 되는 회의와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었다(이경은, 김미정, 2014; 김세원 외, 2019).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분리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를 가장 주요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아동의 안전 여부, 학대의 심각성과 지속성, 학대 행위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의 사례 특성과 아동의 가족 관계와 환경 등 보호자의 상황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전민경 외, 2020). 또한 의사결정자 개인 요인으로는 분리판단에 대한 확신 부족이 있고, 외부 요인으로는 분리 후 아동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민경 외, 2020).

2) 국외 연구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국외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요인들의 영향력과 그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보호 조치가 사례의 특성, 아동과 가족의 특성, 아동학대 실무자의 특성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먼저, 사례 특성은 아동 분리보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Horwitz et al.(2011)은 재학대(혹은 재신고) 이력이 있거나 학대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보호 조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Graham et al.(2015)은 위험사정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위험사정 결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분리 조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Vanderfaeillie et al.(2023)은 학대의 유형이 아동의 분리 조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이 높을

때, 분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은 아동 분리의 영향요인이 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과 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의 스트레스 요인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Horiwitz et al., 2011). Graham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가정 내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아동의 분리 조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특히,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아 보호 조치 결정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riwitz et al., 2011). Grimaldi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가정환경이 적절하지 않거나, 부모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Font and Maguire-Jack(2015)은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약물남용, 그리고 양육 기술이 아동의 분리보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 여부는 보호 조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가정폭력과 이로 인한 아동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에서는 주로 가해자가 퇴거 조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Font & Maguire-Jack, 2015).

실무자의 경험과 태도 또한 보호 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된다. Fluke et al.(2016)은 실무자의 업무 경력이 많을수록 가족 보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 아동의 분리에 소극적이었으나, 신규 담당자는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분리 조치에 적극적인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Devaney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학과 학생과 경력 많은 실무자의 보호 조치 결정은 유사했으나, 신규 실무자의 경우 보호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 초기 실무자가 분리

조치를 위한 가정 내 위험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Vanderfaeillie et al.(2023)은 실무자의 가치관과 태도가 아동 분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가족 중심 서비스를 지지하거나 아동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실무자일수록 분리보호를 결정할 가능성이 낮았다.

조직적 요인과 업무 환경도 실무자들의 위험 평가 및 보호 조치 결정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Graham et al.(2015)은 실무자의 개인적 특성은 분리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담당하는 업무량이 적정 수준일 경우 가정 내 위험 요인을 보다 치밀하게 발견할 수 있어 보호 조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Font and Maguire-Jack (2015)은 지역적 특성이 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는데, 범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대피해아동이 분리보호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지역 내 위탁 가정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혹은 위탁보호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지 여부와 위탁보호서비스의 질(보호 가능 기간 등) 또한 아동 분리에 대한 실무자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derfaeillie et al. 2023, Font & Maguire-Jack, 2015).

라. 사례 종결 결정의 영향요인

사례 종결 결정의 영향요인만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이경은 외(2017)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개입 서비스의 종결을 결정할 때에, 아동학대 사례의 위험요인에 따르는 위험도(수준)를 사정하고 이를 반영한 객관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선옥 외(2022)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사례를 종결할 때,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김호현(2024)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관리 업무 종결 과정에

있어서 종결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학대피해 아동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 수준이 중요하며, 이들이 민원에 대한 우려와 재학대의 발생 가능성의 부담으로 인해 종결을 지연하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국외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사례 종결에 대해, 주로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조치 이후 원가정 복귀에 따른 사례 종결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외의 사례 종결의 영향요인은 아동학대 사례로서뿐 아니라 분리 조치되었던 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요인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kin(2011)은 아동의 장애,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 등의 어려움이 아동 분리 조치 이후 원가정 복귀와 이에 따른 사례 종결을 지연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빈곤, 주거 빈곤, 폭력 등 지역 사회의 위험요인이 적정한 시기에 사례 종결을 하는 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 & Warren, 2013).

제3절 소결

2020년부터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조사 및 판단, 아동보호 조치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핵심 인력인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시·군·구에 신규 배치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기준 지역별 인력배치 수준에는 큰 격차가 존재했고, 권고 기준 대비 부족한 지역이 다수 있었다. 이들이 배치된 2020년 이후 학대 신고건에 대한 접수율은 다소 증가한 반면, 학대 판단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아동의 즉각분리 비율은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전과 비교했을 때, 배치 후의 접수-판단-분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과거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인력과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사결정의 현황과 어려움, 그리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업무에 투입되면서, 상당히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해 왔다. 이는 향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학대 단계별 의사결정의 요인을 주제로 한 국내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학대판단과 분리보호 결정 단계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성 상 신고된 사례의 대다수가 접수되므로 별도의 접수 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례의 종결 결정의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서비스 종결 결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대판단과 분리보호 단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전에 수행된 연구가 대다수이어서, 그 결과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결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는 아동학대의 판단과 분리보호에 있어서 단순히 아동의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례, 행위자, 피해아동, 의사결정자, 제도 등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대판단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이전에 수행되었던 국내 연구에서도 학대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경미한 사례나 모호한 사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 것으로 볼 때, 아동학대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과거 민간이 이 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지적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판단 시 신체적 증거의 심각성, 학대 행위의 지속성, 학대피해 아동 및 가해자와 보호자의 특성, 거시적 요인(지역적, 정책적 특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두상의 신체적 상흔(손상), 증거의 확실성, 아동학대의 유형(신체학대 및 성학대의 판단 높은 경향), 아동의 연령(저연령), 아동의 행동 및 부모에 대한 감정, 보호자의 문제인식이나 양육기술, 양육환경, 폭력 및 약물 등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지역 내 한부모가구의 수나 농어촌지역 여부, 비학대사례의 지원가능 여부, 인력의 아동학대업무 경력, 역할인식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아동 분리 결정은 아동학대 판단보다 인력이 더 부담을 많이 느끼는 영역이었으며, 국내 연구에서 드러난 요인으로는 학대의 심각성, 학대 유형, 아동 특성, 아동의 의사, 가족 특성, 행위자 폭력적 성향, 알코올 혹은 약물중독, 정신질환, 아동에게 끼친 영향, 재학대 가능성, 행위자의 개선 의지,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 지역 내 수급 가구 수 및 보호 자원, 기관 상담원 수, 의사결정자의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재학대/재신고 혹은 학대 심각성과 같은 사례특성, 신체학대와 방임 등 학대 유형, 가족의 스트레스 요인 및 낮은 소득, 아동이 (저)연령인 경우 보호조치의 적극성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또한 부모의 정신건강, 약물 남용, 양육기술 등이 영향을 주었으며, 실무자의 업무경험이 짧을수록, 실무자의 가치관이 가족중심 서비스 보다는 안전확보 중심일수록,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거나 위탁가정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 아동 분리 조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된다는 분석 결과는 아동학대 판단과 분리보호 결정이 단순히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구조적이고 맥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때,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이나 주관성, 경험 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체계에 따른 다층적인 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의사결정이 조직과 사회적 맥락이 개입하는 복합적인 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의사결정 인력 및 조직의 구조와 운영 방식,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투입되는 지역사회 자원의 충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현황과 어려움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

제3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

제4절 소결

제 3 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현황과 어려움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자료

2021년 아동보호체계에서 조사 및 판단의 공공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팀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사례 판단, 조치, 사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 단계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각 단계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쟁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업무 수행 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을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매뉴얼은 대외비 자료로 연구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사업안내, 정책통계자료,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일대일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분석 자료 중 문헌 자료들을 제외한 인터뷰 자료(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차 대면 인터뷰)의 조사 대상, 방법, 참여자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인터뷰 조사 대상은 공공에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다양한 의사결정 경험을 담기 위해 의도적 표집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조건은 첫째,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로 전반적인 의사결정 경험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사례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례 종결 단계까지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업무 경력이 1년 3개월임을 감안하여(김유승, 2024),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평균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2년 이상과 2년 이하의 업무 경력자로 구분하여 일정 비율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로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배치 상황에 따라 24시간 교대근무 가능 여부와 현장출동 시 동행 가능 여부가 상이할 것을 고려하여 2인 이하 배치 지역과 3인 이상 배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2인 이상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지역 특성(도시 혹은 농어촌)에 따라 지역에서 학대피해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이 상이하고 이러한 특성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을 일정 비율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24년 7월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연구에 대한 소개와 참여 협조 요청이 담긴 공문을 송부하여 아동보호팀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다. 전문조사업체를 활용하여 섭외하였으며, 최종 참여자의 확정은

전문조사업체가 수집한 연구 참여 희망자의 정보를 기시 준으로 연구진이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의사를 표시한 대상자에게는 연구 동의서를 사전에 송부하여 동의를 득하였으며, 1차 인터뷰에는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 내용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수준, 전공, 자격증 취득 현황, 경력, 직급 및 담당업무 같은 업무 관련 기본 정보와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역 특성으로 아동학대 및 분리 판단율,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인원을 질문하였다. 다음으로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신고-접수-학대 판단-아동 분리-종결의 의사결정 단계별로 절차, 의사결정 기준, 판단 주체 등에 대한 업무 경험을 질의하였으며, 관련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사례의 특성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슈퍼비전, 교육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표 3-1〉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주요 질문
기본 정보	- 교육 수준, 전공, 자격증 취득 현황, 경력, 직급, 담당업무
지자체 특성	- 지역 특성, 아동학대 판단율, 아동 분리 판단율,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인원
의사결정 단계별 현황 및 경험	-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의심 사례로 접수하는 절차 및 판단 기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학대 판단 과정(주체, 기준) 및 영향요인 - 학대피해아동 분리 결정 과정 및 기준 - 아동학대 사례 종결 경험
의사결정의 어려움	- 의사결정 단계 중 판단하기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는 단계 - 학대 판단이 어렵거나 모호한 사례 특성 - 학대피해아동 분리가 어렵거나 모호한 사례 특성
의사결정 지원 욕구	- 의사결정에 대한 슈퍼비전 -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 방안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인터뷰는 202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0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대면 면접보다는 비대면 면접을 선호하여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이 직접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일대일 면접조사 시에는 연구 윤리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었다(승인번호 제2024-069호). 연구 참여 희망자에게 연구 목적과 인터뷰 질문 내용, 진행 과정, 불이익,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 연구 참여 동의의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송부하여, 동의한 사람에게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4. 연구 참여자의 특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1차 인터뷰의 참여자는 총 6인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등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는 4인이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는 2인이었다. 참여자가 근무하는 농어촌 지역은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인원 수가 모두 2인 이하인 곳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력은 1년 미만인 2인, 1~3년 미만이 2인, 3년 이상이 2인이었다. 그리고 전체 연구 참여자 중 1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임명한 핵심 전담요원에 해당하였다.

〈표 3-2〉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연번	연구 참여자	지자체 특성	아동학대 판단 경력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	비고
1	A	도시	6개월~1년	10인 이상	
2	B	농어촌	6개월~1년	2인 이하	
3	C	도시	1년~2년	10인 이상	
4	D	도시	10년 이상	10인 이상	
5	E	농어촌	2년~3년	2인 이하	
6	F	도시	3년~5년	3인~10인 미만	핵심 전담요원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

1. 신고 접수 결정: 이원적인 신고체계와 접수 결정의 낮은 선별성

가. 이원적 신고 접수 체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경찰(112) 또는 시·군·구의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원화된 체계로 접수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인터뷰 결과, 시군구의 긴급전화로 신고되는 것은 많지 않고 112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대부분 112로 이제 거의 99%? 112 신고 일반 주민들이 해주시고요. (참여자 F)

지자체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한 98%는 다 이제 112를 통해서 오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112로 하기가 조금 부담되거나, 좀 그럴 때는 지자체로도 전화가 오거든요? (참여자 D)

112로 신고된 건은 경찰 지구대에 통지되고,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정보를 취합하여 APO 시스템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의심 사례로 통보하고 있다(이승현 외, 2022).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인터뷰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뿐 아니라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도, 현장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APO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됐는데, 수사 중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면은 APO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 돼요. 이렇게 통보가, 사동망. 행복e음 시스템으로 통보가 되고, 우선 연락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통보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또 조사해요. (참여자 B)

시군구의 긴급전화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접수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경찰(혹은 APO)에게 통보하도록 하거나, 혹은 신고자가 직접 112로 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 쪽으로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찰 개입이 조금 있어야 강하게 저희도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경찰 통해서 신고하라고 얘기는 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C)

나. 신고 접수 결정 절차와 기준: 접수 결정의 낮은 선별성

1) 112로 신고되는 사례의 접수 결정

인터뷰 결과, 경찰이 112로부터 통지된 정보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전혀 없거나 오인신고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경찰에서 해당 사례를 APO 시스템으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112 신고 건은 거의 전수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APO 시스템으로 접수된 사건은 전수가 지자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되고,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수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2를 통한 신고 접수 경로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선별적 의사결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의 매뉴얼은 현장 종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어느 경우든 간에 그냥 행정에는 통보를 해라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 쪽에서 너무 좀 아니다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상에서 커트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씩 경찰 쪽에서 너무 아니다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통보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거 없이.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지침이 바뀌었는지 최근에는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네. 사건 현장 종결이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다 통보를 해주게.. (참여자 E)

경찰이 한번 걸러서, 통보해주죠. 경찰이 얼마만큼 신고를 받고, 얼마만큼 통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데이터로 공유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112 신고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걸러서 저희한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학대로 인해. 인한 지자체 개입이 필요하거나, 조금 신고, 그니까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걸러서 주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총 몇 건 중에 몇 건을 준다, 라고는 제가 듣지를 못 해가지고. (참여자 D)

2) 시군구 긴급전화로 신고되는 사례의 접수 판단

인터뷰 결과, 시군구의 긴급전화를 통한 신고 건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 접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고된 사례의 접수 판단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신고된 학대 의심 행위자의 행위나 행위의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들은 시군구의 긴급전화로 걸려 오는 전화 중 아동학대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문의하는 상담 전화나 오인 신고는 일반상담 건으로 제외하고, 대부분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간주하여 접수한다고 하였다. 접수 방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본인이 112로 신고하거나, APO에 통지하거나 혹은 신고자에게 112 신고를 유도하는 등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에서 신고 접수해서 커트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 행정 쪽에 신고된 건은 다 정식으로 조사해서 다 판단까지 간 것 같고. (참여자 E)

다만 너무 좀 얼토당토 않다 싶은 내용이면은 이제 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고. 거의 웬만하면 신고하시면 정식으로 다 접수해서 조사해서 판단까지 진행을 합니다. (참여자 C)

저희 ○○○ 아동보호팀 내에서는 아주 간혹 이것이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9.9% 이상은 아무리 사소한 신고 건이라도 우선 현장에 나가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A)

예를 들어서 어떤 이웃집에 누가 지금, 계속 얘기 소리가 많이 난다. 예를 들면 그런 신고가 들리면은, 어디냐. 그걸 특정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단 접수해서 또 경찰에 알립니다. 경찰에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접수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여자 F)

앞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서 나타난 신고 건에 대한 의심 사례 접수 비율은 전체 신고 건의 대다수(96.6%, 2022년 기준)였고, 일반상담 건은 2022년에 1.9%로 매우 낮았다(보건복지부, 2018-2022). 이는 아동학대 신고 건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한 일반상담으로의 선별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상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예시에서도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신체적 상흔’,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고함, 욕설)’,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태도가 경직(긴장)되거나 두려움을 보이는 경우’, ‘청결 상태가 열악한 경우’, ‘영양상태 결핍 추정’, ‘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 ‘초등 이하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싸우는 소리, 아동이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등 아동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가능성(징후)이 존재한다면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p.16).

〈표 3-3〉 아동학대 의심 사례

아동학대 의심 사례(예시)
<p>■ 아동, 보호자, 가정 내 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서 신체적 상흔이 관찰되거나, 상흔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고함, 욕설을 퍼붓거나 무시하는 등)가 관찰되는 경우 -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태도: 대화 과정 중에 보호자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거나 낮은 사람에 대한 경계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경직(긴장)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눈빛·표정·언어 등으로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 청결 상태: 머릿니, 손·발톱 등에 묵은 때, 가정 내 쓰레기 등 방치 - 기타 영양결핍이 의심될 정도의 발육부진, 마른 체형, 계절·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 등이 관찰될 경우 <p>■ 주변인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초등 이하)이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집 밖에 오래 서 있는 등) - 싸우는 소리(고함, 욕설, 폭력 등)나 아동의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림 - 평소 아동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집 안팎에 위험한 물건 방치 또는 냄새(악취)가 나는 것 같음.

출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p.16. 저작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건을 의심 사례로 접수하는 결정이 전반적으로 어렵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의심 사례로 접수했다 라도 이후 아동학대 판단 결정 단계에서 일반 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심 정황이 있다면 대부분 접수 결정을 하고 이 단계에서 선별적인 판단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실 의심 사례로 접수를 할까 말까,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접수는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다가 뭐 학대 사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일반 사례로 해도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고 접수를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참여자 C)

인터뷰 결과, 시군구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화가 종료된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언급한 시군구 긴급전화 건의 주요 유형에는 집단 사례로서 아동학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로서 아동의 가출 등 학대 정황이 없는 양육 관련 상담, 이혼소송 준비를 위해 배우자의 행동이 아동학대인지 확인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학대 신고 전화로 이제,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오는 거는 주로 집단 건.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들이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긴 하는데, 거기서 이게 좀 학대인지 좀 애매할 때, 저희가 그냥 민원 상담하듯이 보통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은 잘 신고를, 저희한테는 잘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아동권리 교육할 때, 어른이나 부모님 포함해서 어른들이 성인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112에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합니다. 저희한테 직접 전화온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 성인들이 저한테 전화하려 오시거든요... 특히 배우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여자 F)

3. 아동학대 판단 결정

가. 아동학대 판단 절차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경찰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과 조사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24b, p.211).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학대 의심 사례에서 제기된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인적 사항, 피신고자²⁾(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 관련 사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취합하여 확인하며, 출동 필요 시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경찰과 동행하여 출동하거나 경찰이 우선 및 단독출동³⁾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b, p.211).

현장조사 시 경찰은 피신고자(아동학대 행위(의심)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피해(의심)아동, 행위(의심)자, 보호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학대 정황 자료로서 특히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이승현 외, 2022). 현장조사 시 피해(의심)아동의 가족 구성원, 피신고자, 신고 관련 의료인, 교육 및 보육 기관 관련 종사자, 이웃 등을 필수적으로 대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변인으로 신고자 및 이웃 주민, 해당 사례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 담당자 등을 조사한다(보건복지부, 2024b, p.213).

2) 피신고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 및 의심되는 사람'으로, 해당 사례에서 지자체가 사례 판단하기 이전까지 피신고자로 일컬음(보건복지부, 2024b, p.211).

3) 긴급한 신고 접수 건이 명확한 경우에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동행을 요청한다. 단, 야간이나 휴일이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이동 거리가 원거리인 경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의 우선출동 요청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4b, p.211).

〈표 3-4〉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현장조사 시 대면조사 대상자

구분	대상자
필수 대면조사 대상	피해(의심)아동, 피신고자, 의료인의 신고인 경우 관련된 의료인(주치의, 신고자 등),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 피해(의심)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의 종사자, 피해(의심)아동의 형제 및 자매, 동거하는 아동, 이웃 등
주변인 조사 대상	신고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웃 주민, 이용 중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담당자 등

출처: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보건복지부, 2024b, p. 213. 저작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현장조사 결과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사례인지 일반 사례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주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며, 현장 판단뿐 아니라 자체 사례회의, 통합 사례회의,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등의 다양한 사례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다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현장 판단이 이루어지는 때는 현장출동 시 응급조치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로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서 “학대피해가 확인이 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이다.

정말 긴급한 사안이 있다면.. 현장 출동 당시에 아동학대를 결정할 수 있는 응급조치 권한이 있고요. 뭐 저희가 제공받았던 매뉴얼상에는 응급조치가 결정된 사항은 이미 아동학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따로 사례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응급조치가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사례회의를 한 번 더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A)

나. 아동학대 판단 기준

1) 법적인 기준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활용하는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가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따라서 신체학대 또는 정서학대, 성학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고의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방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법적인 정의는 어떠한 행위가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는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적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학대 증거를 가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서학대와 방임 의심 사례의 경우,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정서학대가 제일 애매하고요. 그다음엔 방임. 그다음에 신체학대. 그다음에 성 학대 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주관적이잖아요. 정서학대라는 게, 뭐 신체학대 같은 경우에는 상흔도 남고,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동반이 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근데 정서학대라는 게 굉장히 그 개념 자체가 아동 복지법에도 굉장히 포괄적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때리는 거. 이런 건 되게 뭔가 이렇게 딱 명백하게. 뭔가 이렇게 행위가 있는데, 정서학대에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폭력 노출, 정서학대. 그러면은 그럼 이것을 어떤 기준이 없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다 정서 학대로 잡힐 수도 있거든요. (참여자 D)

2) 아동학대 판단 척도

업무 지침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판단 전에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마련되어 있는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이승현 외, 2022). 아동학대 판단 척도는 학대 행위의 위험 수준, 학대 결과의 위험 수준, 피해아동의 방어능력, 학대 가해자의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여 각 점수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척도 적용 결과 측정된 총점이 일정 선 이상일 경우 아동학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이승현 외, 2022).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체크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정도나, 그렇게 체크를 해서 CAF(아동학대 판단) 척도 점수 나오잖아요? 그거 점수 보고도 참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완전히 판단하는 건 아닌데,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요. (참여자 B)

판단척도도 사용하는데, 좀 안 맞아요. 너무... 도움은 별로 안 돼요. 이제 척도가 필수 사용이라서, 무조건 척도는 돌리고요. 어 근데 이 척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냥 애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참여자 D)

아무리 점수가 높게 나와도, 이제 내가 그렇지 않다, 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일반 사례인 거고, 아무리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그, 판단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아동학대 사례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 이게 사실 점수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척도가 정확하지 않다, 라는 점? (참여자 C)

아동학대 판단 척도가 판단 기준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는 척도에 반영되는 요인이 제한적이며, 각 요인에 대한 점수화가 주관적으로 매겨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따라 특정 사례에 대한 주관적 견해가 상이하다면, 척도의 점수 또한 상이하게 매겨지므로 기준 으로서 활용도가 낮다고 하였다. 대부분 아동학대 판단 척도는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판단에 결정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의견이었다.

판단 척도가 행위 수준. 그다음에 결과 수준. 그리고 이제 뭐 피해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 행위자의 신고 이력. 요정도로 보거든요. 4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자는. 더 많은 요인들이 척도 안에 담겨야 되는데, 너무 간단한 정도만 담겨 있고, 그리고 주관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행위 수준이 경미하나, 심각하냐를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거죠. 조사자마다 판단,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려면, 조금 더 척도가 세밀화. 세분화돼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D)

수치상으로 이제 판단 척도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일 뿐,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아동학대 사례다, 라고는 못하는 판단 척도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내 사례 판단 회의의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참여자 C)

3) 업무 매뉴얼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업무 매뉴얼 및 관련 자료, 경찰의 의견, 교육감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행위의 일회성·중복 발생 여부, 아동학대 판례집 등에 제시되어 있는 기존 사례의 학대 판단 결정 등을 참고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뉴얼에, 저도 이런 업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서 지침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E)

저희가 지침상으로 보면 일회성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좀 보자. 일회성.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말은 1회 이상이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그런 경우에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참여자 F)

저희가 그 처음 배치받았을 때 제공받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보면, 각 학대의 카테고리 옆에 이러한 학대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법. 판례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나 아동, 연령. 그리고 당한 행위가 비슷한 판례들을 좀 전문을 읽어보고, 아 판사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했구나. 쪽 읽다 보니까 사법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아동학대 판단할 때, 판례와 이런 나의 사례가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사례를 차용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자 A)

지침과 자료에 제시된 아동학대의 개념과 세부 유형, 세부 유형의 중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사례별로 적용해야 하는 판단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은 개인의 전문성이 되며,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 업무 지침, 판례집, 사례집 등의 자료들을 숙지하였는지 여부는 의사결정의 숙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은 우리가 얼마나 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약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때린 게 아동학대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종류는 워낙 다양하고, 또 이러한 판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다 읽어보기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참여자 A)

그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시 동행 경찰의 판단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참고하기도 하며, 특히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의심) 사례인 경우에는 교육청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항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 2023),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의심) 사례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의견서에 포함하여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의견서상 정상참작 요청이 포함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의사결정 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간혹가다가 이제 사건화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판단을 조금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 F)

학대 가해 의심자가 학교 교사일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00초등학교 사건도 있고 이래서, 교육감이 저희한테 의견을 보냅니다. 공식적으로 이 선생님이 자기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그 선생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지고, 또 저희 통합 자체 사례 회의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보고. (참여자 F)

4) 개인적인 성향과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 판단에는 업무 매뉴얼의 판단 기준 외에도 개인적인 성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학대로 판단하거나 민감성이 낮을수록 일반 사례로 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성격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런 이게 아동의 인생을 좀 약간 결정짓는 그런 결정이 또 있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 업무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두 번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자 E)

이제 그 ○○시는 팀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때 인지 수준이 조금 유하시서,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일반 사례로 판단을 하세요. 담당자가, '어 이걸 아동학대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회의 때 팀장님이, '아유 그거는 아동학대 아닌 거 같아.' 근데 이제 어떤 시는 팀장님이 너무 또 이렇게 예민해서 학대로 다 잡고. (참여자 D)

또한 자녀양육 경험과 학대폭력 피해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한 참여자는 자녀양육 경험이 없거나 미혼인 경우 학대 상황이 어린 시절의 나였다면 힘들었을 상황으로 인식되어 아동의 입장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보호자의 상황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렸을 때, 저희도 부모님이 싸운 거 보면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기억은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결혼 유무도 그렇고요.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조금 부모님 마음을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아동의 입장에서 더 보게 된다고 해야 하나? (참여자 B)

일단 자녀 양육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녀를 안 키워본 미혼 분들은 엄격하죠. 그리고 좀 키워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수긍을 하죠. 부모 입장을 더 이해를 하는 거죠. (참여자 D)

학대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일부 참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다른 참여자들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도 때리지 않고, 학대 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낮았던 과거 시기에 본인이 맞았던 경험이 있었으나 이를 당연시하였던 한 참여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을 아동학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본래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맞고 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맞고, 부모한테도 맞고, 군대 가서도 맞고. 다 맞고 살았는데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맞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 아동학대야' 이래 버리니까는.... 처음에 그 사건을 접하고 '그게 아동학대야?', '그렇다'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맞은 적이 있으니까는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 '그게 아동학대인가?' 약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참여자 E)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많이 맞고 자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니까 손에 꼽, 한 몇 번 안 돼요. 평생을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를 안 때리면서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 학대 판단할 때 조금, 남들보다 좀 엄격하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또한 학대 판단 시 사례관리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부모교육, 가족 기능강화서비스 등 일련의 서비스로 인해 대상자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에 감안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아동학대라는 어감 때문에 불만을 갖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나 유관 기관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양육 기술 교육, 아동안전교육, 뭐 가족캠프, 가족기능 회복 등을 도와드리니까. 아동학대라고 판단된 것 자체는 좀 그랬지만, 이후에 만족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은 제가 아동학대를 판단 하더라도, 나의 지금 이러한 결정이 대상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참여자 A)

이제 도움을 드려서 이런 게 다시 재신고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사례관리라도 좀 시켜서 이 집을 좀 도움을 줄까. 그러려면 아동학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참여자 F)

다. 지자체의 조직적인 사례 검토와 결정체계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현장 판단, 자체 사례회의, 통합 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b, p.213). 현장조사 시 학대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학대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b, p.213). 단독 판단이 아닌 협의 과정에 의한 판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자체 사례회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먼저 시군구 내에서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 판단 여부를 결정한다(보건복지부, 2024b, p.213). 인터뷰 결과, 자체 사례회의 참석 인원의 구성은 대부분 지자체의 아동보호팀(지자체에 따라 담당팀의 명칭은 상이) 팀장과 팀원들로 이루어졌다. 회의의 구성 인원은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규모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인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에는 동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체와 팀장이 함께 자체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인 미만인 지자체에서는 학대 외 사례의 아동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판단을 위한 자체 사례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자체 사례회의의 진행은 지자체 아동보호팀장이 주재하며, 회의 빈도는 해당 지자체의 사례 규모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주 2회 혹은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필요시에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체 사례회의의 의사결정 방식은 시군구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자체 사례회의 참석자(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팀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아동보호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아동보육팀의 안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렇게 2명만 있어요. 학대 업무. 네 업무는 저 혼자 하고 있고, 업무 대행자가 있긴 한데, 사실상 거의 저 혼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 보고서나 사례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먼저 자체 회의해요. 저희는 팀장님,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공무원. 이렇게 셋이 같이 회의하거든요? 해서 이제 먼저,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발표하고, 거기서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판단이 어렵지 않은 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90%는 자체 회의에서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저희 사무실 자체에서 과장님, 계장님, 저 3명을 이제 3명이 모여서 하는 자체 사례회의가 있고. (참여자 E) 시청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팀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조사자들 다 이제 전담공무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주 2회 하거든요. (참여자 D).

사례 개요서를 작성을 해서 매주 아동보호 팀장을 포함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체가, 저희는 매주 수요일 아침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담당자가 자신의 의견과 판단 근거를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을 포함한 조사 공무원 전체가 의견을 공유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A).

인터뷰 참여자들은 학대 판단을 위해서 자체 사례회의는 필수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학대 의심 사례 중 자체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좀 판단이 어렵지 않은 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90%는 자체 회의에서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기본적으로는 자체 사례회의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하고요. (참여자 E)

자체 사례회의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례의 특성은 주로 피해(의심)아동과 피신고자 간 진술이 대치되거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할 때, 집단 사례인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위험한 경우, 민원 등 논란이 많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자체 사례회의와 비교할 때, 통합 사례회의와 사례결정 위원회를 통한 판단을 좀 더 신중한 판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 아동과 피신고자가 진술이 전혀 다르고, 그 진술 외에는 아무런 관련 증거가 없어서 저희가 어느 한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통합 사례회의나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크게 개인 사례와 집단 사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집단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학원, 학교와 같은 다중의 아이들이 뭐 교사나 보육 직원으로부터 당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A)

다만 너무 논란이 심하다든지 진짜 좀 사안이 중대하고 위험해서 좀 심각한, 상위권으로 여기서 자체 사례회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에 이걸 안건을 상정해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자 E)

2) 통합 사례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는 사례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의료, 법률, 복지, 임상심리, 학교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b, p.213). 인터뷰 결과,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 중 특히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례는 통합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사례회의의 구성원과 빈도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주기적(월 1회 등)으로 개최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회의 구성원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APO)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며, 그 밖에 의심 사례와 관련된 기관(보호시설, 사례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법률기관) 담당자 등, 피해(의심)아동의 특성 및 사례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법률, 의료 및 교육 등)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동학대 시스템상 두 가지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합 사례회의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 두 위원회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차이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통합 사례회의 경우에는 매달 1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석하는 구성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PO,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분.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관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뭐 변호사 이런 분들 초청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구요.... 통합 사례회의 경우에는 따로 투표를 진행하지는 않고 그냥 토의식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참여자 A)

기본적으로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랑 경찰분들은 꼭 부르구요. 거의 기본적으로 부르는 상황이고, 그 외는 이제 관내 드림 스타트 사례관리사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군청의 희망복지계 사례 관리하는 선생님들. 또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상담복지 선생님. 이런 분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동이 예를 들어서 초창기 신고 때 1366. 이제 그런 가정폭력 상담 그쪽에 이제 입소했다 하면은 그때 당시 입소 시설 관계자분도 모셔와가지고 아동의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동이 이제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는 보호시설 관계자분 모셔와가지고. (참여자 E)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례 판단을 위해 통합 사례회의 대신 아동학대 정보 연계협의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보연계 협의체는 시군구 차원에서 개최하는 아동학대 유관 기관의 연계협력 협의체이나, 지자체 관련 평가에 해당 협의체의 개최 횟수가 반영되다 보니, 이를 통합 사례회의 대신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은 결정하는 거는 통합 사례회의가 맞는 것 같은데, 정보연계협의체, 그 아동의 지원이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건수를 채우려고 정보연계 협의체로 서로 상담도 하고, 그걸로 사례 판단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긴 해요. 정보연계협의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요. 읍·면사무소 직원도 불러서 이렇게 아동 지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시설이나 이런 데도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통합 사례회의는 경찰이나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변호사, 의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여자 B)

3) 사례결정위원회

자체 사례회의나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판단 결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주연 외, 2023).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은 시군구 단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의 원가정 분리 및 복귀,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 아동학대 판단 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활용된다(아동복지법, 정선욱 외, 2023). 인터뷰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사례결정위원회를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최종 심의 및 결정 기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 내 유관 기관의 전문가로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으로 이루어진다.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은 과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자체적인 판단에 부담이 있는 사례라고 인식될수록 권한이 있는 기구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좀 더 큰 기구로서, 이 기구의 경우에는 관련 서의 여성·청소년 과장, 변호사, 워킹맘 이력 관내에 아동학대 자문에 조연을 주실 만한 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인데, 저희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거나, 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A)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 부 이렇게 해서 재적 의원 중 7분의 4 이상이 찬성했는지 가지고 사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우선 각 발언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이 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신 이후에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좀 저희가 사례를 판단하고 있고요. (참여자 A)

조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거를 계속 의견을 주변에 계속 얘기하시다 보니까는, 저희가 자체 사례회의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정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차원에서 사결위(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E)

〈표 3-5〉 지자체 사례 판단 시 활용 가능 회의

구분	자체 사례회의	통합 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
활용 특성	학대 판단 시 필수 실시	외부 전문가(사법, 교육, 의료, 임상심리 등)의 자문이 요구되는 사례	자체 사례회의,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판단 결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 주체	자체 사례회의의 참석자 (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통합 사례회의의 참석자(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 법률, 복지, 임상심리 등 관련 전문가 중 해당 사례의 판단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시군구에서 위촉한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
의사결정 방식	지자체 아동보호팀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 협의	통합 사례회의의 참석자 협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의 심의 및 과반 초과 동의 시 결정

출처: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1차 인터뷰 결과

라. 재판단

1) 이원화된 학대 판단 구조와 재판단 가능성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행정기관과 수사/사법기관은 아동학대와 아동 사례 범죄에 대해 각각 판단하고 있다. 이원화된 학대 판단 구조상 양측 간의 판단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원화된 판단 구조에 따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판단의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였으나 관련 수사 또는 사법 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또는 지자체에서는 일반 사례로 판단하였으나 수사 또는 사법 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이다.

〈표 3-6〉 이원화된 판단 구조와 판단 불일치 경우의 조합

구분	행정기관	수사/사법 기관
판단 일치	학대 사례	혐의 있음/유죄
	일반 사례	무혐의/무죄
판단 불일치	학대 사례	무혐의/무죄
	일반 사례	혐의 있음/유죄

출처: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 개정); 아동학대처벌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일부 개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인터뷰 참여자들은 〈표 3-6〉에 제시된 판단 불일치 조합 중에서는 지자체에서 학대로 판단하였으나, 수사/사법기관에서는 무혐의로 판단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는 행정기관이 사법기관보다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기준의 강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가시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한 신체학대, 성학대 혹은 심각한 방임 사례에서보다는 정서학대 사례에서 행정기관의 판단과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학대 판단했는데 사법기관에서 무혐의인 게 더 많아요. (참여자 D)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찰보다는 좀 더 판단을 좀 세게 합니다. 아동학대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정서학대 부분들은 경찰에 잘 접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서학대 부분들은 좀 이렇게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있는... 심각한 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진행해서 할 때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문제, 또는 성 학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방임해서 아이를 아사 직전에 구출한다든지,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이거는 학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진행하는데, 애매한 정서학대는 잘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서학대를 판단 많이 합니다. (참여자 F)

이 같은 경우 발생 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수사/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사법기관의 해당 사례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판단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 혹은 재판단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들은 통상 사법기관의 판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지자체 판단 후 사법기관 판결 결과를 알 수 있음에도 사법체계에서 판단 결과가 지자체로 공유되는 체계는 부재하다고 하였다.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사법

기관의 판결이 판결 즉시 지자체로 공유될 수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경찰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봐야 할까, 아닐까, 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하고 통화를 해서, APO 통화를 해서, 해당 사안을 경찰이 어떤 점에서 이제 무혐의로 판단했는지를 내용을 공유 받고, 만약에 경찰에서 정말, 전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무혐의를 한 것이라면, 저희도 경찰에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경찰에서 아동학대 범죄 혐의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당사자가 사법 처리를 받을 만큼의 중한 사안이 아니라서 무혐의로 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좀, 덜 부담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A)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는 사후 관리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행위자분한테 이리이러한 재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는 사법 체계에서의 결과 나오면 빨리 알려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비공식적인 루트로 그냥 저희가 정보를 접수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사법 체계에서의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면 저희가 업무를 하기에 있어서 또 좀 수월한 부분도 있고. (참여자 E)

2) 민원에 의한 재판단 가능성

아동학대로 판결된 사례에 대해 재판단이 필요한 다른 경우는 학대 판결 사례의 행위자에 의해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행정 절차로서 재판단을 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이나 소송인이 학대 판단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기할 때, 재판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재판단 요건이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면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재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화하였다.

이제 대부분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는 학대 판단했는데 신체, 정서학대를 판단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억울해서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사님. 정식 재판을 청구 해가지고, 판사님 법원들이 이거 학대 아니네요. 판결문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판결문대로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려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 설정돼 있는.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설정한 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서 이거를 재판단해볼까요? 라고 의견을 올리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참여자 F)

근데 대상자가 “내가 왜 아동학대냐?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서 요청을 하면 재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단을 요청해 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재판단을 할 요건이 되냐, 안 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재판단을 해야 되는 요건이라고 한다면, 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최종 판단을 하고요. 이거는 재판단을 할 건이 아니다, 라고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그냥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고, 원래 판단을 유지해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참여자 D)

4. 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응급조치, 즉각분리, 피해아동 보호명령, 보호 조치)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응급조치로 인한 아동 분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해아동 혹은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나 동거 중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로서, 72시간 동안 분리보호가 가능하다. 즉각분리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 현장조사 중 학대 피해가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재학대 발생 우려가 크고,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 거부, 기피,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기간이 7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응급조치 기간 이후까지 피해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분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청구권자(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자체장)와 가정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조치가 이루어진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1항).

학대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는 학대피해아동 뿐 아니라 보호자의 의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며, 아동에 대한 원가정 분리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혹은 성인이 될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아동보호를 할 수 있다.

〈표 3-7〉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조치 유형별 특성

구분	응급조치	즉각분리 (일시보호)	피해아동 보호명령	보호 조치
법적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4항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1항 제4호~6호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조치 사유	현장출동,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한 경우, 혹은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 확인 및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접수된 아동 중 현장조사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 거부, 기피, 거짓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방해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판사직권,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자체장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 학대피해아동은 이에 해당 - 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
조치 주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지자체장	청구권자(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자체장), 가정법원판사	지자체장
아동보호 장소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가정위탁	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가정위탁(연고자)	친족보호, 가정위탁, 시설보호, 입양
아동보호 기간	72시간 이내	보호 조치의 결정 시까지	최대 1년, 단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제51조 1항)	18세 도달, 보호 목적 달성 시(제16조 1항)
기타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필요	법원 결정 필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필요

출처: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 개정); 아동학대처벌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일부개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의사결정의 주체와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조치로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결정과 보호 조치 결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가.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절차

1) 학대피해 현장에서 아동의 응급조치·즉각분리

업무 지침상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의심)아동을 원가정 등 기존에 보호되어 있던 장소에서 긴급히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 응급조치 혹은 즉각분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a, pp.16-17). 응급조치와 즉각분리의 가장 주요한 차이는 원가정 분리 가능 시한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급조치는 72시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시한이 초과된 경우 지자체의 현장조사, 판단 및 보호 조치 결정 완료까지 피해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의 우려가 큰 경우에 즉각분리를 통해 아동을 학대피해 위협으로부터 지속 보호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응급조치나 즉각분리 조치된 아동은 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혹은 일시보호시설 등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먼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가고,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 있어요. 영아 같은 애들. 그런 데는 이제 일시 보호소로 가요. (참여자 D)

2) 지자체의 보호 조치

업무 지침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현장조사의 결과, 사례 판단 결과, 그리고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b, pp.213-214). 응급조치와 즉각분리가 긴급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 지자체의 보호 조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모든 조사와 사례 판단이 완료된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조치이다.

학대피해아동이 현장출동 단계에서부터 응급조치나 즉각분리로 분리되어 왔다면, 이 단계에서는 분리보호를 지속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며,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되어 왔다면, 모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이 분리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한다. 인터뷰 결과,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는 주로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호 조치 단계에서 신규 분리 조치보다는 응급조치나 즉각분리 조치에 따라 분리된 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분리는 할 수는 있는데, 보통 다 처음에 신고 접수돼서 현장 나갔을 때 분리 결정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C)

이와 같은 보호 조치 계획의 수립 과정상 자체 사례회의,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0; 이승현 외, 2022 재인용), 보호 조치 계획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 조치가 결정된다(보건복지부, 2024b, p.214). 지자체의 보호 조치는 피해아동 보호계획서에 포함되며, 분리 조치 이후의

점검 및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담 요원 등에게 전달된다(보건복지부, 2024, p.214).

학대피해 현장에서 아동을 응급조치·즉각분리로 일시보호한 후, 지자체의 보호 조치로서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터뷰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부모의 상태, 가정환경 등에서 위험 요인이 감소하였는지와 더불어 친권자의 신청과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여, 자체회의 혹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요. 일시 보호는 안 열어도 돼요. 축약해서 할 수 있어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자체 회의처럼 똑같이. 팀장님하고 보호 전담요원하고, 그렇게 해요. (참여자 A)

조금 위험 요인이 감소했다든가. 그럴 때 하는 것 같고, 사실은 부모님이 아동 복귀하면 어떻게냐라고 요청하실 때 많이 하는 편이고 해서, 친권자의 신청이라고 봐야. (참여자 B)

부모의 상태가 지금 아동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어떤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사례회의를 열어가지고 현재 이 집 상태가 이렇고, 이러한데 가정 복귀가 좋을지. 아니면 장기 보호로 넘기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게 되고. 그런 내용 등을 총합을 해가지고 사례 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참여자 E)

있긴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아이를 설득해서.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환까지는 있게끔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또 아보전에서 가정 복귀할 때도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더 길게 있으라고 하는 편이고.... 그런 경우도 이제 사실 척도는 없고,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집으로 돌려보내되 학대 사례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제 추후에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잘해주긴 하죠. 네. (참여자 C)

나.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기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조치를 위한 기준에는 지침상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가 있다(보건복지부, 2020; 이승현 외, 2022 재인용).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들 중에서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동의 의사, 아동학대 경험의 반복성,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 학대 행위자의 아동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개발되었다(김기현 외, 2019). 그러나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분리 조치가 응급조치 혹은 즉각분리 등 현장출동이나 조사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척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응급성이나 긴급성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즉각분리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판단해 봤을 때 아동이 급박한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분리를 안 시키면 추가적으로 아동이 위해를 가할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은. (참여자 F)

척도 같은 건 따로 없고, 그냥 경찰이랑 얘기해서 현장 상황 보면서 결정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C)

인터뷰 참여자들이 주로 적용하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원가정 분리 기준에는 급박한 위험의 응급성, 추가적인 위험 노출 우려, 아동의 원가정 분리 의사, 신체적 학대로 인한 상흔, 재신고 혹은 재학대, 행위자의 특성(알코올 중독, 태도 등) 등이 포함되었다.

우선 좀 그 분리 의사결정 기준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아동이 상흔이 있을 만큼 많이 맞았느냐. 정말 그거를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상흔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침상 아동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상흔이 있고, 아동의 분리 의사가 명확하면 이제 아동의 분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상흔도 있고, 이제 아동의 분리 의사가 있긴 하지만, 보호자에게 저희가 지침상 분리하기 전,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보호자가 통화했을 때 자기가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좀 아동에 대한 그 양육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면 아이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이제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의 의사가 명확하고, 상흔이 명확하면 분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A)

재학대가 의심된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조금 위험하겠다, 분리 안 하면. 그럴 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분리는 즉각분리나, 응급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분리 기준으로서 응급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원가정 보호 시 아동의 신체적 학대가 재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이며, 영유아와 같이 아동 본인의 의사표현이 어렵고 자기보호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상흔만으로도 분리 조치를 하는 편이었다. 또한 정서학대보다는 신체학대가 응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영아들. 자기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애들 같은 경우에 명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 F)

재학대가 의심된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조금 위험하겠다 분리 안 하면. 그럴 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분리를 위한 응급성 기준은? 아동이 다치겠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맞겠다. 신체적 학대당하겠다. (참여자 B)

정서 학대라는 것도 물론 학대의 일부이지만, 정서 학대를 저희가 지금 당장 분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의 신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이 신체 학대 경우에는 오늘 당장 돌아가서 아동이 친모로부터, 친부로부터 어떤 일 겪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참여자 A)

조사자가 판단했을 때 이 아이를 집에 두고 오면, 아이 안전의 위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행위자가 음주가 매일매일 심각하고, 그리고 재신고도 여러 번이 됐었고, 아이 나이도 어리고.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적극 고려를 해야죠. (참여자 D)

또한 아동의 분리보호를 위해서는 분리에 대한 아동의 의사(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이 분리보호를 원하는 의사가 명확한 경우, 분리 조치가 쉬운 편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대의 아동이 원가정 분리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각분리 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연령대 같으면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집에 있기 싫다. 집에 있으면 아빠가 또 때릴 것 같다. 그러면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표정이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애를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가 완전히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애가 완강하게 가기 싫다고 하면 제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참여자 F)

아무리 자기가 이 집에서 힘들고 주변 환경이 되게 안 좋아도, 엄마랑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강제로 분리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조금 설득하다가, 설득까지는 해요. 설득하다가 이제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겠다고 하면은 그냥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에요. (참여자 C)

5. 아동학대 사례 종결 결정

가. 종결 절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보호 조치와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 의하여 일정 기간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의 종결 결정 권한은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있다(김호현, 2024). 인터뷰 결과, 종결 절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종결 요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사례관리 종결 요청을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례 관리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최한 종결회의(공공 사례연계회의)에 참석하여 협의 후에 사례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를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다가, 아보전 상담원이 이제 이게 종결해도 될 거 같아, 라고, 이제 요 종결 요건에 해당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아보전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공공연계회의에 올릴지 말지, 이제 논의를 하고요. 공공연계회의에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은 이제 공공연계회의 때 시청에서 참석하고, 거기에 이제 아보전에서도 같이 참석해가지고 종결 논의를 해요. 종결 논의해서 이거를 종결할지 말지. 거기서 결정을 하고요. 종결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종결 전 모니터링 3개월 동안 진행하고, 또 3개월 이후에는 이제 종결 보고서를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에서 종결 보고서를 보고, 최종적으로 사례 종결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참여자 D)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종결 회의한다고 저희 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와요. 가서 들어요. 지금까지 어떤,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아동의 위험 요인이 몇 점에서 몇 점으로 감소했고, 보호 요인이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올랐다.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좀 듣고 결정해요. 이 정도면 복귀해도 괜찮다고 저희도 저도 생각하면은 계속 결정하는 편인 것 같고. (참여자 B)

종결 여부의 결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사례 종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자체에 사례관리 종결 보고서를 송부한 후에도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상 사례 종결 버튼을 눌러야 종결이 완료되고 있다.

나. 종결 기준

사례 종결의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는 기준에는 사례관리 중 6개월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더불어 학대 위험요인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보호 요인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학대 위험요인에는 행위자 및 보호자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심리정서 상태 등)과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도벽, 문제행동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건 사례관리 종결을 결정하기로 한 6개월 동안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참여자 A)

학대 유발 위험 요인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지만, 학대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용에 기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동이 도벽이 있다거나, 문제 행동이 있다거나, 혹은 친부나 친모가 아직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았단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뭐 향후, 그전까지 6개월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런 위험요소가 있으니 학대를, 사례관리를 종결하지 않거나, 혹은 저희가 보통 종결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3개월간 모니터링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과정 기간 동안에 통화나 유선 조사가 아니라, 좀 대면조사를 진행해서 좀 유념 있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자 A)

인터뷰에 참여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본인들에게 사례 종결의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종결 기준의 적용이나, 종결 결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에 따른 담당자 교체가 빈번한 상황에서, 신규 담당자가 과거(최소 6개월 이전) 피해아동 보호계획이 수립되었던 사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호소하였다. 따라서 종결 결정 시에는 대다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종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은, 이게 6개월이 넘어서 거의 종결하잖아요. 보통 저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전임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서, 최대한 그 전의 자료나 이런 걸 찾아서 어떤 사건인지 보고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거의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의 말을 듣고 거의 종결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참여자 B)

일정 기간. 거의 6개월에서 1년 하면은, 1년 정도 하면 종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종결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제가 넘겼던 사례들을 종결한 게 많지 않아요. 다 그 전임자들이 했던 사례들을 종결시켜서, 이 사례가 제대로 조사한 거에 맞게. 이제 개입이 돼서 종결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C)

상담원님이 저한테 주무관님. 이거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좋아졌고, 뭐 어찌고저찌고. 아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여자 D)

제3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

국내 아동학대 대응 업무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한 의사결정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의사결정 경험의 어려움과 지원 욕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업무 경험에 따른 어려움, 학대 판단의 어려움, 아동 분리 판단의 어려움, 조직과 정책에 따른 어려움(의견)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3-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

범주	내용
아동학대 업무 경험에 따른 어려움	아동학대 업무 무경험자에게는 버거운 업무
	아동학대 업무 경험이 축적될수록 수월해지는 업무
학대 판단의 어려움	학대 유형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아동 특성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진술의 질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다양한 요인이 상충되는 사례 판단의 어려움
아동 분리 판단의 어려움	아동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부담감
	아동의 분리 의사에 따른 분리 판단의 어려움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조직과 정책에 따른 어려움(의견)	1인 배치 지자체의 한계
	공무원 순환보직의 한계
	교육과 슈퍼비전의 한계
	조직 내에서 아동학대는 후순위의 영역
	조기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엇갈린 견해

1. 아동학대 업무 경험에 따른 어려움

가. 아동학대 업무 무경험자에게는 버거운 업무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조사 시 부담이 크며, 수집되는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특히 학대피해아동과의 상담 기술은 타 업무영역의 경험으로부터 획득하기 힘든 전문성이며, 신규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이 업무가 매우 생소하고 버겁게 느껴질 것이라고 보았다.

저희도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 좀 고령층이라든지, 중·장년층 이상을 상담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한다든지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는 좀 난처했던, 많이 난처했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저는 솔직히 행위자분들을 조사하러 가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목을 졸랐다. 그럼 이제 행위자한테 가가지고 목을 조르셨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질문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질문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웠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여자 E)

나. 아동학대 업무 경험이 축적될수록 수월해지는 업무

반면에 경험이 축적될수록 폭력적인 상황이나, 항의 및 민원에도 둔감해지며, ‘간도 커져서’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아동학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동의 분리 조치 결정이 학대 판단 결정보다 더 수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신규 인력인 참여자일수록 아동의 분리 조치 결정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경력자들은 학대 사례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지만, 분리는 학대 사례라는 전제하에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 결정의 기준이 더 명확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신규 인력인 경우에는 분리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뭐 어떤, 학력이나 어떤 그런 공부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현장에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가 제일 큰 도움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례를 접하느냐. 그게 제일 도움이 되죠. (참여자 D)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많은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또 이제 보통 저희가 하는 일이 경찰도 아닌 것이, 또 판사도 아닌 것이. 하여튼 좀 희한한, 어디 중간쯤에 일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판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좀 보이기도 하고... 쳐들어와서 항의하고, ‘왜 남의 가정을 파탄했나?’ 부터 해서 어제도 제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요. 소송하겠다고. 하여튼 인도 좀 박하고 조금 간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이 좀 커지는 이런 것도 좀 생기고. 좀 무덤덤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여자 F)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리를 한 이후에 그러면은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분리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혹시 내 결정이 뭐 이 아이의 인생이나 이 가정을 혹시 큰 위기 상황에 빠뜨리거나, 파탄을 내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분리를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죠. 그리고 분리 이후에 행위자가 나한테 엄청난 항의를 하지는 않을지. 뭐 이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D)

2. 학대 판단의 어려움

가. 학대 유형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특히 부부싸움 노출을 포함한 정서학대 사례의 경우 증거의 확보와 학대 판단이 가장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정서학대가 아동에게 끼친 해(harm)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추정해야 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부부싸움 노출로 인한 정서학대 사례의 경우, 노출의 정의(듣는 것인지? 보는 것인지?), 몇 회의 노출이 학대인지?, 아동의 인지능력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학대가 성립하는지?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데, 아니면 방임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건 어려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참여자 B)

다만 정서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폭언, 고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제공받은 매뉴얼상에도 무슨 단어를 썼을 때 정서학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아이가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자 A)

정서학대라는 게, 뭐 신체학대 같은 경우에는 상흔도 남고,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동반이 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근데 정서학대라는 게 굉장히 그 개념 자체가 아동복지법에도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정서학대라는 게. (참여자 D)

그다음으로 학대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방임 사례로 나타났는데, 일부 저소득가정에서의 방임 정황에 있어 보호자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신체적 학대 사례의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학대 판단 또한 용이하다고 하였다.

방임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게 이제 고의적이나 아니냐. 이런 걸 묻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아이를 뭐 한 3시간 정도. 혹은 5시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하면 그게 방임일까?...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진단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양육에 소홀한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방임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참여자 D)

나. 아동 특성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인터뷰 참여자들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 사례에서는 학대 정황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아동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행위(의심)자의 진술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에 의한 폭행이 선행된 사례에서 보호자가 자기보호를 위하여 고함, 욕설, 신체적 폭력이 이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학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아동이 어릴 때? 어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술에 의지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위자의 진술로만 판단해야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저희가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참여자 B)

어떻게 보면 쌍방이라고 하죠? 아이도 이제, 아이가 먼저 어른한테 뭔가를 했을 경우에는 어른은 이제 자기방어로 아이한테 조금 해가 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더라고요. (참여자 C)

ADHD라든지, 아동의 특성이 있는 집들이 좀 있어요. 애들이 너무 과잉 행동이 심해서 집에 있는 물건 이 남아나지 않는 집도 많거든요. 부모를 때리고,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때린 건 맞아. 근데 갑 자기 애가 주먹을 아버지한테 날린 거죠. 눈에 불이 번쩍하니까 이거 자기 보호한다고 말하는 거지. 엄 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참여자 F)

다. 진술의 질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인터뷰 참여자들은 피해아동과 보호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학대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호자 진술이 반복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학대로 판단하기에 용이하다고 하였다. 학대 신고 건의 목적이 아동의 보호보다는 이혼(준비) 가정의 양육권 확보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에도 진술의 의도와 진실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앞뒤 말이 안 맞다든지. 이제 엄마 말 틀리고, 아빠 말 틀리고. 어제는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말 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 이거 조금 약간 진술이 신빙성이 좀 없다, 라고 봐서, 아이의 진술이 없어도 학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 되죠. (참여자 D)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부가 아이 엉덩이를 1대 때렸다, 등을 1대 때렸다. 신체 접촉이 있던 건 사실이었지만 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사례를 아동학대로 판단을 하자니, 잘 키우고 있는 친부에게 저희가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다고 해당 사유를 판단하지 않자니 왜 시청 공무원이 법상 금지되어 있는 친부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느냐며, 또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뭐 저희가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아동학대가 정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사소한 경우이지만 두 분이 서로의 입장을, 그 우위에 있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참 판단하는 게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A)

라. 다양한 요인이 상충되는 사례 판단의 어려움

인터뷰 참여자들은 학대의 심각성, 행위의 발생 횟수,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 학대 피해로 인해 나타난 후유증 수준, 부모의 평소 양육 태도, 평상시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학대 인식 수준, 재신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학대징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반면, 일부 사례는 기준별로 다양한 요인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사례인데 2회 이상 발생한 사례 혹은 상당한 사례이나 1회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학대의 심각성, 행위의 발생 횟수, 아동의 자기 보호능력, 학대피해로 인한 후유증, 부모의 평소 양육 태도 및 자녀와의 관계, 학대 인식 수준, 재신고 가능성 중에서 의사결정에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즉, 다양한 요인이 서로 상충되는 사례의 경우 종합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학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니까 단순 말싸움인지, 아니면 칼을 들고 했는지. 서로 치고받고 때리면서 뭐 출혈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경미하나, 아니면 상당하나, 아니면 심각하나. 그렇게 이제 또 판단을 하고요... 일회성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일반 사례로 판단하자. 그리고 근데 심각한데, 심각한 수준인데 다회성이다. 다회성 노출이다. 이거는 무조건 정서 학대.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끼는 것들이 좀 애매해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미한데, 다회성. 상당한데 일회성. (참여자 D)

3. 아동 분리 판단의 어려움

가. 아동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부담감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동의 분리 판단이 아동과 부모를 떼어 놓는다는 부담감과 아동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무게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본인의 분리 조치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지 못하였다고 인식하는 경우, 이를 ‘실패’로 인식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이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아동의 분리보호 조치가 실패했다고 인식하였던 한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이후 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을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내린다고 하였다.

일시 보호했다가 장기 보호로 넘어갈 때는 좀. 이게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아동의 인생에 맞는 건가. 아동이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는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최선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애를 이 사실로 장기 보호를 보내가지고 이 선생님도 안 좋은 기억을 만들게 되었고, 이 아동도 나 때문에 안 좋은 길에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분리 결정을 과연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계속 좀 되돌아보게 되고... (참여자 E)

분리는 어찌 됐건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해서 이제 시설에 있게 하고, 그리고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아동이 어디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부모와, 아동과 부모를 떼놓는다는 생각에 결정하는 데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참여자 A)

나. 아동의 분리 의사에 따른 분리 판단의 어려움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아동의 원가정 분리 시 아동의 분리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분리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이 보기에 분리하면 바람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분리 거부 의사가 확고한 사례, 청소년이 자기 신고로 분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학대피해와 자기보호의 어려움으로 인한 분리 요청인지 그 의도가 불명확한 사례에서 분리 결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의사도 조금 존중해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학대 행위자인데, 아동이 막, 나는 부모님처럼 있고 싶다. 가기 싫다.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B)

분리 판단에 있어서 뭔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이가 뭐 한, 고등학교 2학년 인데 나 분리해주세요. 나 이 집에서 살기 힘들어요, 라고 해요. 그런 경우는 분리가 과연 필요할까? 충분히 자기 보호 능력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자기를 분리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학대보다도? (참여자 D)

다.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여 원가정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하더라도 분리보호 가능한 시설이 관내에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특정 성별, 연령대의 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하여, 분리 조치를 위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분리 조치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일단 저희 관내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분리 조치를 할 시설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관외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 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애들이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에 있는 시설에 보낼 때 시설 관계자분한테 혹시 애들 등교 좀 시켜줄 수 있냐 하니까는 안 된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근데 애는 학교는 또 가고 싶어 하니까는. 좀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분리 조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여자 E)

4. 조직과 정책에 따른 어려움(의견)

가. 1인 배치 지자체의 한계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인 배치된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배치된 1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다. 물론 통합 사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외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정 자료 마련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결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인 배치 지자체에 근무하는 참여자들은 신규 인력 배치 전에 전임자가 이직하게 되므로, 전임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의사결정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기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동행 조사가 어렵고, 단독 의사결정에 대해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팀은 없습니다. 이제 아동청소년계 안에 이제 전담공무원인 제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군 단위에서는 저처럼 다 이렇게 혼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E)

어쨌거나 전담공무원이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 많고 하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혼자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또 혼자 하다 보니까는 경험 자체가 전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있는 전담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는 인사이동으로 한 명이 빠지고, 새로 온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주사님이 조사 기법이라든지 이 사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전수받는 게 좀 그래도 수월한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전수받기가 쉽지가 않고. (참여자 E)

또한 1인 배치 지자체에서는 주로 사례 규모가 적은 편이어서, 검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무로 하는 업무의 일정이나 업무량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어떨 때는 아동학대 조사보다는 다른 업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동학대 조사가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자 E)

학대 의심 사례가 연간 소수 발생하거나 혹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후 업무 수행 경험을 쌓기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업무 환경은 이들의 아동학대 의사결정 관련 전문성 축적에 영향을 주며, 농어촌 지역으로 1~2인만이 배치되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증원이 제한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의견이었다.

전담공무원이 바뀌었는데 1년 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한 건도 안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인접 군에 한 번도 안 생긴 연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도 사건을 접하지 않으니까는 아무런 경험이 쌓이지 않고, 이렇다가 또 다음, 그다음 해 인사발령 때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또 오면은, 그때 사건이 생기면은 전임자한테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는 모른다. 한 번도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 B)

나. 공무원 순환보직의 한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인력운영체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에 걸림돌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현장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점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해당 업무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배치되어야 하는 공무원 인력배치체제의 특성상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희망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저 전까지는 한 3~4분이 6개월마다 바뀌었어요. 세 번이요. 세 번. 세 번이니까 1년 6개월이죠. (참여자 B)

짧게는 6개월이고요. 길게는 2년 반, 3년까지는, 신청을 하면은 6개월 만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더 있고 싶다고 하면은 잔류희망을 쓰기도 하고. (참여자 C)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또 공무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또 다시 업무 그 숙지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이게 매번 반복인 거예요. (참여자 D)

저희도 한 1년 되면 다 바뀝니다. 그 종결 회의 갔는데 이 집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례 조사한 사람도 없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람도 한 다섯 번 바뀐 사람도 있어요. 한 사례를 5번 6번 바뀐 데도 있습니다... 무슨 현장감 있게 판단하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마치 남 얘기, 가상의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하는 사람하고 사례 관리를 쪽 끌고 가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참여자 F)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확보와 인력의 유지를 위해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활동비 등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격무부서 지정으로 승진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수당 지급 금액이 매우 적은 수준이고, 승진점수 가점 부여 점수도 낮은 편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동보호팀에서 근무하면은 그 근속 연수에 비례해서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점이 직원들이 느끼기엔 체감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점이 그렇게 팀을 넘게 할 만한 유인 요소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이 업무가 사실 조금 되게 임상적인 업무고, 그리고 되게 권한이 큰 업무거든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그냥 이렇게 순환으로 하지 말고, 신청을 받아서 일반직 중에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면서 이렇게 좀 하든지. (참여자 D)

다. 교육과 슈퍼비전의 한계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업무배치 전에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업무 초기에 온라인으로 이론 교육을 받고, 실습 교육은 업무배치 이후 수개월~1년이 지나서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중에는 실습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교육이 신규 배치 후 초기업무 수행 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필요할 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다.

실습 교육을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서 실습 교육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분명히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해서 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닌가... 배치하기 직전에 뭐 1달. 혹은 2주간이라도, 좀 사전적인 교육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배치됐으면 좋겠다. (참여자 A)

투입되기 전에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고요. 그냥 면사무소에 일하다가 이제 정기 인사 발령으로 이제 군청에 오게 되었는데, 아동학대 업무 보게 되었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원래는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있었는데, 네, 이론 교육은 들었었지만, 이제 실습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실습하면 5일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5일 동안 자리 비우기도 어렵고 해서, 실습 교육은 아직까지도 안 받고 있었고, 올해 아마 지금 9월 달에 이제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교육 자체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되기 전에 받아야 되지 않나? (참여자 E)

실습 교육 갔을 때가 조금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저는 1년 뒤에 갔거든요. 최근에 간 거여서. (참여자 C)

그러니까 교육을 들으라고 오긴 와요. 혼자 하고 있고, 이제 발령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육 간다고 하면, 눈치도 보이는 건 사실이어서, 강제성 있는 교육을 해주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처음예요. 발령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참여자 B)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는 슈퍼바이저라는 직위나 직급은 부재하며, 아동 보호팀장은 주로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에 슈퍼비전을 해 줄 수 있는 사례 판단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다만, 일부 참여자들은 경미한 사례이거나 민원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서는 팀장의 슈퍼비전이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판단 경험이 있는 기존 인력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슈퍼바이저 같은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신규 인력에 대한 현장 교육, 슈퍼비전 등을 제공하며, 신규 인력과 함께 2인 1조로 일정 기간 수습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경험이 많은 직원의 도움이 신규 인력의 아동학대 관련 의사결정에 상당한 지지가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는 팀장님한테도 여쭙보는 편이에요. 저보다는 이제 민원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했고. 악성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받아 보셨으니까. (참여자 C)

두 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공공화 이후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저희와 다르게 짧으면 4년, 길면 6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짧은 기간이고, 그분께서도 본인의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꼼꼼하게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참여자 A)

초반에 한 달 정도는 사례를 안 맡고 그냥 주변의 직원들 출장. 조사 가는 거 따라가 보고, 회의하는 것 조금 봐보고, 이렇게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는 안 맡고, 이제 보조로만 계속 따라갔던 거죠. 그때도 판단하면서, 이게 맞나? 하면서 계속 옆에 직원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사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현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전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핵심 전담요원으로 선정하여 일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자문 필요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들은 핵심 전담요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시로 필요한 슈퍼비전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렵고, 접근성이 낮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근데 그 핵심요원이 지자체마다 다 있지는 않아서, 지자체마다 1명씩 배치돼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참여자 D)

라. 조직 내에서 아동학대는 후순위의 영역

지자체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한 일반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 업무가 다른 대상자 복지 업무보다 더 후순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지원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동학대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실적이 되기 어려우며, 부모, 지자체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성과를 가져온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 분위기로 인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평가하였다.

저희 조직 내에서도 후순위에요. 왜냐하면, 단체장들도 이거는 부모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신고되는 것 자체도 원하지 않고, 가서 조사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걸 막 우리가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해서, 아동학대 판단 이만큼 했습니다 하면 단체장이 내세울 거리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자 F)

마. 조기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엇갈린 견해

인터뷰 참여자들은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기지원 시범사업제도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지 않는 일반 사례도 보호자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혹은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기지원 시범사업이 학대로 판단되지 못한 위험 사례를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학대 판단 의사결정을 더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다른 참여자들은 일반 사례에 대한 조기지원 가능성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 임계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 또한 조기지원사업의 실행력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집중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기 지원이 나왔는데,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닌 거 같아. 근데 내가 이걸 아동학대가 아닌 걸로 판단을 했어.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집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뭔가 아이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판단을 한 지자체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왜 너네 그때 그렇게 판단을 안 했어? 근데 이제 조기 지원이라는 그 중간 단계가 있으면, 어쨌든 아동학대는 아니지만, 조금 관리가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 조기 지원으로 연계해서 어쨌든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도 훨씬, 좀 부담이 덜하죠. 아동학대 판단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덜한 거죠... 이게 어느 순간 아동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딱 학대, 여기는 일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지원이 있어야 돼요. (참여자 D)

예산이 저희가 알기로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뭘, 제가 보기에는 신고되는 집에 우편물 하나 다 보내면 1년에 그거 다 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무슨 사업비라고 또 내려보내고, 또 실적을 내라 하면, 우리 사업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아래로부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지원하는 게 맞지. (참여자 F)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의사결정 현황과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 사례의 접수 결정은 대체로 비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고 내용에서 학대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만 일반상담 사례로 제외되는 등 접수되지 않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 사례의 접수 경로가 112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112로 신고되며, 112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이 접수판단(현장 종결을 할 것인지, 접수할 것인지)을 하게 되므로, 112 신고 건의 접수에 대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판단 결정 과정에서는 법적 정의, 매뉴얼 기준, 아동학대 판단 척도, 경찰 의견, 교육감 의견서 등을 활용 및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으며, 사례별로 단독 판단과 공동 판단(자체 사례회의, 통합 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이 병행되고 있었다. 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와 방임과 같이 가시적으로 증거가 입증되기 어려운 사례에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학대 판단 척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많았다. 또한 개인의 경험과 성향, 그리고 사례관리서비스 등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법-행정 간 이원화된 학대 판단 구조로 인해 재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로 판단하였으나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로 판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서학대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례에서 재판단의 요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한 아동의 분리 조치는 현장에서의 긴급 분리 조치와 장기 분리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구분되었으며, 인터뷰 결과 주로 현장에서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 지침상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리 조치는 현장출동이나 조사 중에 이루어지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척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분리의 긴급성이나 응급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이 분리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급박한 위험(주로 신체학대), 추가적인 위험 우려, 아동의 분리 희망 의사, 신체학대 상흔(아동저연령 시 바로 분리하는 편), 재신고(재학대), 행위자의 알코올 중독 혹은 태도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의 종결 결정 권한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있으나, 인터뷰 결과 순환보직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종결하게 되는 사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사례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직접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결 의견을 대체로 수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은 사례관리 중 6개월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위험 요인의 감소 및 보호 요인의 증가를 감안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아동학대 판단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업무 경험이 부족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이 크며, 경험이 축적될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었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된 특성으로서 정서학대 사례에서, 아동의 연령이 어려 직접 진술이 어려울 경우, 진술의 질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다양한 요인이 상충되는 사례에 있어서 학대 판단의 어려움이 컸다.

둘째, 아동의 분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는 아동의 인생을 결정짓는 판단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부담감과 아동의 분리 의사가 의사결정자의 판단과 상충될 때 발생하는 어려움, 분리보호 시설 및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분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등이 확인되었다.

셋째, 조직 및 정책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인 배치된 지자체에서 의사결정의 부담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과, 공무원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교육 및 슈퍼비전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한계, 그리고 조직 내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기한다. 첫째, 아동학대 판단 기준의 명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학대와 방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편이고, 다양한 사례요인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법-행정 간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과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 영역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적정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리 조치 결정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아동보호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 분리 결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다 실효성이 있는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평가도구가 아동분리 판단의 특수한 상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분리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리 조치 결정 시 적절한 슈퍼비전 및 공동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 혹은 법원 등 사법기관의 의사결정 지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순환보직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 아동학대 조사 및 의사결정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이러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업무 투입 이전의 사전 교육과 정기적인 교육 및 수시 슈퍼비전을 제공하여 경험이 부족한 신규 인력이 전문성을 축적하고, 의사결정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슈퍼바이저라는 직위(직급)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인식 제고 등 조직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대응의 중요성을 조직 내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사례

제2절 영국 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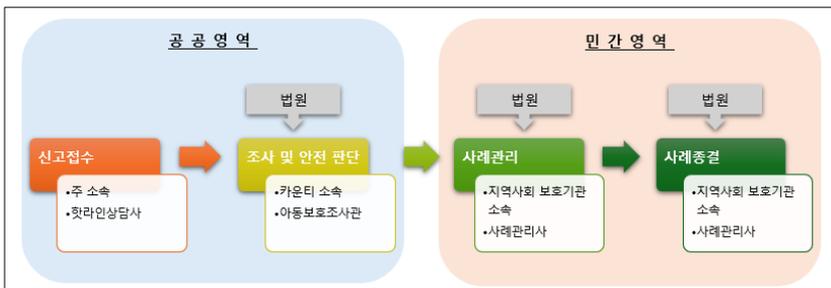
미국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의와 학대 대응 시스템이 주(state)마다 상이하게 운영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판단, 사례관리, 사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플로리다주는 2005년부터 사례관리 부분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이원화된 모델을 도입했다. 현재 플로리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는 공공기관이, 사례관리는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이러한 이원화된 아동학대 대응 모델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⁴⁾과 유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로리다주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인 공공영역에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플로리다주의 아동보호 실천 모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아동가족국에서,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1. 플로리다주의 아동학대 관련 의사결정 주체

플로리다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크게 신고 접수 - 조사 및 판단 - 사례관리 - 사례 종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단계마다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구분되어 있다. 신고 접수는 주 소속 핫라인 상담사가 담당하며,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현장 조사와 아동의 안전 및 학대 판단은 카운티 소속의 아동보호 조사관이 수행한다. 이 단계까지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응체계에 속한다. 아동보호 조사관의 조사 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 사례는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 보호 주도 기관(Community Based Lead Agency)으로 이관된다. 이후부터는 지역사회 보호 주도 기관과 협약을 맺은 지역사회 보호기관의 사례관리사가 사례를 관리하며, 사례 종결까지 담당한다. 대응 단계별로 주요 업무 책임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조사 단계부터 사례 종결 단계까지 법원이 개입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가정 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아동 분리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사가 내리게 된다.

[그림 4-1] 플로리다 아동학대 대응 단계 및 업무 주체



출처: 플로리다 아동가족국의 운영지침(FDCF, 2024a)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

2.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플로리다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추이 및 현황⁵⁾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비율

최근 5년간 플로리다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2020년에 신고 건수가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246,77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39,213건이 아동보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대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최근 5년간의 학대 의심 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65.4%에서 2023년 56.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신고 건수 중 현장 조사를 필요로 하는 학대 의심 사례로 선별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5) 의사결정의 현황은 미국 연방 아동국(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에서 발행하는 '2023 아동학대보고서(Child Maltreatment, 2023)'에 포함된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32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표 4-1〉 플로리다주의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의심 사례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 건수	250,178 (100.0)	230,598 (100.0)	241,417 (100.0)	242,510 (100.0)	246,778 (100.0)
학대 의심 사례 (Screened-in)	163,494 (65.4)	140,639 (61)	143,105 (59.3)	138,711 (57.2)	139,213 (56.4)
일반상담 (Screened-out)	86,684 (34.6)	89,959 (39)	98,312 (40.7)	103,799 (42.8)	107,565 (43.6)

주: 각 년도는 미국 연방 회계연도(Federal Fiscal Year: FFY)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를 말함. 예를 들어 2023년 자료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를 말함.

출처: "Child Maltreatment 2023",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25. pp.17-19.

나. 아동학대 판단율과 발견율

학대 의심 사례로 선별되어 아동보호 조사를 받은 아동의 수는 2020년에 감소한 이후,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251,995명에 달했다. 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보호 조사를 받은 아동의 비율은 2019년 67.3명에서 2023년 57.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2〉 연도별 아동보호 조사를 받은 아동의 수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동 수	285,141	251,149	256,060	251,757	251,995
아동 1,000명당 비율	67.3	59.4	60.5	58.6	57.5

출처: "Child Maltreatment 2023",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25. pp.34-35.

아동보호 조사를 받은 아동 중에서 학대 피해자로 판단된 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22,842명에 이른다. 아동학대 판단율⁶⁾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 11.5%에서 2023년 9.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아동보호 조사에서 학대 피해자로 판단되는 사례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피해자의 비율⁷⁾을 나타내는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도 2019년에 7.8%에서 2023년 5.2%로 감소하였다.

〈표 4-3〉 연도별 학대피해 아동 수, 아동학대 판단율,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동 수	32,915	28,268	27,394	24,505	22,842
아동학대 판단율 (조사받은 아동 100명당 비율)	11.5	11.3	11.0	9.7	9.1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 1,000명당 비율)	7.8	6.7	6.5	5.7	5.2

출처: "Child Maltreatment 2023",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25. pp.38-39.

다. 아동의 분리보호율 - 위탁가정 배치(Foster Care Placement)

2023년에 피해아동 중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7,490명으로, 피해 아동의 31.4%에 해당한다. 반면, 비피해아동 중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2,158명으로, 비피해아동의 0.8%에 해당한다.

6) (아동학대 피해자로 판단된 아동 수 ÷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조사받은 아동 수) × 100

7) (아동학대 피해자로 판단된 아동 수 ÷ 주 전체 아동 수) × 1000

〈표 4-4〉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수와 비율

(단위: 명, %)

구분	피해 아동	비피해 아동
아동 수	23,860	281,645
위탁보호된 아동 수	7,490	2,158
위탁보호된 아동 %	31.4	0.8

주: 중복된 아동 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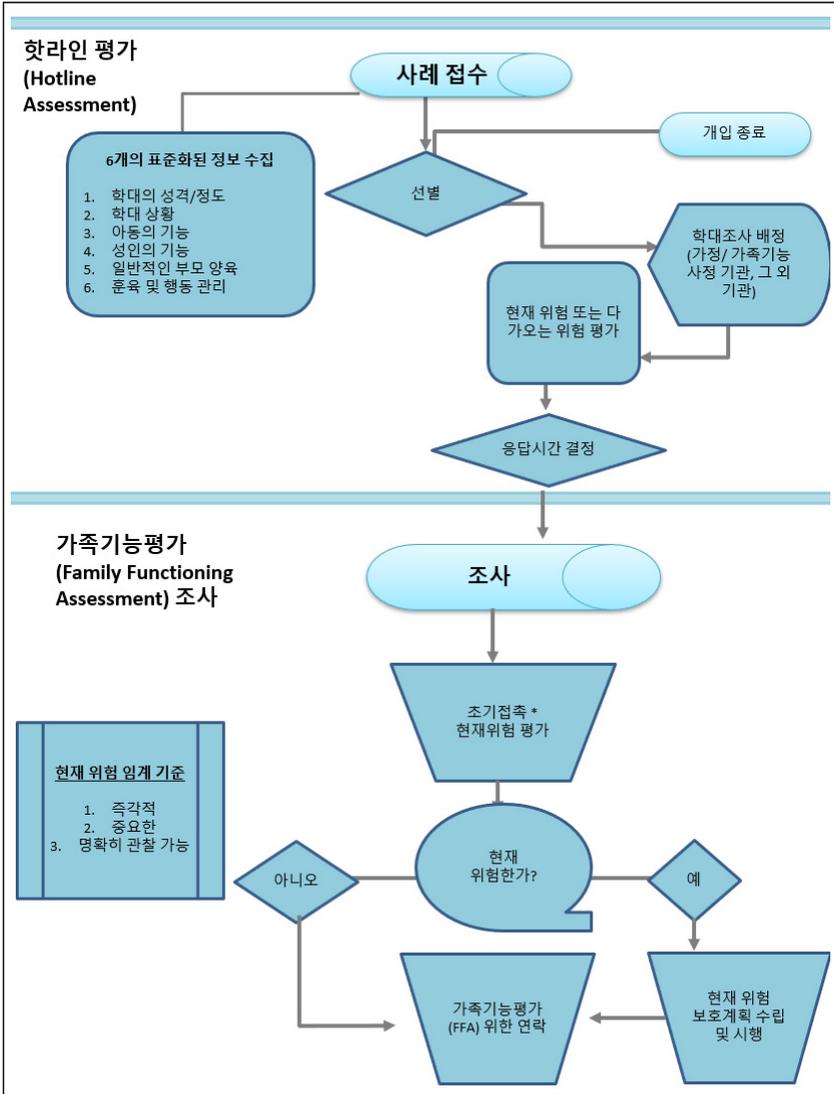
출처: "Child Maltreatment 2023,"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25,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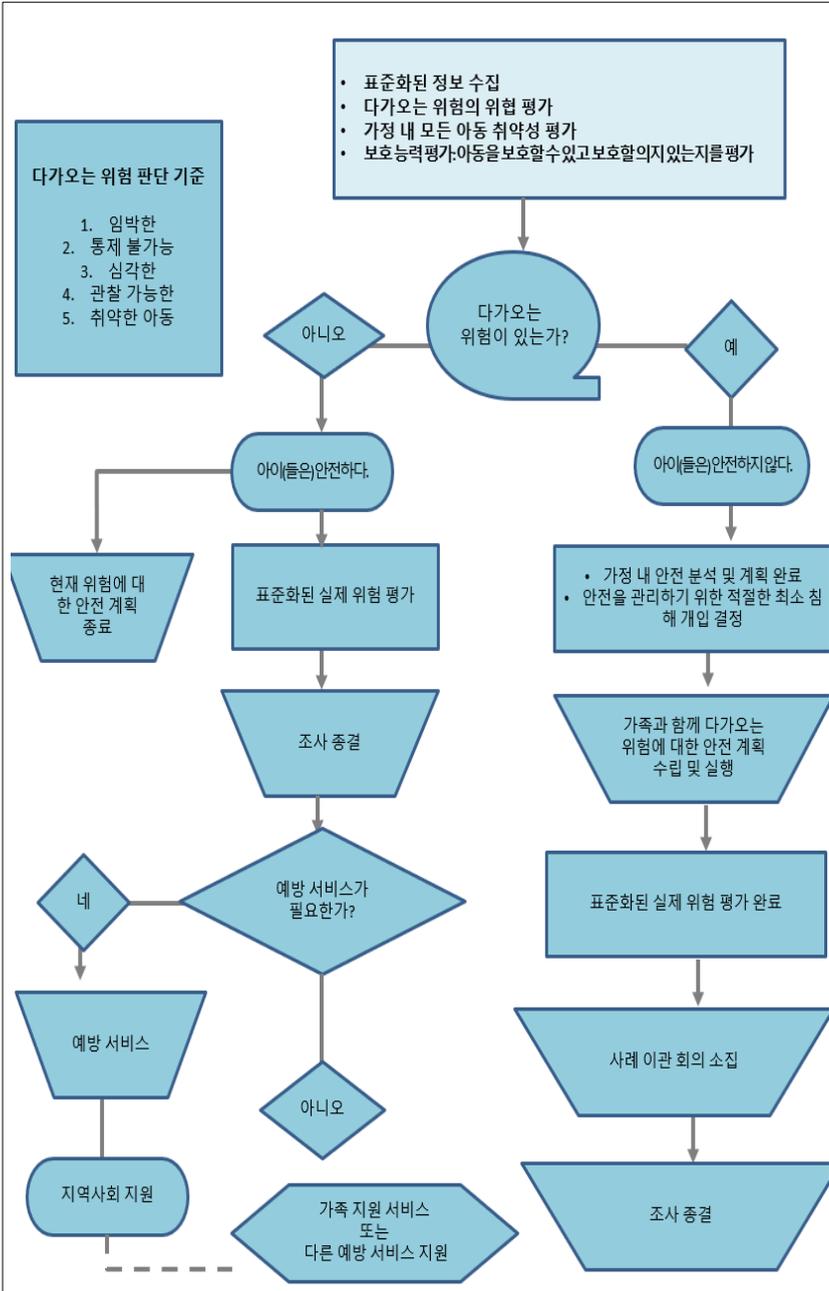
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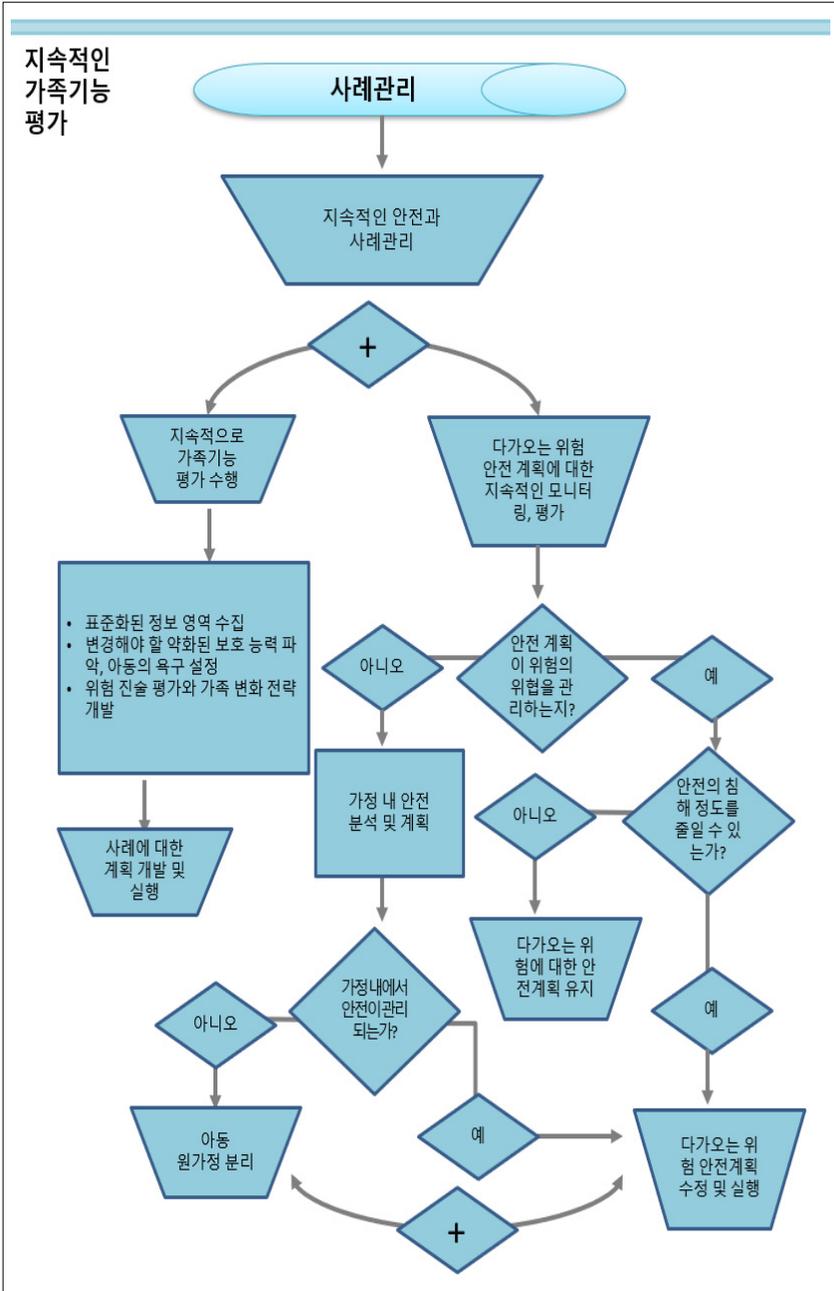
[그림 4-2]는 '플로리다주의 안전 결정 방법(Florida Safety Decision Making Methodology)'의 흐름도이다. 이 흐름도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 종결까지의 주요 의사결정 단계와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플로리다주 아동가족국은 아동복지전문가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의 핵심 요소에 집중하도록 하고, 올바른 안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의사결정 흐름도의 표준화된 체계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플로리다주의 전체 의사결정 체계 중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 주체, 의사결정 내용,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도구 및 슈퍼바이저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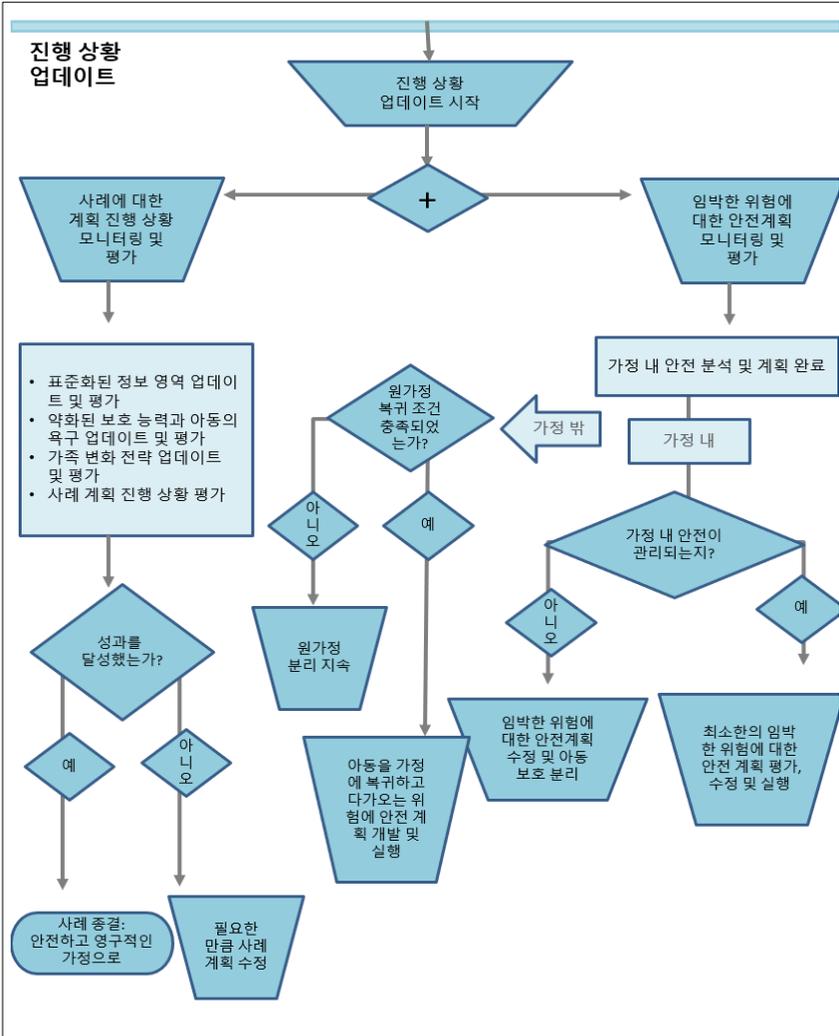
8) 아동복지전문가는 학대 핫라인 상담사, 아동보호 조사관, 사례관리자 등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전문가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림 4-2] 플로리다주 안전 의사결정 방법 흐름도









주: 번역 및 수정 - "Module 5: The family functioning assessment,"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FDCF), 2015a, pp. 4- 6. (원본 파일을 한글 번역 및 재구성하였음.)

가. 초기접수(Intake) 단계

1) 학대 의심 사례 접수 결정(Screen-in Decision)

플로리다주의 아동학대 신고는 중앙 학대 핫라인(central abuse hotline)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를 신고 및 접수하는 기관이 다른 데 반해, 플로리다주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학대 핫라인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 중앙집중화된 핫라인을 운영하는 이유는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을 이용하여, 신고 접수처 간의 판단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Florida Statutes § 39.201, 2024).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서 첫 번째 중요한 의사결정은 신고된 내용을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하여 아동보호 조사(Child protective investigation) 대상에 포함할지 아니면 조사가 필요 없는 사례로 제외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플로리다주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보호 조사 대상으로 선별하는 역할은 주 아동가족국(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소속의 핫라인 상담사(Hotline counselor)가 수행한다.

핫라인 상담사는 “가족기능 평가(Family Functioning Assessment)⁹⁾” 도구를 사용하여 신고자로부터 학대의 정도, 학대를 둘러싼 상황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일상생활, 성인의 역할 수행 능력,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훈육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신고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이외에도 주 아동복지 정보시스템(statewide automated child welfare information system)을 검색하여 신고된 가족 구성원의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 사례 관리 이력, 범죄 이력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신고된 내용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9) “가족기능 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조사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가) 접수 결정 기준

학대 신고가 아동보호조사가 필요한 학대 의심 사례로 선별(screen-in)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피해자는 법적으로 정의된 아동(만 18세 미만이며, 법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혐의가 있는 가해자나 보호자가 존재해야 한다. 셋째, 신고된 내용은 플로리다 아동가족국의 운영지침인 ‘Children and Families Operating Procedure(CFOP), No. 170-4’에 명시된 아동학대의 유형에 포함되어야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b or FECF, 2024b). 넷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아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핫라인 상담사는 해당 신고가 플로리다주의 아동학대, 방임, 유기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법령(Chapter 39.01)과 아동가족국의 운영지침(CFOP)을 참고한다. 플로리다주 법령(Chapter 39.01)에 따른 아동학대, 방임, 유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4-5〉 플로리다 법령에 따른 아동학대, 방임, 유기의 정의

구분	정의
아동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또는 부상이나 위해를 초래하는 고의적인 행위 또는 위협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 단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체벌을 가했으나, 그 체벌이 아동에게 해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는 학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동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방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아동이 그러한 결핍이나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심각한 손상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허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동을 돌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돌봄과 양육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아동과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출처: Florida Statutes § 39.01. Definition에서 저자가 관련 내용을 발췌 및 한국어로 번역.

플로리다 아동가족국의 운영지침 중 아동학대 지표(Child Maltreatment Index)¹⁰⁾에 명시된 27가지의 아동학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4-6〉 플로리다 아동가족국 아동학대 지표-27가지의 아동학대

27가지 유형
유기, 질식/익사, 기이한 처벌, 골절, 화상, 사망, 환경적 위험, 보호 실패, 발육부진/영양실조/탈수,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아동 위험, 인신매매(상업적 성착취), 인신매매(노동착취), 불충분한 감독, 내부장기 부상, 친밀한 파트너 간 폭력으로 인한 아동위험, 의료 방임, 정신적 피해, 신체적 부상, 성학대-성폭행, 성학대-성착취, 성학대-성추행, 약물에 노출된 신생아, 약물남용, 약물남용-알코올, 약물남용- 불법 약물, 약물남용- 처방 약물, 위협적인 피해

출처: “CFOP No. 170-4. Child Maltreatment Index,”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b, 저자가 관련 내용을 발췌 및 한국어로 번역.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도 없지만,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이나 감독이 필요한 상황일 때 핫라인 상담사는 ‘특수 상황(Special Conditions)’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특수 상황’에 포함되는 경우는 〈표 4-7〉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4-7〉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이나 감독이 필요한 ‘특수 상황’ 분류

분류	정의
양육자 부재	•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입원, 사망, 수감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사람이 없어 아동을 돌보기 위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
아동 간 성학대	• 두 아동 간의 성학대(동의 없이,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또는 강압에 의해 발생한 성적 행동) 또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 상황(비접촉적 성적 행동부터 직접적인 성적 접촉 포함)
위탁보호 관련 사례	• 위탁부모와 아동 사이의 갈등, 위탁부모의 역량 부족, 허가 위반과 관련한 상황
부모의 지원 요청	•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

출처: “CFOP No. 170-1. Florida’s child welfare practice model,”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a, 저자가 관련 내용을 발췌 및 한국어로 번역.

10) ‘아동학대 지표’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함께 27개의 학대 유형과 4개의 특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수 상황’과 관련한 내용의 신고가 들어오면 핫라인 상담사는 신고 내용이 ‘특수 상황’의 기준에 부합한지 검토하여 접수 유형에 따라 아동 보호 조사관, 사례관리자, 라이선스 전문가 등에게 사례를 배정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한 접수도 학대 의심 사례와 마찬가지로, 핫라인 상담사가 조사대응 시간을 결정한다. ‘특수 상황’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와 같은 아동보호 조사¹¹⁾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30일 이내에 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특수 상황’에서의 조사는 아동의 안전 여부가 조사의 목적이 아니라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된다. 단, ‘특수 상황’ 조사 중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아동복지 전문가는 즉시 학대 핫라인에 신고를 해서 별도의 아동 보호 조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나) 일반상담 사례(미접수) 결정 기준

핫라인 상담사가 신고 내용이 학대 의심 사례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사가 필요 없는 일반상담(screen out)으로 결정했을 때는, 다음 표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해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상황에서는, 핫라인 상담사는 신고 내용을 일반상담으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슈퍼바이저와 상의를 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11) 학대 의심 사례로 아동보호 조사가 시작되면 6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표 4-8) 일반상담 판단 기준 및 일반상담 결정 전 슈퍼바이저와 상의 사항

일반상담으로 판단하는 기준	일반상담 결정 전 상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피해자가 법적 아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신고된 아동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지 않음 • 아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잘못된 생성된 접수임 • 청소년 사법부 시설에 대한 신고 내용임 • 해당 혐의가 법적 정의에 따른 학대, 방임, 또는 유기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된 내용이 학대 의심 사례 접수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가족의 과거 기록에 사망한 아동이 있는 경우 • 신고된 내용이 이미 아동보호 조사가 이루어져서 중복 신고라고 판단될 때 • 신고 내용이 학대 의심 사례 접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만, 아동 또는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처: "CFOP No. 170-2. Completing hotline intake assessment,"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a, 저자가 관련 내용을 발췌 및 한국어로 번역.

다) 3회 적발(Three Hits) 사례의 접수 결정

동일한 아동에 대해 ‘일반상담’으로 결정된 이력이 2번 이상 있는 경우,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되면 ‘플로리다 안전 가족 네트워크(Florida Safe Families Network, FSFN)¹²⁾ 시스템의 해당 아동의 이름 옆에 ‘Three Hits’라는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전의 ‘일반상담’으로 결정 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핫라인 상담사가 ‘Three Hits’ 링크가 생성된 세 번째 신고를 다시 ‘일반상담’으로 분류하려는 경우, 이를 반드시 슈퍼바이저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슈퍼바이저는 3건의 신고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에 핫라인 상담사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세 번째 신고를 ‘일반상담’으로 최종 결정할 경우, 슈퍼바이저는 ‘Three Hit Review’를 품질 관리팀(Quality Assurance Team)에 전송한다. 이후 품질관리팀의 담당자는 3건의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상담’ 결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한다. 품질관리 담당자의 검토 결과, 이전의 ‘일반상담’ 결정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면, ‘일반상담’

12) 플로리다주의 아동복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산 기록 시스템으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아동보호 조사, 사례관리까지 아동학대 대응의 모든 단계가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기록되고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으로 결정한 세 번째 신고는 즉시 ‘학대 의심 사례’로 변경 처리되어 아동 보호 조사의 대상이 된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학대 의심 사례’로 결정한 근거를 문서화한다. 또한 품질관리 담당자는 3건 이상의 신고가 신고자의 괴롭힘(harassment by a reporter)¹³⁾에 인한 허위 신고인지를 평가하고, 허위 신고로 판단되면 법률 자문팀에 전달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a).

2) 학대 의심 사례별 현장조사 유형 및 대응 시간 결정

가) 현장조사 유형 결정

핫라인 상담사는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는 학대 혐의가 발생한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조사 유형(investigative type)을 결정한다. 조사 유형은 가정(in-home), 기타(other), 기관(institution)으로 분류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a). ‘가정 내 조사’는 학대 혐의가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 의심 사례로, 아동의 주 양육자(부모, 보호자 등 아동 양육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성인 가구원)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타 조사’는 아동의 주 양육자가 아닌 일시적 돌봄 제공자(예: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친인척,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학대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기관 조사’는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예: 그룹홈, 위탁가정, 학교, 보육시설, 의료 및 치료기관, 교정시설 등)에서 일어난 학대 의심 사례로, 기관 및 시설의 직원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13) 신고자의 괴롭힘 여부는 신고가 동일 신고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신고자와 가족과의 관계, 신고의 동기, 신고자가 신고 의무자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 대상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이력이 있는지, 이전에 괴롭힘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괴롭힘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이라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법적 경고 및 법적 신고 제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한다. 핫라인 상담사가 조사 시작 전에 조사 유형을 결정하는 이유는 각 유형에 적합한 조사 인력과 전문 자원을 배정하고, 조사의 초점을 명확히 하여, 유형에 맞는 조사 절차를 적용하기 위함이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a;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c).

나) 현장 조사 대응 시간(Response Time Frames) 결정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된 신고에 대해서 핫라인 상담사는 사건의 위급성에 따라 현장조사(아동보호 조사) 대응 시간을 결정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a). 아동이 즉각적이거나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경우, 부상 또는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족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아동이 24시간 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즉시 대응(immediate response)’에 해당한다. ‘즉시 대응’은 아동보호 조사관에게 사례가 배정된 즉시, 최대 4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협이나 심각한 위협이 없다고 여겨지면, ‘24시간 이내 대응(24-hour response)’으로 결정된다. 이는 아동보호 조사관에게 사례가 배정되고 24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아동보호 조사(Child Protection Investigation) 단계¹⁴⁾

핫라인 상담사가 아동보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관할지역의 아동가족국에 배정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a). 이때, 핫라인 상담사가 결정한 ‘조사 유형’에 따라 배정되는 관할지역, 조사팀, 조사 절차, 조사 내용 등이 달라진다.

‘가정 내 조사’의 경우 관할권 배정의 기본 원칙은 가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핫라인 상담사는 두 개의 카운티에 사례를 동시에 접수 배정한다. 이 경우 가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아동보호 조사관이 ‘주 조사관(primary investigator)’이 되고,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아동보호 조사관이 ‘카운티 외부 조사관(out of county investigator)’이 된다. 주 조사관과 카운티 외부 조사관은 서로 협력하여 조사를 수행하지만,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 평가 및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주 조사관이다. ‘가정 내 조사’의 경우, 가족기능 평가를 통한 아동의 안전, 부모의 보호능력, 학대 판정, 향후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 원가정으로부터 아동 분리의 필요성 등이 조사의 초점이 된다.

‘기타 조사’는 신고 시점에 피해자가 위치한 카운티에 사례가 배정된다. ‘기타 조사’는 일반 아동보호 조사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아동 간의 관계 파악, 아동의 안전, 그리고 법 집행기관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 등이 조사의 초점이 된다.

14)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c). CFOP No. 170-5. Child Protective Investigations를 근거로 작성함.

‘기관 조사’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 기관 조사팀(Specialized Institutional Investigation Unit)’에 사례가 배정된다. ‘특수 기관 조사팀’이 없는 농촌 지역 및 특정 지역에서는, 경험이 많고 자격증이 있는 아동보호 조사관에게 사례를 배정한다. ‘기관 조사’의 경우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의 안전 평가, 특정 직원이 학대에 책임이 있는지, 기관 전체의 문제인지, 기관의 감독 책임의 적절성 등 기관 및 시설 자체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보호 조사관이 조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관련 기관의 허가 당국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표 4-9〉 조사 유형별 차이

구분	가정 내 조사 (in-home)	기타 조사 (others)	기관 조사 (institution)
가해자	부모, 법적 보호자, 주 양육자	주 양육자 이외의 일시적 돌봄 제공자 (친인척, 베이비시터 등)	기관 및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책임자 (그룹홈, 위탁가정, 학교, 어린이집, 교정시설 직원)
학대 조사 관할권	가해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신고 시점에 피해자가 위치한 카운티	해당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
학대 조사 주체	아동보호 조사관	아동보호 조사관	기관조사전문팀의 아동보호 조사관
현재위험 평가 (present danger assessment)	O	O	O
가족기능 평가 (family functioning assessment)	O	X	X
위험도 평가 (risk assessment)	O	X	X

출처: “CFOP No. 170-1,”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a; “CFOP No. 170-2,”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a; “CFOP No. 170-5,”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c 참조해서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후 작성.

아동보호 조사관의 슈퍼바이저는 신고 접수 이후 추가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핫라인 상담사가 결정한 현장 조사 대응 시간(즉각 대응, 24시간 이내 대응)을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c). 또한, 조사가 필요한 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되어 아동보호 조사관에게 사례가 배정된 경우라도, 다음의 상황에서는 아동보호 조사관이 슈퍼바이저와 협의 후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 관할권 없음: 신고된 피해자가 주 법령에 정의한 아동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학대 행위자가 주 법령에서 정의한 아동복지 책임자 또는 기타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 피해 아동이 신고 시점에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을 때 등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가 완료된 사례가 중복 신고된 경우, 신고 내용이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 허위 신고(false report)¹⁵⁾라고 판단될 때
- 명백히 근거 없는(patently unfounded)¹⁶⁾ 신고라고 판단될 때

아동보호 조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아동보호 조사관은 조사 중단의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플로리다 안전 가족 네트워크(FSN)’에 기록해야 한다. 이는 학대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허위 신고의 패턴을 파악하며,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이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5) ‘허위 신고’는 신고자가 신고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필요시 신고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16) ‘명백히 근거 없음’은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로, 신고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 아동의 안전(Safety) 판단

아동보호 조사 단계에서 아동보호 조사관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아동이 안전(safety)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관은 ‘플로리다주 안전 결정 방법론(Florida Safety Decision-Making Methodology)’이라는 구조화된 평가 절차와 도구를 사용한다. 이 표준화된 의사결정 접근법은 ‘사건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 평가를 바탕으로 아동의 현재와 장기적인 ‘안전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Yelick, 2018). 아동의 안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뿐 아니라 아동의 취약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분석해야 한다.

가) 현재위험(Present Danger) 평가

아동보호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수행하는 일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재위험’을 식별하는 것이다. 현재위험은 아동보호 조사관이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위험 상황으로, 아동이 즉각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족 환경, 상황, 개인의 행동, 아동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관은 표준화된 ‘현재위험 평가도구(Present Danger Assessment)’를 사용한다. 현재위험 평가도구에는 10가지 위험에 대한 위험이 명시되어 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a).

〈표 4-10〉 현재위험 평가도구의 10가지 위험위험

10가지 위험위험	
1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2	아동이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으며(아동학대 또는 방임을 암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의 설명이 질병이나 부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아동의 물리적 생활환경이 위험하며, 아동이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있으나,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아동가족국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가족이 아동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된 내용이 심각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5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가 아동의 필수적인 의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동이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6	아동이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서적 증상을 보이거나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가 이를 관리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7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가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여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8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음식, 의복 및 감독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동이 이미 심각한 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9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가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스스로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까 봐 우려하는 경우
10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가 매우 부정적으로 아동을 인식하거나 아동에게 행동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이 아동에게 이미 심각한 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출처: “CFOP No. 170-1. Florida’s child welfare practice model,”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a에서 저자가 관련 내용을 발췌 및 한국어로 번역.

위험위험이 현재위험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해당 위험이 즉각적이고 (현재 발생 중이거나 즉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심각한 수준이며, 아동 보호조사관이 명확하게 관찰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d). 10가지 위험위험 중 하나라도 현재 위험 수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을 당면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 조사관은 즉시 ‘현재위험 안전 계획 (present danger safety plan)’을 수립하여 아동을 보호 조치한다. 현재

위험 안전 계획은 임박한 위험 및 가족기능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위험위협을 인지한 즉시 수립된다. 수립된 안전 계획은 24시간 이내에 슈퍼바이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재위험 안전 계획이 14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계획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슈퍼바이저가 7일마다 아동보호 조사관과 후속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d).

현재위험이 심각하여 아동이 원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긴급히 분리할 수 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a). 아동을 긴급 분리한 경우, 보호 배치 및 돌봄 책임에 대한 법적 승인을 받기 위해 분리 후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나) 임박한 위험(Impending Danger) 평가

현재위험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의 임박한 위험을 평가한다. 임박한 위험이란 아동이 당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부모(보호자)의 행동, 태도, 감정 또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 아동이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박한 위험은 현재위험과 달리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거나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가 수집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a). 이러한 임박한 위험의 특성상, 아동보호 조사관은 표준화된 ‘가족기능 평가(Family Functioning Assessment)¹⁷⁾’를 활용하여 아동과

17) 가족기능 평가는 임박한 위험을 평가할 때뿐 아니라 아동의 취약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평가할 때도 사용된다. 현재위험이 식별되어 현재위험 안전 계획이 수립된 경우, 가족기능 평가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반면, 현재위험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가족기능 평가는 조사 마무리 기한인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임박한 위협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임박한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가족기능 평가는 다음의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첫 번째 영역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심각성에 관한 것이다. 아동보호 조사관은 학대의 유형, 학대의 심각한 정도, 그리고 학대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증상을 평가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 아동의 현재 상태 등 신고된 사건을 설명하는 사실과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평가한다.

두 번째 영역은 학대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평가이다. 아동보호 조사관은 학대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를 조사하고, 학대가 사전에 계획된 행동인지 혹은 위기 상황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학대를 유발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학대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첫 번째 영역인 아동학대의 유형과 심각성에 관한 정보와 두 번째 영역인 학대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동보호 조사관은 해당 사례에서 학대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학대 판단)을 내리게 된다.¹⁸⁾

세 번째 영역은 아동의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여기서 아동의 기능은 학대 발생 후의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보이는 전반적인 능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아동보호조사관은 신고된 아동 뿐만 아니라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의 기능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에는 아동의 지적 능력, 운동 능력, 감정 표현 능력,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 의사소통 및 사회적 기술, 친구 관계, 성격 및 기질, 통제력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가족학 운영지침 중 하나인 ‘아동 발달 단계 매트릭스(Child Developmental Stages

18) 학대 판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 아동학대 판단’에서 다루기로 한다.

Matrix)’를 참고한다. 이 매트릭스에는 나이에 따라 기대되는 발달 과업과 우려되는 발달 지표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이 해당 연령에 적합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네 번째 영역은 성인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학대자로 의심되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 스트레스 관리능력, 재정관리 능력, 자기 통제 및 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 기술,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약물 오남용 여부, 가정폭력 여부, 고용 이력 및 범죄 이력 등이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다섯 번째 영역은 부모(법적 보호자, 양육자)의 일반적인 양육 방식에 대한 것이다. 부모가 된 동기,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양육 기술 및 만족도, 아동에 대한 기대 수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수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 영역은 부모(법적 보호자, 양육자)의 훈육 방식에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이 평가는 신고된 학대 사건에서 나타난 훈육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아동을 지도하거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반적인 훈육 방식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아동 지도 방법, 훈육의 목적 및 이유, 훈육이 발생하는 맥락, 훈육 방식의 일관성 및 적합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에 해당된다.

다) 아동의 취약성(Child Vulnerability) 평가

현재 위험과 임박한 위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아동이 그러한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평가하는 취약성 평가도 함께 이루어진다.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이 특정 위험위험에 취약한지 판단하기 위해, 아동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아동의 나이, 신체적·인지적 능력, 발달 상태, 이전에 발생한 학대의 영향,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정도, 위험을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아동의 능력, 문제나 위험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이다. 아동학대 조사관은 학대 피해자로 추정되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 모든 아동의 취약성을 평가한다.

라) 보호자의 보호역량(Caregiver's Protective Capacity) 평가

아동의 안전을 평가할 때 위험위협(danger threat)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호자의 보호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위험위협이 존재하더라도 보호자가 이를 통제하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아동은 안전하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 조사관은 보호자의 보호역량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역량으로 나누어 총 19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¹⁹⁾ 가족기능 평가의 일부분으로 보호자의 보호역량이 평가되며 이는 가정 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b).

인지적 보호역량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인식, 이해와 관련된 것이다. 정서적 보호역량은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감정 및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행동적 보호역량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보호역량의 평가 항목을 정리하면 <표 4-11>과 같다.

19) 아동보호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의 보호역량은 각 항목마다 보호자의 역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이분법적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보호역량 향상은 사례계획 수립 시 주요 초점이 된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보호자의 보호역량은 사례관리자에 의해 다시 평가되며, 각각의 항목이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고, 역량 향상 여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다.

〈표 4-11〉 보호역량 평가 항목

구분	보호역량 평가 항목
인지적 보호역량	자신을 보호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보호자의 지적 능력이 충분한가?
	위험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가?
	아동의 필요를 인식할 수 있는가?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서적 보호역량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가?
	회복탄력성이 있는가?
	인내심이 있는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가?
	아동에게 사랑과 공감을 표현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행동적 보호역량	아동과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아동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격려하는가?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가?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아동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킬 수 있는가?
	양육과 관련해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보호자로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과거에 아동을 성공적으로 보호한 경험이 있는가?	

출처: “CFOP No. 170-9. Family assessment and case planning,”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b. 저자가 관련 내용을 발췌 및 한국어로 번역.

마) 최종 안전 판단(Safety Decision-Making)

플로리다주의 안전 결정 공식([그림 4-3])에 따라, 아동보호 조사관은 가족기능 평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이 안전한지 또는 위험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위험위협, 아동의 취약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위험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된 위험위협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그리고 위험위협과 아동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동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 여부는 단순히 위험위협 존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림 4-3] 플로리다주 안전 결정 공식(Safety Decision-Making Formula)

현재 또는 임박한 위험위협 +/- 아동의 취약성 +/- 보호자의 보호능력 = 안전(safe) 혹은 위험(unsafe)
--

출처: "Module 2: Present and impending danger, child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capacity,"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n.d. 저자가 관련 내용을 발췌 및 한국어로 번역.

아동보호 조사관이 내릴 수 있는 최종 안전 판단(safety determination)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된다.

<표 4-12> 플로리다 아동보호 조사관 최종 안전 판단

판단	정의
안전함 (safe)	1) 위험위협(danger threat)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동의 상태가 안전 기준에 부합함 2) 위험위협이 확인되었으나,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에 의해 위험위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음
안전하지 않음 (unsafe)	3) 위험위협이 확인되었으며, 부모, 법적 보호자, 양육자가 위험위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출처: "CFOP No. 170-7. Develop and manage safety plans,"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d, 저자가 관련 내용을 발췌 및 한국어로 번역.

바) 안전 계획 수립

아동이 안전하지 않다(unsafe)고 최종 판단되면, 아동보호 조사관은 반드시 '임박한 위험 안전 계획(impending threat safety plan)'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 계획의 주요 목적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부족하여 위험위협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위험위협을 통제

하고 아동의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안전 계획은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 관리할지 명확히 규정하고, 당장 실행해야 할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된다.²⁰⁾

임박한 위험 안전 계획이 작성되면, 아동보호 조사관의 슈퍼바이저는 24시간 이내에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안전 계획의 적정성은 위험요인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있는지, 안전 계획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안전 계획에 포함된 사람과 서비스가 위험 발생 시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지, 안전 계획이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활동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부모의 약속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2) 아동학대 판단

아동학대 판단은 관련자 면담, 관찰, 이전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학대 판단 기준은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방임, 또는 유기가 발생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credible evidence)’에 기반한다.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가족국의 ‘아동학대 지수’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지침은 27개의 아동학대 유형을 정의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정보, 고려 대상이 아닌 요소, 그리고 학대가 발생했다(verified)고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검증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b). 아동보호 조사관은 신고된 학대 혐의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20) 장기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은 안전 계획이 아닌 사례 계획(case plan)에 포함된다.

〈표 4-13〉 플로리다 아동보호 조사관 신고 사례 최종 판단 항목

판단	정의
학대 확인 (verified)	아동이 입은 특정 피해나 피해 위협이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학대 미확인 (not substantiated)	아동이 입은 특정 피해나 피해 위협이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학대 없음 (no indicators)	아동이 입은 특정 피해나 피해 위협이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때

출처: “CFOP No. 170-4. Child maltreatment index,”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b, 저자가 관련 내용을 발췌 및 한국어로 번역.

‘학대 미확인(not substantiated)’은 학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학대 없음(no indicator)’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의미한다. ‘학대 확인(verified)’과 ‘학대 미확인(not substantiated)’의 차이는 신뢰할 만한 증거의 충분성에 의해 결정된다. 충분성의 기준은 50%로 설정되며, 제시된 신뢰할 만한 증거가 학대, 방임, 유기 발생했음을 지지하는 정도가 50%를 초과하면 ‘학대 확인’, 50% 이하이면 ‘학대 미확인’으로 판단한다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5a).

3) 아동 분리 여부 결정

가) 배치 결정

아동보호 조사관이 내려야 할 중요한 판단 중 하나는 아동을 원가정으로 부터 분리할지 여부와, 분리가 필요할 경우 아동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아동의 분리 여부는 아동학대 판단(학대 확인 vs 학대 미확인)과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판단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이 안전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안전 계획의 수준과 보호 방식을 결정한다. 즉 아동을 ‘가정 내 보호(in-home placement)’로 할지, ‘가정 외 보호(out-of-home placement)’로 결정할지, 또는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디에 배치할지를 결정한다.

플로리다주법 제39.506조 (7)항은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 조사관이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 분리 조치가 아동과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가정 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최소 제한적(least restrictive)’ 개입을 반영한 것으로, 아동보호 조사관은 먼저 ‘가정 내 안전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안전 계획 분석(Safety planning analysis)’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데, 안전 계획 분석(Safety planning analysis)의 다섯 가지 핵심 분석 질문은 다음과 같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d).

- 부모(법적 보호자, 양육자)가 ‘가정 내 안전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동의하며, 안전 계획에 포함된 모든 안전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 가정 환경이 차분하고 일관성이 있어 ‘가정 내 안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안전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 임박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의 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 심리검사나 치료 필요성 평가 등 추가적인 전문가의 평가 없이도 ‘가정 내 안전 계획’과 안전 서비스로 임박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 부모(법적 보호자, 양육자)가 ‘가정 내 안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는지

표준화된 위의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아동은 가정 내에 거주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다섯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가정 내 안전 계획(in-home safety plan)’이 아동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가정 외 배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가정 외 안전 계획(out-of-home safety plan)’을 수립한다.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기 전에 슈퍼바이저와 아동가족국 소속 아동법률서비스 변호사와 함께 분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후, 아동법률서비스 변호사는 법원에 아동의 가정 외 배치에 대한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정 외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보호 조사관은 우선적으로 조부모, 비동거 보호자 등 친족 및 혈연 보호자(kinship caregiver)를 대상으로, 그다음으로는 이웃, 대모(Godmother) 등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비혈연 보호자(non-relative caregiver)를 대상으로 배치 장소를 탐색한다. 이외에도 일반 위탁가정, 치료목적 위탁가정, 그룹 홈, 보호시설 등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적합한 배치 장소를 모색한다. 초기 배치 결정에 대한 주된 책임은 아동보호 조사관에게 있으며, 사례가 민간 지역사회 보호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배치 장소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민간 사례관리자에게 있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a;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b).

나) 원가정 복귀 조건(Conditions for Return) 결정

아동의 ‘가정 외 배치’가 결정되면 아동보호 조사관은 원가정 복귀 조건을 수립한다. 이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가정 외 안전 계획’의 일부에 해당한다. 원가정 복귀 조건은 아동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나 조치로, 특히 위험 위협을 관리하거나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d). 원가정 복귀 조건을 작성할 때 아동보호 조사관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가정 내 안전 계획’이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기준을 근거로 복귀 조건을 수립한다.

4)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아동의 현재 안전에 대한 최종 판단이 완료된 후, 아동보호 조사관은 아동이 향후 학대를 경험할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한다. 이 평가는 아동의 안전 여부나 학대 판단 결과와 관계없이, 아동보호 조사에 포함된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즉,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정 외 배치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위험도 평가는 예외 없이 수행된다.

위험도 평가는 현재 상황에서 아동이 해(danger)를 입었는지 또는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안전 평가(safety assessment)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평가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식별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²¹⁾ 아동보호 조사관은 계량적인

21) 플로리다 아동가족국의 아동복지전문가 교육 매뉴얼에 따르면, 위험도 평가도구는 “가족이 중재적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향후 18개월 이내에 아동보호서비스에 다시 접수되거나, 재학대/재방임될 위험이 가장 높은 가족은 누구인가?”(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5b, p.54)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험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의 향후 학대 가능성을 평가하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족과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 및 지원 서비스를 판단한다.

위험도 평가는 아동방임 지표(neglect index)와 아동학대 지표(abuse index) 각각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 평가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방임 지수는 다음과 같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5b).

- 현재 신고 내용이 방임과 관련한 것인지
- 이전에 아동보호 조사 이력이 있는지
- 과거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
- 방임/학대 사건에 연루된 아동 수
- 가정에서 가장 어린 아동의 나이
- 주 양육자가 아동의 욕구에 맞는 신체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 주 양육자가 과거 또는 현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 주 양육자가 과거 또는 현재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가 있는지
- 가정 내 아동의 특성에 따라(장애, 출생 시 약물 양성반응 등)
- 주거 환경의 특성에 따라(물리적으로 위험한 환경, 노숙 등)

아동학대 지수는 다음의 문항들로 측정된다.

- 현재 신고 내용이 학대와 관련한 것인지
- 이전에 학대로 인한 조사 이력 수
- 과거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
- 방임/학대로 인해 아동이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
- 주 양육자의 사건에 대한 평가(책임 전가, 정당화 주장 등)
- 지난 1년 동안 가정 내에서의 폭력 유무
- 주 양육자의 특성(과도한 규율 사용, 지배적인 행동 등)

- 주 양육자가 과거에 학대 또는 방임을 경험한 경우
- 부 양육자의 과거 또는 현재 알코올 또는 약물 문제
- 가정 내 아동의 특성(비행, 발달장애, 정신건강, 행동 문제 등)

아동보호 조사관은 방임과 학대 지표의 총합 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화된 위험 수준(scored risk level)'을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하나로 지정한다. 아동보호 조사관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점수화된 위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량적 재조정(discretionary override)'이라고 한다. 다만 재량적 재조정 시에는 점수화된 위험 수준을 한 단계만 높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점수화된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재조정해야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정책적 재조정(policy override)'이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학대 사건으로 가해자가 아동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세 미만 아동에게 비사고성(non-accidental) 부상이 있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에게 심각한 비사고성 부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행위 혹은 방치로 인한 학대 또는 방임으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이다.

안전 평가에서는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위험도 평가에서 최종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아동보호 조사관이 실시한 '가족기능 평가'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2단계 협의(2nd tier consultation)'가 실시된다. 이 협의는 슈퍼바이저, 다학제 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비스 개입의 방향을 재조정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5a).

5) 서비스 개입 수준(Levels of Service Intervention) 결정

아동의 안전 여부와 향후 학대 발생 위험도를 평가한 후, 아동보호 조사관은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서비스 개입 수준을 결정한다. 서비스 개입 수준은 학대 판단 여부에 근거하지 않고, 아동의 안전(safety)과 위험(risk) 정도에 기반하여 결정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c). 아동의 안전 여부는 서비스 개입 수준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고, 위험 수준은 서비스 개입의 유형 및 강도를 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위험 수준이 낮거나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 아동보호 조사관은 서비스 연계 없이 조사를 종결하거나, 해당 가족을 지역사회 서비스(예: 부모교육, 직업훈련, 지역사회 자원)에 연계할 수 있다. 반면, 아동이 안전하지만 위험 수준이 높거나 매우 높게 평가된 경우, 아동보호 조사관은 보호자에게 높은 위험 수준의 의미와 향후 학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학대 및 방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족지원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기반 학대 예방 서비스에 연계한다. 이 경우, 서비스 참여 여부는 가족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아동보호 조사관은 보호자의 결정 여부를 문서화하고, 연계 프로그램 담당자와 연락하여 진행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족이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는 이를 아동보호 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위험 수준의 차이는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위험 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더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개입과 자원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개입 수준과 개입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위험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앞에서 살펴본 ‘가정 내 안전 계획’의 실행 여부와 법원의 개입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조사 종결(Investigation Closure) 및 사례 종결(Case Closure) 단계

1) 조사 종결

일반적으로, 아동보호 조사는 6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아동보호 조사관은 조사 활동의 완성도와 아동의 안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종결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 슈퍼바이저는 종결 검토를 통해 필수 조사 업무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 상태가 결정되었는지, 최종 안전 결정이 타당한지를 확인한 후 조사 종결을 승인한다.

아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조사는 종결되더라도 사례는 민간 지역사회 보호기관의 사례관리팀으로 이관된다. 이로써 아동보호 조사관의 주요 역할은 종료된다. 다만, 사례관리 중에도 ‘가정 내 배치’로 보호 중인 아동을 ‘가정 외 배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조사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이 원가정에서 지역사회 보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던 중, 보호자가 ‘가정 내 안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정 내 배치’가 더 이상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자는 아동보호 조사관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후, 아동보호 조사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가정 외 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배치 장소를 변경한다.

2) 사례 종결

민간 지역사회 보호기관으로 이관된 사례의 종결은 민간의 사례관리자와 슈퍼바이저에 의해 결정된다. 이 보고서는 공공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종결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사례 종결의 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계획(case plan)의 모든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안전 계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위험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면 안전 계획을 중단하고 사례 관리를 종결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b). ‘가정 외 배치’되었던 아동의 경우, 부모와 아동 모두가 원가정 복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사례 종결이 추진된다. 또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했더라도, 입양된 경우에도 사례는 종결된다. 사례 종결의 이유와 관계없이, 사례관리자가 사례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원이 개입된 사례의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사례를 종결할 수 있다.

제2절 영국 사례

1.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현황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네 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연합국이므로, 아동보호 체계와 구조가 나라별로 상이하다. 본 절에서는 네 개의 영연방 국가 중 스코틀랜드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보호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는 여러 주요 기관이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핵심 기관에는 경찰,

NHS 보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경찰청장, 보건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책임자들은 각 기관이 협력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또한, 스코틀랜드 아동보고관 행정처(The Scottish Children's Reporter Administration, SCRA), 검찰청, NGO 등 외부 기관과도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협력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스코틀랜드 장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아동보호 정책, 절차, 지침과 관련된 업무는 아동보호위원회(Child Protection Committees, CPCs)와 지방의회가 담당한다. 아동보호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 경찰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보호에 기여한다. 나아가, 아동보호위원회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Scottish Government, 2019). 최고책임자, 아동보호위원회를 포함하여 아동보호 정책과 서비스에 관여하는 모든 인력은 '모든 아동을 위한 올바른 접근(Scotland is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 GIRFEC)' 원칙을 따라야 한다(Scottish Government, 2022). GIRFEC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Scottish Government, 2023a).

본 절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동보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한 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4]는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이나 사회복지사, 의료 종사자에게 접수되면, 이들은 핵심 기관(경찰,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중 하나)에 사건을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핵심 기관은 접수된 사안을 검토하고, 다기관 논의(Inter-Agency Referral Discussion, IRD)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기관 논의를 거쳐 아동보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인 조사

절차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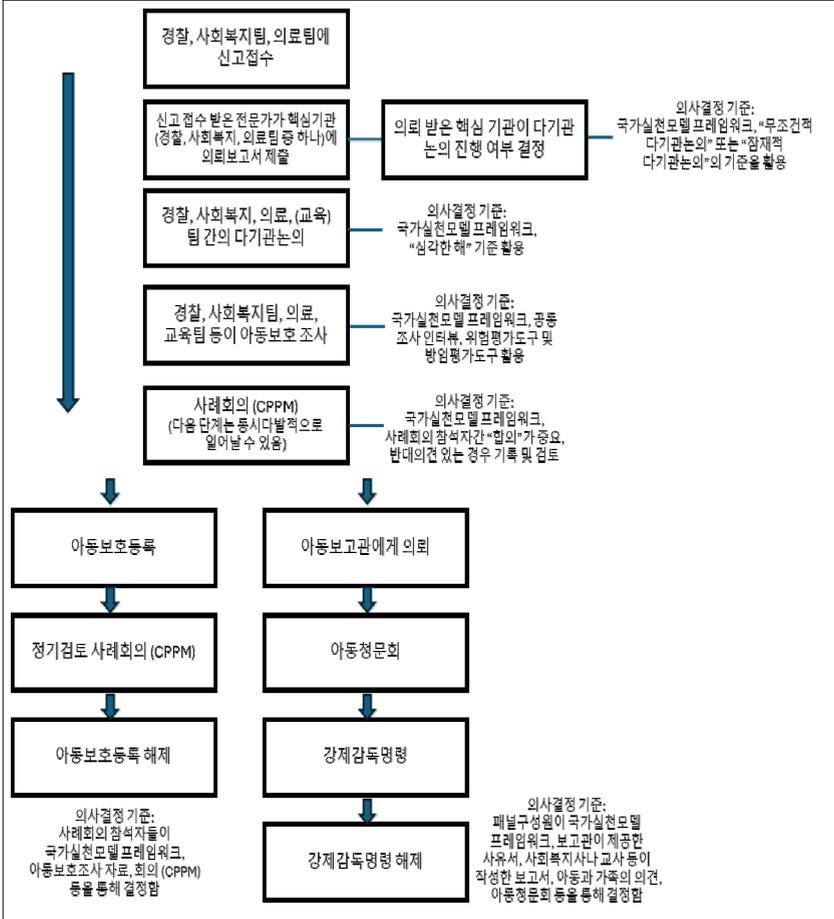
조사 결과 아동이 증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사례회의(Child Protection Plan Meeting, CPPM²²)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이 보다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보고관(Reporter)에게 아동 청문회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는 보통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법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이 심각한 학대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이거나, 부모가 아동보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²³ 아동 청문회를 통해 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는 강제감독명령이 발부될 수 있으며, 이는 패널 구성원들이 결정한다. 이후 강제감독명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패널 구성원들이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이 아동보호등록부(Child Protection Register)에 등록될 수 있다. 아동이 아동보호등록부에 등재되면, 사례회의 참석자들은 등록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며, 이후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등록 해제(de-registration) 절차를 시행한다. 2022, 2023년도의 아동보호 각 단계를 거친 아동 수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Scottish Government, 2024).

22) CPPM은 기존에 Case Conference로 불렸으며, 공식 문서에서도 종종 이 명칭이 사용된다.

23) 본 내용은 스코틀랜드 자문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4-4] 스코틀랜드 아동보호 절차의 개요



번역 및 수정: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Scotland: 2021 to 2022," Scottish Government, 2023b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

신고 건수와 다기관 논의 횟수는 알 수는 없지만, 다기관 논의 이후 조사에 들어간 사례는 총 12,077건으로, 이는 스코틀랜드 아동 1,000명당 13.2명에 해당한다. 이후 사례회의로 넘어가는 사례는 4,120건으로, 조사된 사례의 34%에 해당하며, 사례회의를 거쳐 아동보호등록에 올라가는 아동의 수는 3,170건으로, 이는 사례회의를 거친 아동의 76%에 해당한다.

〈표 4-14〉 아동보호 단계별 조치된 아동 수

(단위: 명, %)

단계	아동 청소년 수	1,000명당 비율
아동보호 신고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다기관 논의(IRD)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아동보호 조사(investigation)	12,077	13.2
사례회의(CPPM) 초기 & 출생 전	4,120	4.5
아동보호 등록	3,17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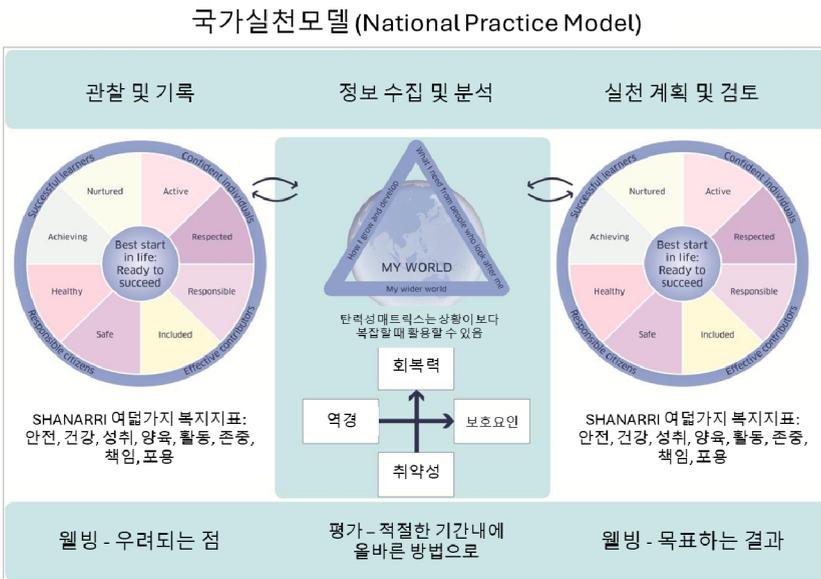
번역 및 수정: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2022-23," Scottish Government, 2024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

2. 아동학대(아동보호) 접수 판단

영국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아동학대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의 상황과 욕구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판단 과정을 거친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 서비스 프레임워크인 GIRFEC(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차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GIRFEC 아래에는 아동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국가실천모델(National Practice Model)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여덟 가지 복지 지표(SHANARRI), △My World 삼각형,

△탄력성 매트릭스(Resilience Matrix)를 결합하여 아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요소들은 아래와 같이 시각화할 수 있다.

[그림 4-5] 국가실천모델 프레임워크



번역 및 수정: "The National Practice Model. <https://www.girfec-aberdeenshire.org/about-girfec/how-we-work/>," GIRFEC Aberdeenshire., n.d.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 국어로 번역 및 수정

이러한 거시적 틀을 바탕으로, 실제 아동학대 신고나 우려 사항은 주로 사회복지사, 경찰 또는 의료 종사자에게 접수된다. 이후 신고를 접수 받은 전문가는 국가실천모델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아동에 대한 우려가 아동보호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경찰, 사회복지기관, 보건기관 중 적절한 핵심 기관에 의뢰한다.

이때, 우려 사항이 해당 기관에 전화로 전달되었더라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 공식적인 의뢰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신고를 접수받은 모든 전문가들은 핵심 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뢰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²⁴⁾

[그림 4-6] 아동보호 의뢰 양식

CHILD CONCERN FORM
Argyll & Bute
child protection
committee

Is this a child you are concerned may be at RISK OF SIGNIFICANT HARM? Please tick: No Yes

If yes, confirm below:
Name & office of Social Worker or Police Officer spoken to:
Date:
Time:

FORM SENT TO:
Name:
Agency:

FORM COMPLETED BY:
Name (surname):
Agency:
Contact Details:

Note:
Only complete information that is known and is relevant to the concern.

[[[Consent Details]]]

Section 1.1
Full name(s) of the CHILD you are concerned about (use Mother's surname if unknown)

Gender	ETHNICITY	DOB	Address & telephone number
		(DD/MM/YYYY)	

Section 1.2
Full name(s) of OTHER CHILDREN in the household

Gender	ETHNICITY	DOB	Relationship to the child

Section 1.3
Full name(s) of ALL ADULTS in the household

Gender	DOB	Relationship to the child

Section 1.4
Name of any PARENT who does not reside with the child

Gender	DOB	Address & telephone number	Has Parental Rights & Resp. (Y/N/not known)

Section 1.5
Names of any SIBLINGS currently in the household

Gender	DOB	Address & telephone number

Section 1.6
Name: Contact details:

Named Person	Designation:	Contact details:
Lead Professional	Designation:	
(multi-agency plan is in place)		
Midwife		
Health Visitor		
Nursery/Childcare		
School		
School Name		
GP		
Other Professionals		

출처: “Making a Child Protection Referral,” Argyll & Bute Council, n.d., Copyright by the Argyll & Bute Council.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1>

24) 해당 양식은 스코틀랜드의 특정 지역인 Argyll & Bute에서 사용하는 양식이다. 양식의 내용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뢰 양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4-15 참고).

〈표 4-15〉 아동보호 의뢰 양식 내용

스코틀랜드 아동보호 의뢰 양식에 포함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 • ‘평가 및 분석’ 섹션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우려와 기준이 충족되는 이유 • 의뢰를 촉발한 우려 또는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아동에 대해 걱정하게 된 이유 • 현재 아동이 안전한 상태인지, 아니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 아동에게 가해지는 실제적인 해악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심각한지 설명 • 지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아동에게 발생할 잠재적 결과

출처: “Making a Child Protection Referral,” Argyll & Bute Council, n.d. Copyright by the Argyll & Bute Council.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1>에서 다운로드한 아동보호 의뢰 양식을 저자가 번역하여 정리함.

의뢰를 받은 핵심 기관 중 어느 기관이든 아동이 증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다기관 논의(Inter-Agency Referral Discussion, IRD)’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 간 논의, 평가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다기관 논의를 결정한 기관은 반드시 다른 핵심 기관의 다기관 논의 참가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며, 전자 다기관 논의 시스템(eIRD)에 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아동보호 접수에서 다기관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핵심 기관은 ‘무조건 다기관 논의가 필요한 경우’와 ‘잠재적으로 다기관 논의가 요구되는 경우’를 구분한다. 스코틀랜드 사회복지사 아동보호 의무교육 자료에 의하면, 각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포함한다(표 4-16 참고).

〈표 4-16〉 다기관 논의 결정을 위한 핵심 기관 사례 구분

무조건 다기관 논의가 필요	잠재적으로 다기관 논의가 필요
갑작스럽거나 설명되지 않은 아동 사망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함
아동이 이유 없이 부상을 입은 경우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 초래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동에게 명이 생김	13세 이상 아동이 성적인 행동을 보일 때 (관련된 사람들의 나이, 합의 여부, 강요 여부, 알코올 또는 약물 관련 여부, 대가/뇌물/협박 요소 고려)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활동 보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자살 시도
만성적인 방임: 아동이 장기간 방치	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부모의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이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때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이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부상을 입었을 때	아동의 안전, 복지, 발달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경우 전체 상황 고려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성적 또는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름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를 상대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
아동이 성적 착취의 위험에 놓였을 때	-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다는 의혹	
FGM(여성 성기 훼손)에 대한 우려	
아동이 강제 결혼의 위험에 처한 경우	
아동이 자주 출입하는 집에서 마약 단속	

출처: “*Inter-agency Referral Discussions*,” Argyll & Bute Council, n.d. [PowerPoint slides]. Copyright by the Argyll & Bute Council. 에 포함된 내용을 저자가 번역하여 정리함.

핵심 기관은 국가실천모델 프레임워크와 위에 언급된 기준을 활용하여, 접수된 아동보호 의뢰를 다기관 논의 단계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아동보호 시작 여부 판단: 다기관 논의

가. 다기관 논의의 절차 및 내용

다기관 논의는 아동보호 의뢰 다음 단계로, 해당 논의에는 여러 기관(사회복지팀, 경찰, 보건팀, 교육팀)이 참석하지만, 사회복지팀, 경찰팀, 보건팀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들은 기관을 대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높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Ayrshire & Arran, 2020). 다기관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한다.

- 아동보호 조사 및 아동보호계획회의의 시작 여부
- 단일 기관 조사인지, 공동 기관 조사인지 결정
- 아동보호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기준(“심각한 해(significant harm)” 등)에 도달했는지 추가 조사 필요성 검토
- 공동 인터뷰(Joint Investigative Interview) 필요 여부
- 다른 아동들이 잠재적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지 여부
- 아동에게 의료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다기관 논의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 여부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해(harm)가 심각한 해(significant harm)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스코틀랜드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 31조 10항에서는 심각한 해가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고려할 때, 다른 또래 아동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스코틀랜드 사회복지사 아동보호 의무교육 자료에서 “심각한 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표 4-17〉 ‘심각한 해’ 평가 요소

스코틀랜드 아동보호 의무교육 자료상 ‘심각한 해’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 행위나 방지로 인한 피해의 성격 • 아동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른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 가족과 더 넓은 환경 내에서 아동의 발달 상황 • 피해를 입힌 사건이나 행동이 발생한 배경 •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의료 상태, 의사소통 장애, 장애 같은 특별한 요구사항, 그리고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의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 가족이 놓인 환경적 맥락 • 아동의 반응 및/또는 의견, 그들의 나이와 이해 수준을 고려한 평가

출처: “The Child Protection Process,” Argyll & Bute Council., n.d. [PowerPoint slides].
 Copyright by the Argyll & Bute Council. 에 포함된 내용을 저자가 번역하여 정리함.

스코틀랜드에서 활용되고 있는 GIRFEC의 국가실천모델에서도 SHANARRI(여덟 가지 복지 지표), My World 삼각형, 탄력성 매트릭스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복합적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어떤 환경과 위험 요소가 “심각한 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파악하도록 돕는다. 예컨대, SHANARRI 지표에 언급된 8가지 항목 중 아동이 어느 측면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점검하고, My World 삼각형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 환경(가정 내 돌봄, 지역 사회 영향 등)을 살핀 후, 탄력성 매트릭스로 아동의 회복력이나 보호요인을 세밀히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한다.

다기관 논의가 끝난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다기관 논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논의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한다. 보고서에는 누가 참석했는지, 왜 다기관 논의가 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기관 논의 이후의 단계는 어떻게 정해졌고, 해당 결정은 왜 이루어졌는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다기관 논의 보고서 양식은 [그림 4-7]과 같다.

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의심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경찰과 함께 다기관 논의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이를 공동 조사 인터뷰(Joint Investigative Interview)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은 이러한 유형의 인터뷰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며,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관들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과 그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2) 경찰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사회복지사와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경찰관 또한 사회복지사와 함께 다기관 논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공동 조사 인터뷰에 참여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증인들을 인터뷰하거나, 피해를 입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할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게 된다.

3) 보건

아동보호 조사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보건 방문자, 학교 간호사, 일반의, 언어치료사 같은 전문 의료인들은 학대 위험 평가에 기여할 수 있고, 아동 또는 양육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보호 조사에 관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검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소아과 의사 또는 경찰 법의학 조사관이 담당한다.

4) 교육

교육계 종사자들은 아동에 대한 우려 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아동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교사와 학교 직원은 아동보호 계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5) 기타 서비스/자원봉사 기관

여러 기관들이 아동과 그 가족에게 돌봄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이나 부모가 치료적 지원, 양육 역할 이해에 대한 도움, 정신건강 또는 약물 남용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다. 가족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기관들은 아동보호 조사에 참석하도록 요청될 수 있으며, 아동의 복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유해야 할 수도 있다.

다. 아동보호 평가 기준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는 아동보호 조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동 조사 인터뷰, 위험 평가도구, 방임 평가도구 등이 아동보호 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 공동 조사 인터뷰를 제외한 위험 평가도구, 방임 평가도구는 스코틀랜드의 특정 지역(Argyll & Bute)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마다 도구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1) 공동 조사 인터뷰

공동 조사 인터뷰는 아동보호 조사의 핵심 절차 중 하나로, 다기관 논의를 통해 공동 조사 인터뷰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공동 조사 인터뷰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아동보호 조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진술을 파악하는 것
- 대상 아동 또는 다른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 대상 아동 또는 타인에게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
- 형사 재판이나 아동 청문회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

공동 조사 인터뷰는 아동을 중심에 두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터뷰는 전문가들이 아동보호를 계획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범죄 발생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인터뷰는 경찰관과 사회복지사에 의해 진행되며, 이 중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다. 역할 분담은 인터뷰 전 계획 단계에서 합의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다(Argyll & Bute Council, 2024).

2) 위험 평가도구

위험 평가도구는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아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계획을 세우는 데 실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평가도구이다. 이 도구에는 △일반 위험 지표, △행렬 기반 위험 지표, △저항 관련 위험 지표, △위험 분석 기록지 등이 있고, 각각의 표는 다른 항목들을 측정한다. 해당 도구들 중 일반 위험 지표는 아동, 보호자, 환경의 세부 항목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각각의 항목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 R - Relevant(관련 있음): 해당 위험 지표가 아동, 부모/보호자 및 아동의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될 때 사용함.
- NR - Not Relevant(관련 없음): 해당 위험 지표가 아동, 부모/보호자 및 아동의 환경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거나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용함.
- N/K - Not Known(알려지지 않음): 정보가 부족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함. 이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러한 일반 위험 지표의 세부 항목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8〉 위험 평가도구 - 일반 위험 지표(아동)

일반 지표-아동	내용
조산/저체중 출생	조산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낮음
출생 시 장기적인 분리	출생 직후 장기간 부모와 분리됨
약물 금단 증상을 보이며 태어난 아기	약물 금단 증상을 보이며 출생
매우 어린 나이 - 높은 의존도	매우 어린 나이(출생~5세)로 인해 높은 의존도를 보임
자주 우는 아이, 달래기 어려움	자주 울며 달래기 어려움
식사/배변 문제	식사 또는 배변에 어려움 있음
부모/주 양육자와의 분리 기간	부모 또는 주요 양육자와의 분리된 기간 존재
입양되거나 계부모와 사는 아이	입양되었거나 계부모와 함께 생활
위탁 양육	위탁 가정에서 양육됨
아동 발달 지연	아동의 발달 지연
아동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는 아동
아동 학습 장애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
아동 행동 문제	행동상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
까다로운 성격	다루기 어려운 성격의 아동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
자해 행동 참여	자해 행동에 참여
약물남용에 연루	약물남용에 연루됨
반사회적 행동/관계	반사회적 행동 또는 관계
범죄에 연루	범죄 행위에 연루됨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증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의 증가
부모와의 관계 악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음
부모/보호자를 두려워함	부모 또는 보호자를 두려워함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
아이가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없거나 보지 못함	아이가 사회복지사와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보지 못함
양육권 분쟁 및 거주 문제	양육권 분쟁 및 거주 관련 문제
반복적 피해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양육자가 형제자매를 학대한 이력	양육자가 형제 또는 자매를 학대한 이력
가정폭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	가정폭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됨
법적 보호 또는 아동보호 조치 적용	법적 보호나 아동보호 조치가 적용됨
학교 출석이 저조	학교 출석률이 낮음
어린 간병인	어린 나이에 간병인 역할 수행
아동의 첫 언어가 영어가 아님	아이의 첫 언어가 영어가 아님
가족 내 4명 이상의 아이	가족 내 4명 이상의 아이가 있음

출처: "Identifying Child Protection Concerns," Argyll & Bute Council, n.d.에서 다운로드한 문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0>

〈표 4-19〉 위험 평가도구 - 일반 위험 지표(부모/보호자)

일반 지표-부모/보호자	내용
부모의 나이가 21세 미만	부모가 21세 미만인 경우
양육 기술 부족	양육 기술이 부족함
아동의 필요에 대한 이해 부족	아동의 필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공감 부족	공감능력이 부족함
아동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비해 비현실적 기대를 가짐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하려 하지 않음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충족시키려 하지 않음
애착 부족	아동과의 애착 관계가 부족함
아동에 대한 거부의 증거	아동에 대한 거부의 태도가 보임
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	아동에게 관심이 없음
아동을 시설에 맡기겠다는 위협/요청	아동을 시설에 맡기겠다는 위협 또는 요청
아동을 문제로 분류하는 태도	부모가 아동을 문제로 분류함
성인의 필요를 아동보다 우선시	부모가 자신의 필요를 아동의 필요보다 우선시함
아동에 대한 부적절하고 경직된 태도	아동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경직된 태도를 가짐
배우자가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님	배우자가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님
새로운 배우자 - 배경이 알려지지 않음	새로운 배우자의 배경 정보가 알려지지 않음
부모의 저항 또는 제한된 참여	부모가 전문가의 도움에 저항하거나 제한적으로 참여함
근로자의 접근을 거부	아동과의 대화나 관찰을 위한 근로자의 접근을 거부함
부모가 상황을 부정하거나 왜곡함	부모가 상황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함
걱정에 대한 공동 이해 부족	걱정이나 문제에 대한 부모와 전문가 간의 공동 이해 부족
아동의 진술이 무시되거나 믿지 않음	아동의 말을 보호자가 믿지 않거나 무시함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양육 능력 손상	신체적 질환이 양육 능력을 손상시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양육 능력 손상	정신적 질환이 양육 능력을 손상시킴
약물남용으로 인해 양육 능력 손상	약물남용이 양육 능력을 손상시킴
높은 스트레스 수준 (예: 빈곤, 고립, 상실)	빈곤, 고립, 상실 같은 높은 스트레스 요인 존재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적절하거나 학대적임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적절하거나 학대적임
낮은 자존감	부모의 자존감이 낮음
생활 기술 및 문제 해결 능력 부족	생활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함
충동 조절 능력 부족	충동을 조절하지 못함
의사소통 어려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근로자 및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전문가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다중 관계 이력	다수의 관계 이력이 있음

일반 지표-부모/보호자	내용
배우자가 전문가 응답에 의존	배우자가 전문가의 대응에만 의존함
가정폭력의 이력	가정폭력의 이력이 있음
지역사회 폭력의 이력	지역사회 폭력의 이력이 있음
근로자에 대한 폭력/공격적 행동 이력	근로자에 대한 폭력 또는 공격적인 행동 이력이 있음
양육권/거주권 관련 갈등	양육권 또는 거주권과 관련된 갈등
지원 활용 능력 부족 또는 의지 없음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
법적 명령/합의 위반(형사/민사)	법적 명령 또는 합의를 위반함(형사/민사)

출처: "Identifying Child Protection Concerns," Argyll & Bute Council, n.d. 에서 다운로드한 문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0>

〈표 4-20〉 위험 평가도구 - 일반 위험 지표(환경)

일반 지표-환경	내용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됨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임
사회적 지원/네트워크의 부재	사회적 지원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함
확대 가족 내 문제 발생	확대 가족 내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함
확대 가족 내 질병	확대 가족 구성원이 질병에 걸림
확대 가족 내 갈등 발생	확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음
확대 가족 내 약물남용	확대 가족 구성원이 약물남용을 함
가족의 잦은 주소 변경	가족이 자주 주소를 변경함
가정 환경이 혼란스럽거나 안전하지 않음	가정 환경이 혼란스럽고 안전하지 않음
수면 환경에 대한 우려	수면 공간이나 환경에 대한 걱정이 있음
서비스 이용 부족	가족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음
지역사회 내에서 배제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배제됨
부적절한 행동	사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함
범죄 및 폭력이 빈번한 동네	가족이 범죄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함
빈곤이 부각되는 동네	가족이 빈곤이 부각되는 지역에 거주함
열악한 주거 환경	가족의 주거 환경이 열악함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	지역사회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함

출처: "Identifying Child Protection Concerns," Argyll & Bute Council, n.d. 에서 다운로드한 문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0>

이러한 지표는 아동보호 조사와 아동보호 계획의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가정환경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다만 지표의 개수가 대응 방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관련 있음(R)”으로 기록된 지표의 수가 특정 수를 초과한다고 해도 아동보호의 절차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지표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며, 지표 검사와 별개로 개별 사례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과 조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행렬 기반 위험 지표는 회복력(Resilience), 역경(Adversity), 취약성(Vulnerability), 보호 환경(Protective Environment) 요인을 검토할 때 활용된다. 이 지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 환경에서 잠재적인 강점과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각 지표는 My World 삼각형의 세 가지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분석된다.

저항 관련 위험 지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강조할 수 있다. 이 지표 또한 My World 삼각형의 세 가지 평가 차원과 연계되어 분석된다. 세 가지 차원은 ① 아동(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방식: How I grow and develop), ② 부모/보호자(나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What I need from the people who look after me), ③ 환경(나의 더 넓은 세계: My wider world)이다.

위험분석기록지는 이 세 가지 차원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문서이며, 이를 통해 위험 수준 결정에 기여한 근거들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기록지는 특정 위험 요소를 포함하여, 아동의 생활 환경에서 중요한 문제를 요약 및 정리한다. 위험 수준을 평가할 때는 아동, 부모 및 보호자, 그리고 아동이 속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의 빈도, 지속 기간, 심각성, 반복적 발생 여부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 위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이처럼 위험분석기록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특정 위험 요인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 방임 평가도구

방임 평가도구는 실무자가 방임의 영향을 이해하고, 방임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식별, 평가 및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이다. 평가지표에는 △신체적 보호, △아동의 안전, △관계와 자존감 등이 범주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신체적 보호: 영양, 집 상태, 옷, 건강, 위생
- 아동의 안전: 가정 내 안전, 돌봄, 외출 시 안전
- 관계와 자존감: 애착, 상호작용, 학습 및 아동발달

방임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계급화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평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 도구를 이용한 실질적인 평가는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여 진행한다. 평가도구의 예시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4-8]~[그림 4-10] 참고).

[그림 4-8] 방임 평가도구 척도(위생)

		← 낮음.			→ 높음.	
수준	1	2	3	4	5	
위생	걱정이 없음.	걱정이 없거나 적음.	보호/추가적인 서비스 요구됨.	아동 보호/ 사회복지가 개입됨.	최소한의 아동보호계획	
0-6세	어른이 아동이 매일 목욕/세수, 머리/이를 뒤도록 도와준다.	어른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목욕/세수, 머리/이를 닦는다.	불규칙한 일과 가끔 아동이 씻거나 목욕하고 머리를 감고 이를 닦으나, 가끔은 그렇지 않는다.	가끔 아동이 씻거나 목욕을 하지만 머리/이를 자주 닦지는 않으며, 아동이 깨끗하지 않게 보인다.	드물게 씻거나 목욕하며, 구강 위생과 머리 관리가 미흡하다.	
7세 이상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위의 작업(목욕/세수, 머리/이 닦기)에 일부 독립적일 수 있다. 어린 아동은 항상 도움을 받고 감독을 받으며, 연령이 높은 아동은 (스스로 하도록) 상기시켜주고 지원을 받는다.	(스스로 하도록) 상기시키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는다. 대부분은 아동들을 지켜보고 필요시 도움을 제공한다.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위의 과정에 일부 독립적일 수 있다. 어린 아동은 보통 도움을 받고 감독을 받으며, 연령이 높은 아동은 (스스로 하도록) 상기시켜주고 지원을 받는다.	어른의 감독이 일관적이지 않고 상류, 치약 등 물품이 항상 제공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감독과 지원, 치약과 상류 등 물품에 접근이 부족하다.	부모의 무관심/감독이 나 지원이 없다.	

출처: "Identifying Child Protection Concerns," Argyll & Bute Council., n.d.에서 다운로드한 문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0>

[그림 4-9] 방임 평가도구 척도(가정안전)

		← 낮음.			→ 높음.	
수준	1	2	3	4	5	
가정 안전	걱정이 없음.	걱정이 없거나 적음.	보호/추가적인 서비스 요구됨.	아동 보호/ 사회복지가 개입됨.	최소한의 아동보호계획	
인식	모든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아동에게 적합한 동물 돌봄 역할을 수행하여 애완동물을 적절히 관리한다.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 인식함.	안전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즉각적인 위험이 나타날 때 개입함.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예: 동물/애완동물로 부딪히 위험).	보호자가 무관심/ 신경을 쓰지 않음.	
안전 특징	모든 안전 가능 (예: 게이트, 방범장치, 연기 감지기, 약품/정소용품 안전하게 보관, 무거운 가구/장문이 고정됨, 안전한 가스/전기 가전 제품)	필수적인 특징 나타남 (예: 게이트, 방범장치, 연기 감지기, 약품/정소용품 안전하게 보관, 무거운 가구/장문이 고정됨, 안전한 가스/전기 가전 제품)	필수적인 안전 특징 부족	안전 기능이 없으며 수리가 되지 않아 몇몇 위험 요소가 있음. (예: 어지럽혀진 바닥 때문에 걸러지는 위험, 불안정한 무거운 고정물, 안전하지 않은 가전제품)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위험 요소가 있음. 노출된 전선과 콘센트, 안전하지 않은 창문 (예: 깨진 유리, 약물이 부주의하게 놓여있거나 아기/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약물이 보관됨).	

출처: "Identifying Child Protection Concerns.," Argyll & Bute Council., n.d. 에서 다운로드한 문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0>

[그림 4-10] 방임 평가도구 척도(감수성)

		← 낮음. 높음. →				
수준		1	2	3	4	5
감수성		매우 미세한 신호,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예상하거나 포착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에 반응한다.	신호에 대한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다. 신호가 강렬해야 반응을 한다.	보호자의 감정적인 어려움이 지배적인 채로 상당히 둔감하다. 아동은 반응을 얻기 위해 신호를 반복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강렬한 신호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무관심하다.
감정적인 반응		아동은 신호에 맞춰 반응하거나 예상, 신호가 있기 전에 반응한다.	중요한 집안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반응은 대부분 신호에 맞춰진다.	자신이나 파트너의 필요의 지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다.	괴로워할 때 조차 아동은 반응이 지연된다.	아동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감정적인 반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서로 상호작용		반응이 아동의 신호에 맞춰진다. - 감정적(따뜻함)으로, 물질적(음식, 기저귀 교환)으로 적절한 반응을 한다.	대체로 따뜻하고 감정적인 반응은 아동에게 따뜻함과 안심을 준다.	아동은 보호자의 일관적이지 않은 반응에 노출된다. (부모/보호자의 다른 우선순위나 낮은 기분 때문)	감정적인 반응이 평범하고 기능적이며, 따뜻함이 부족하고 아동이 중간 정도의 괴로워할 때 짜증을 낸다. 하지만, 심각하게 괴로워할 때는 주의를 기울인다.	감정적인 애착이 없다. 아동이 괴로워할 때 조차 처벌적인 반응을 보인다. 따뜻함이 부족하며 아동은 낯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애정을 보인다.

출처: "Identifying Child Protection Concerns," Argyll & Bute Council, n.d. 에서 다운로드한 문서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0>

해당 평가지표에서의 등급 체계는 가장 양호한 상태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다. 1등급은 가장 양호한 상태를, 5등급은 가장 열악한 상태를 의미한다. 등급은 양육자가 아동의 필요에 얼마나 적절히 반응하는지에 따라 매겨진다.

각 영역의 점수는 세부 요소별로 산출된 점수를 합산해 계산된다. 최종적으로 나온 점수가 해당 영역의 종합 점수가 되며, 이는 실무자가 중점을 두고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라. 아동보호계획회의(CPPM)

아동보호 조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개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계획회의(Child Protection Planning Meeting, CPPM)가

열린다. 다기관 논의와 비슷하게, CPPM에서도 아동이 중대한 위험(significant harm)에 처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CPPM은 다기관 논의의 이후 단계로, 사안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CPPM에는 핵심 기관인 사회복지, 보건, 경찰기관 인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아동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학교 및 기타 관련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CPPM에 초대되어야 하며,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들의 의견이 회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집되어야 한다.

CPPM에서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의 이름이 아동보호등록부(Child Protection Register)에 추가되며, 다기관 아동보호계획(Multi-Agency Child Protection Plan)이 수립된다. CPPM은 아동의 이름을 아동보호등록부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회의이다. 즉각적인 위험이 확인될 경우 긴급 조치를 통해 신속히 보호해야 하며, 필요시 아동보호기록원(Children's Reporter)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Argyll & Bute Child Protection Committee, 2023).

아동보호계획회의(CPPM)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 초기 CPPM: 이는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고, 전반적인 위험을 평가하며, 아동에게 가해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 합의되는 첫 회의이다. 초기 CPPM에서는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기관 협력 아동보호 계획의 필요 여부 및 아동의 아동보호등록부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초기 CPPM에서 핵심 그룹(Core Group)의 구성원을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 핵심 그룹 회의는 CPPM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직해야 하며, 이후 핵심 그룹 회의는 4주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 출생 전 CPPM: 출생 전 CPPM은 태어나지 않았거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심각한 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를 고려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기 개입과 계획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가자들은 출생 전과 출생 후 아기와 엄마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관 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병원 퇴원 계획과 지역 기반 계획은 기관 간 계획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출생 전 CPPM은 문제가 제기된 후 28일 이내에, 그리고 임신 28주 이내에 개최되는 것이 권장된다.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해당 CPPM을 통해 출생 전에 태아의 이름을 아동보호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아동이 등록되면 아동보호 계획은 아동의 출생을 담당 기관에 알릴 책임이 있는 사람과 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 검토 CPPM: 아동보호 계획, 위험 평가 결과의 변동 사항 및 아동의 안전을 논의하는 모든 회의가 이에 해당된다. 초기 CPPM 이후의 검토 회의는 출생 전 CPPM의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출생 전 CPPM 이후의 검토는 보다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권장된다. 이후 검토는 6개월마다 진행되며, 상황이 변할 경우 필요에 따라 더 일찍 실시될 수 있다.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CPPM에서 아동보호등록부에서 아동의 이름을 제거해야 한다(이를 비등록(de-registration)이라고 한다). 아동과 가족이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동계획(Child's Plan)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 ▶ 이동 CPPM: 아동의 거주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이름이 아동보호등록부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이동 CPPM 회의를 열어야 한다. 기존의 지자체는 이관될 지자체가 아동의 위험과 욕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이관될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 이 이동 CPPM은 아동이 이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에 맞추어 개최되지만, 최대 21 근무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권장된다. 필요한 경우, 이동 CPPM 회의 전까지 관련 기관들이 임시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CPPM은 지역 아동보호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의장이 진행하며, 의장은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의장은 회의의 모든 참석자가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진행 규칙을 준수하도록 회의를 이끌어야 한다. 회의에서 특정한 사안이 결정된 이후에는 핵심 그룹을 구성하여 후속 회의가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CPPM 참석자들은 아동과 가족이 경험한 주요 사건의 연대기를 포함한 보고서를 회의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기밀 정보는 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되며, 서면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기밀 정보는 아동과 가족에게도 제공되지 않으며, 회의 참석자 중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게만 공유된다.

CPPM에서의 결정은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이는 모든 참석자가 만장일치로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PPM 의장은 참석자들이 주요 정보를 공유하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CPPM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항소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만은 그 개인이 속한 기관의 내부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기록하고

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반대 의견이 기록되면, 해당 사안은 지역 아동보호위원회의 검토 그룹에 전달되며, 1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을 제기한 전문가와 CPPM 의장이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된다. 이후 15일 이내에 재 검토 CPPM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The City of Edinburgh Council, 2023). 이러한 CPPM이 진행되고 나면, CPPM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결정된다(Ayrshire and Arran, n.d.).

-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CPPM 회의 이후 정책적인 아동보호의 과정이 끝나는 단계
- 부모 역할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단일 기관에 의해 서비스를 받게 되는 단계
- 아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아동보호등록부에 아동의 이름이 기재되는 단계
- 부모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아동보고관(reporter)에게 의뢰하는 단계. 이 단계는 강제감독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의뢰를 접수하는 것이다. 그 후 아동보고관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아동 청문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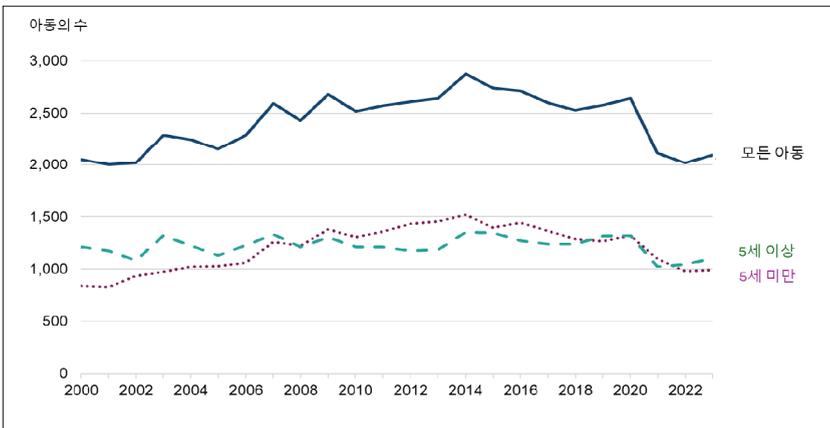
위의 단계에서 첫 번째 “정책적인 아동보호의 과정이 끝나는 단계”를 제외하고는, 아동보호의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초기 CPPM 이후의 아동보호 절차에서는 핵심 그룹(Core Group)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핵심 그룹은 사회복지사인 책임 전문가(lead professional)를 포함하여,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아동보호 계획을 공동으로 계획, 실행, 모니터링, 검토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핵심 그룹의 참가자들은 위험 평가 및 분석 과정에 기여해야 하며, 아동의 이름이 아동보호등록부에 계속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지 또는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CPPM에 제출해야 한다.

마. 아동보호등록

아동보호계획회의(CPPM)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아동은 아동보호등록부에 등록된다. 이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심각한 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아동과 청소년의 기밀 목록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이름을 아동 보호등록부에 올리거나 등록부에서 제거하는 결정은 아동보호계획회의에서만 내릴 수 있다.

2000년에서 2023년까지 스코틀랜드 아동보호등록부에 올라간 아동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1]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수(2000~2023)



출처: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2022-23 Scottish Government,” Scottish Government, 2024, p.5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200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아동보호등록부에 올라간 아동의 수는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있으며, 5세 미만 아동이 꾸준히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1>을 통해 아동보호등록부에 등록된 아동의 수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7월 31일 기준 아동보호등록부에 등록된 아동 중 47%가 남아, 48%가 여아이며, 5%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동이었다. 5세 미만 아동이 등록된 비율은 2022년 48%, 2023년 47%로, 2013년 35%에서 증가했다. 2023년 아동보호등록부에 등록된 5세 이상 아동의 비율은 53%로, 2022년 51%, 2013년 44%에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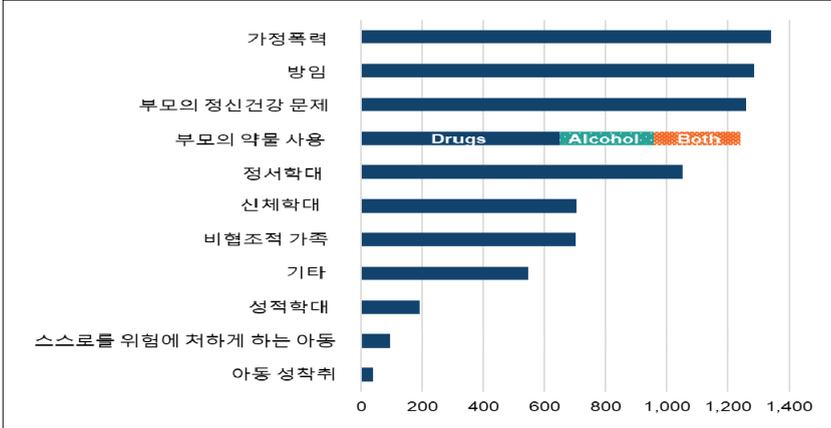
〈표 4-21〉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수와 특성(2013, 2022, 2023)

항목	세부 항목	2013		2022		2023	
		아동의 수	%	아동의 수	%	아동의 수	%
성별	남아	1,299	49	997	49	983	47
	여아	1,220	46	920	46	1,004	48
	출생 전	125	5	102	5	103	5
	알 수 없음	1	0	-	0	4	0
합계		2,645	100	2,019	100	2,094	100
나이	출생 전	125	5	102	5	103	5
	0-4	1,333	30	874	43	887	42
	5-10	806	30	672	33	672	32
	11-15	357	13	350	17	412	20
	16+	23	1	21	1	19	1
	알 수 없음	1	0	-	0	1	0
합계		2,645	100	2,019	100	2,094	100

주: 일부 총합은 반올림의 영향으로 그 구성 요소의 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2022-23 Scottish Government," Scottish Government, 2024, p.6을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다음으로는 아동보호등록부에 등록된 아동들의 아동보호계획회의의 소집 원인을 정리한 그래프를 [그림 4-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호계획회의가 소집된 이유로는 가정 내 폭력이 가장 빈번했으며, 방임,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부모의 약물사용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부모의 약물사용이 회의가 소집되는 가장 빈번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 이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부모의 마약과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빈번하게 아동보호의 문제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4-12]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아동보호계획회의 소집 원인(2022~2023)



주: 원인 중복 기재 가능함. 따라서 해당 그래프 원인의 총합이 등록된 원인의 총합보다 많아질 수 있음.
출처: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2022-23 Scottish Government," Scottish Government, 2024, p.15를 참조하여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바. 아동 청문회

아동 청문회는 위험에 처한 아동, 청소년을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법적 회의이다(Scottish Children's Reporter Administration, n.d.). 아동보고관이 "의뢰"를 받은 경우, 국가실천모델 프레임워크, 아동보호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고관의 판단에 따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의뢰는 아동보호계획회의를 통해 아동보고관에게 접수되기도 하지만, 이외의 다른 경로로 접수될 수도 있다.

의뢰(referral)란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아동보고관이 전달받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이 의뢰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러한 "이유"를 사유서(statement of grounds)라고 한다. 사유서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경우
- 경찰과 문제가 있었을 경우
-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 집,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 성인이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보고관이 의뢰를 받으면, 그 아동과 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그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보고관은 사회복지사나 교사 또는 가정에서 청소년을 돌보는 사람들과 논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나 교사에게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보고관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아동 청문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청소년이 가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청문회 패널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아동보고관은 “스코틀랜드 아동보고관 협회(Scottish Children Reporter Administration)”에 의해 고용되며, 아동보고관 지원 요건 중 하나로 사회복지, 법학, 교육, 또는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 당사자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지 여부는 사전 청문회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너무 어리거나, 참석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경우, 사전 청문회 패널은 해당 아동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누가 청문회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는지, 즉 그 사람이 관련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결정한다.

청문회의 주요 참석자는 패널 구성원이다. 패널 구성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이며, 청문회에 참석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돕기 위해 결정을 내린다. 청문회에는 세 명의 패널 구성원이 있으며, 그중 한 명이 청문회를 주재한다(Children's Hearing Scotland, n.d.). 패널 구성원은 3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패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선 3개월간 주당 약 8시간 가량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5일간 진행되는 CHS (Child Hearing Scotland) 학습 강의 또한 포함된다. 패널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춘 후에도 추가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주로 저녁이나 주말, 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된다.

청문회에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을 돕기 위한 조치를 자원봉사자인 세 명의 패널 구성원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패널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 사유서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례는 종결된다. 이는 집이나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패널 구성원들이 아동·청소년이 다시 청문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이루어진다.
- ▶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 ▶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강제감독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감독명령(Compulsory Supervi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사. 아동 분리보호(강제명령)

아동 청소년이 가정 또는 사회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동 청소년과 가정을 대상으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강제감독명령, 아동보호명령, 배제명령, 아동평가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법원에서 결정되는 나머지 세 가지 명령과 달리, 강제감독명령은 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1) 강제감독명령(Compulsory Supervision Order)

청문회에서 아동의 가정에 대한 강제감독 조치나 아동 분리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제감독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은 청문회 패널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하며, 이 명령에는 아동·청소년의 거주 장소 및 준수해야 할 기타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 감독명령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강제감독명령의 적용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이 집에 머물면서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을 떠나 위탁 가정이나 친척과 함께 생활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명령은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명령서에 명시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강제감독명령이 내려진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재검토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강제감독명령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문회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항소할 수 있다. 강제감독명령은 단기간,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이 명령은 최대 18세까지 유지될 수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Scottish Children

Reporter's Administration, n.d.).

강제감독명령은 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동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가족이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거나,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회가 아닌, 법원에서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강제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포함된다(Citizens Advice Scotland, n.d.)²⁵⁾

2) 아동보호명령(Child Protection Order)

-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하는 경우

2011년 아동 청문회(스코틀랜드)법(Children's Hearings(Scotland) Act 2011) 제37조에 따라 아동이 거주지에서 위협에 처해 있는 경우, 아동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아동보호명령은 아동에 대해 우려하는 개인 또는 지방 당국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보호명령은 8일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법원이나 아동 청문회를 통해 아동을 추후에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배제명령(Exclusion Order)

- 아동을 해치는 사람을 가정에서 격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 아동(스코틀랜드)법(Children(Scotland) Act 1995) 제76조 1항에 따라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보호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판사가 배제명령을 발부

25) 해당 내용은 표기한 출처,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자문 전문가를 통해 전달받은 아동보호 훈련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특정인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퇴거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배제명령은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하며, 판사는 아동보호를 위해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배제명령이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해당 특정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특정인이 아동의 집이나 학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아동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배제명령이 발부되기 전에, 특정인은 치안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권리를 가지며,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정인의 의견을 고려한다. 한편, 판사가 아동보호 명령을 발부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배제명령 대신 아동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은 가정에서 분리되어 안전한 장소로 옮겨질 수 있다.

4) 아동평가명령(Child Assessment Order)

2011년 아동 청문회(스코틀랜드)법(Children's Hearings(Scotland) Act 2011)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중대한 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평가가 필요하고 이 평가가 거부되는 상황에서 아동평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평가명령은 아동을 직접 만나고,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 및 발달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동평가명령은 최대 3일 동안 유효하며, 판사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명령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는 평가 기간 동안 아동이 특정 장소에 거주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아동평가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아동보호명령을 발부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아동보호명령을 대신 발부할 수 있다.

아. 아동보호 종료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는 네 가지 방식으로 종료될 수 있다.

- 첫째, 아동보호 절차의 초기 단계(다기관 논의 또는 아동보호 조사 등)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보호 절차가 종료된다.
- 둘째, 아동의 이름이 아동보호등록부에서 해제될 때 보호 절차가 종료된다.
- 셋째, 아동 청문회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이다.
- 넷째, 강제감독명령이 종료되는 경우이다.

아동보호의 종료는 다양한 책임자가 검토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루어진다. 이때, 둘째(아동보호 등록부 해제), 셋째(아동 청문회 종료), 넷째(강제감독명령 종료)는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등록부에서 아동의 이름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아동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거나 강제감독명령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청문회에서 강제감독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사유서에 포함된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문회가 종료될 경우에는 강제감독명령이 발부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강제감독명령이 종료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재검토 청문회를 통해 강제감독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보호 절차는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하나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아동보호 전체 과정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보호등록부에서 아동의 이름을 해제하는 결정은 아동보호계획회의

(CPPM)에서 이루어진다. CPPM은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에 처했는지를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다기관 회의이다. 등록된 아동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검토 CPPM에서 논의되며, 이 과정에는 사회복지사,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아동이 더 이상 “심각한 해”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참석자들이 등록부에서 아동의 이름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 등록부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아동이나 가족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청문회는 아동보고관에 의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위험에 처했거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된다. 청문회의 최종 결정 권한은 패널 구성원에게 있으며, 패널 구성원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사전에 전문 교육을 받은 후 법적 판단 권한을 위임받는다. 청문회에서 패널 구성원은 보고관이 제공한 사유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교사 등이 작성한 보고서, 아동과 가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패널 구성원은 아동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이 충분히 개선되어 더 이상의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사례를 종결하며, 이로써 아동보호의 공식적인 절차가 종료된다.

강제감독명령은 아동 청문회에서 아동에게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법적 명령이다. 이 명령에는 아동의 거주지와 보호 조건 등이 포함된다. 강제감독명령의 유지 기간은 상이하며, 이후 재검토 청문회에서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재검토 청문회에서 아동의 상황이 개선되어 추가적인 강제감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패널 구성원이 명령을 종료한다.

아동보호 절차는 CPPM, 청문회, 강제감독명령 해제 등의 단계를 거쳐 종료될 수 있지만, 종료 후에도 아동과 가족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보호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보호의 종료는 아동의 현재 상태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2. 아동보호 관련 종사자 훈련 및 슈퍼비전

여기에서는 아동보호 관련 종사자로부터 받은 자문을 바탕으로, 종사자 훈련 과정과 그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동보호 절차에서 의사결정의 주요 역할은 주로 선임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지만, 아동보호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는 관련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아동보호 훈련은 5일간 진행되는 집중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선임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의사, 경찰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훈련 내용은 아동보호 절차별로 다르게 구성된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 조사 인터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조사 인터뷰와 관련한 별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훈련 내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훈련은 아동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법적 절차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며,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차별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22〉 아동보호 훈련 강의 개요

일	주요 내용	주제	활동
1일 아동보호 개요	아동보호의 기본 개념과 절차 소개	아동보호 개요, 국가 지침 및 절차, 근무시간 외 아동보호 대응	E러닝 모듈, 퀴즈, 질의응답
2일 아동보호 우려 영역	아동보호에서 우려되는 영역 및 사례 분석	위험신호, 사례 시나리오, 의학적 관점, 경찰의 역할	사례 기반 학습 및 논의, 질의응답
3일 아동보호 평가	아동보호 평가도구 및 사례 분석	국가위험 프레임워크, 회복력 매트릭스, 연대기 사용 가이드	E러닝 모듈, 평가 사례 시나리오, 질의응답
4일 아동보호의 법적 맥락	아동보호의 법적 측면과 관련 절차	아동보호명령(CPOs), 사회복지사와 법원의 역할, 스코틀랜드 아동보고기관(SCRA)의 역할	법적 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
5일 아동보호 종합	주간학습 요약 및 추가 논의	기타 관련 기관 소개 및 아동보호 절차 개요	퀴즈, 종합피드백 및 질의응답

출처: 본 표는 자문위원에게서 전달받은 아동보호 훈련 강의 자료 "Argyll & Bute Council." (n.d.). Time table 2023 [Word document].를 기반으로 저자가 번역 및 수정.

이러한 교육 과정에는 온라인 활동, 시나리오 재현,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이 활용된다. 특히, 이 교육은 아동보호 전반의 단계를 다루고 있는 국가실천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아동보호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의료 검진을 담당하는 소아과 전문의를 비롯해 아동보호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 전문인 또한 아동보호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레벨 4 또는 5로 분류되는 지명 또는 지정된 전문인력(named and designated professionals) 및 책임 소아과 전문의는 3년 동안 최소 24시간의 아동보호 훈련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관리, 평가, 감독 훈련과 같은 비임상적 수업 또한 포함된다. 또한, 이들은 전문 지침에 따라 전문 지원 그룹 또는 동료 지원 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레벨 4 또는 5의 직급에 임명된 후 1년 이내에 영국 소아과 및 아동 건강 학회(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RCPCH)에서 주최하는 레벨 4 또는 레벨 5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3절 시사점

1. 미국 사례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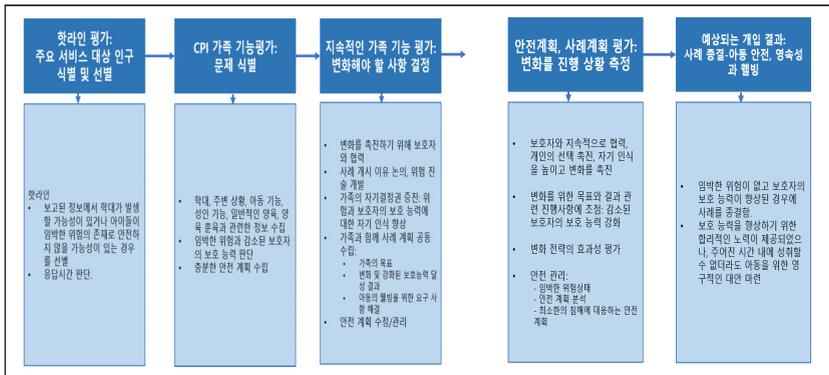
플로리다주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중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사건 및 학대 판단’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아동의 안전과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둔 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서는 ‘안전(safety)’이 모든 대응 단계에서 핵심 원칙으로 작용한다. [그림 4-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플로리다의 아동보호체계는 ‘학대가 발생했는지?’ 그 여부 보다는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조사와 개입이 이루어진다. 서비스 개입은 아동학대의 발생여부가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위험도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조사는 학대 발생 여부 판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판단 결과가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큰 가정의 경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앞선 장에서 일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의 인터뷰 결과, 학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이나 가족의 필요가 분명한 경우

에도, 학대 판정 없이는 서비스 연계가 불가능한 현재의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는 아동학대 조사와 이후 개입의 초점이 학대의 입증 여부가 아닌, 아동의 안전 확보 및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연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방향성의 변화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림 4-13] 아동복지시스템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개입



출처: "Safety Intervention Across the Child Welfare System,"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n.d를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 .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3-10/Core-PostersSafetyInterventionAcrossCWSystem.pdf>

둘째, ‘조사’와 ‘수사’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정립 및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구체화와 이를 반영한 교육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조사는 일선 현장에서 종종 형사적 수사와 혼동되고 있으며, 조사의 목적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모호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일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조사’와 ‘수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는 경찰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학대 조사가

학대 판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절차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아동학대 조사’가 아니라 ‘아동보호 조사’라 명명하는데, 이는 조사 목적이 학대 판정이 아닌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보호 조사에서 학대의 유형과 심각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만,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단순히 학대를 판단하는 능력을 넘어 종합적으로 가족을 사정하는 능력과 위험과 보호 요인을 균형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근거에 기반해서 안전 및 사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능력, 그리고 아동 및 보호자와 면접 및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증거 확보, 의심 정황 분석, 법적 요건 판단,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는 등의 역량이 중요한 경찰(사법기관)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족의 기능 회복과 강화를 지원하는 ‘개입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결정의 임계점에 대한 지침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플로리다의 경우 학대판단에서는 학대가 발생했음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전체 증거의 50%가 초과되는 지점을 판단의 임계점으로 삼고 있다. 아동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치 전에 가정 내에서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와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상충되는 사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판단을 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을 뿐, 아동학대로 판단하게

되는 임계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개인별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즉각분리)에 있어서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직접 혹은 경찰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 비교할 때 아동의 원가정 분리가 다소 간소하게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아동의 원가정 분리에 필요한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 중 96.6%가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되어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반면,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같은 해 기준 57.2%만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의 정의, 신고 절차 및 정책 등이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학대 의심 사례 선별(screen-in) 비율의 적합성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높은 접수율(96.6%)은 매우 보수적인 스크리닝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동학대 조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물론 이러한 보수적인 접근은 실제 학대가 발생한 경우를 놓칠 위험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조사로 아동과 가족에게 정서적·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행정 자원의 낭비, 나아가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학대 조사가 아동 및 가족, 그리고 기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신고 접수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신고 접수 단계에서의 핫라인 상담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사가 현장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 관리팀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핫라인

상당사의 신고 접수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접수의 일관성과 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112 신고 접수자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높은 학대 의심 사례 접수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신고 접수 및 판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영국 사례의 시사점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주요 기관들이 협력하여 단계별·체계적으로 아동보호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여겨진다. 특히 GIRFEC 원칙과 국가실천모델을 통해 아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전 과정에서 강조된다.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기관 논의, 기관 간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아동보호 조사와 아동보호계획회의, 나아가 아동보호등록, 아동 청문회 등의 구조화된 협업 체계가 아동보호를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러한 스코틀랜드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사례에서는 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기관 논의와 아동보호 조사를 통해 경찰, 사회복지, 의료 기관이 함께 아동이 처한 위험 상황과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보호계획회의에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아동보고관 제도와 아동 청문회를 통해 행정 체계와 사법 체계가 긴밀히 연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의 종결 또한 아동보호계획회의, 아동 청문회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런 다기관 협력 모델은 모든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되, 아동을 중심에 두고 협업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의료진,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협의체가 존재하지만, 다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구조화하여 아동보호를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코틀랜드는 아동이 입을 혹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편적인 학대 유형 구분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신체·정신·환경)를 다각도로 평가한다. GIRFEC의 국가실천모델(SHANARRI 지표, My World 삼각형, 탄력성 매트릭스 등)은 이러한 ‘종합적 평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한국 역시 아동학대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학대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아동의 연령, 발달 수준, 가정환경, 부모의 돌봄 능력 등 전반을 평가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시군구 단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활용하는 위험 평가 척도나 상담체계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나, 스코틀랜드처럼 (1) 명확한 국가 차원의 지표, (2) 다양한 전문가의 다각도 평가, (3) 이에 기반한 개입 기준 마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코틀랜드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경찰, 의료진, 교육 관계자 등)이 반드시 기본적인 아동보호 훈련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선임 사회복지사나 소아과 전문의 등 특정 직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심화 교육과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도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맡은 실무진(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 등)에 대한 기본·심화·지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나 재교육 기회의 부족이 여전히 지적된다. 스코틀랜드의 사례처럼, 모든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최소 교육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의료·심리 등 다학제적 내용이 포함된 통합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쌓인 담당자의 ‘슈퍼비전 제공 의무화’나 ‘전문 자격 유지 요건(정기 보수교육)’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넷째, 스코틀랜드는 아동 중심의 판단과 회복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도,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인 패널 구성원이 아동 청문회를 통해 아동보호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패널 구성원들은 가족과 아동의 진술을 직접 듣고 강제감독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봉사자 활용이나 법원 역할의 조율 등의 제도 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도입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코틀랜드 사례는 GIRFEC(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ren)의 의미가 시사하듯,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화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다기관이 아동보호의 각 단계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전문 교육과 법적 조치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모델은 한국에서도 아동보호 절차 전반을 재구조화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아동보호 모델은 이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의료기관 등 여러 조직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진적인 제도 개혁보다는 점진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는 (1) 다기관 협업 강화, (2) 아동 중심적 위험 평가 모델 개발, (3) 전문 인력 양성·관리 체계 강화, (4)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 강화 등의 요소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제5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특성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비넷 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제 5 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특성

제1절 조사 개요

1. 비넷 조사의 활용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넷(Vignette)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넷은 “의사결정 혹은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상황이나 일련의 사건들이 제시된 시나리오의 짧은 설명”이다(Brunnberg & Cedersund, 2013).

비넷 질적 조사는 비넷이라고 불리는 현실과 유사한 가상의 사례(잠재적 아동학대 사례)의 시나리오를 실무자에게 보여주고, 가상 사례에 대한 실무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결과와 기준 및 영향요인 등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는 질적 조사 방법이다. 아동학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 중 비넷을 활용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어 왔는데, 텍스트로 구성된 비넷뿐 아니라 그림,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집안의 환경, 가족의 언어와 태도, 인종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묘한 차이를 암암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그림,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할 경우, 비넷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텍스트 기반 비넷에 비해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Barter & Renold, 2000).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비넷의 경우 비넷의 길이와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질뿐 아니라 응답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비넷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Evans et al., 2015).

비넷 연구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주는 정보의 제약, 실제 상황과 다른 인공적인 상황이라는 한계, 그리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가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Hainmueller et al.(2015)과 Evans et al.(2015)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비넷 조사에서 실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이 덜하다는 해석 또한 제기된 바 있다(Evans et al., 2015).

이 연구의 목적이 조사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의 질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경험에 대한 행복e음의 데이터는 학대피해아동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따른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상의 잠재적 아동학대 사례를 비넷으로 구성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경험을 탐색하였다.

2. 참여자의 선정

비넷 인터뷰 조사 대상은 공공에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설정하였다. 1차 심층인터뷰 참여자 선정 방식과 동일하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다양한 의사결정 경험을 담기 위해 의도적 표집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서의 현장조사, 사례 판단 등 의사결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직책의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 분리 판단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제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 경력 기간,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 지역 특성, 임기제(혹은 전문경력관)와 일반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 번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업무 경력(1년 3개월)을 고려하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과 2년 미만의 경력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배치 상황을 고려하여(2인 이하 배치 지역과 3인 이상 배치 지역으로 구분) 각각 2인 이상 포함하였다. 세 번째, 1차 심층인터뷰와 동일하게, 지역 특성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을 일정 비율 포함하였다. 네 번째, 인터뷰 참여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참여자 중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최소 3인을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24년 8월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연구에 대한 소개와 참여 협조 요청이 담긴 공문을 송부하여 아동보호팀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다. 전문 조사업체를 활용하여 섭외하였으며, 최종 참여자의 확정은 전문 조사업체가 수집한 연구 참여 희망자의 정보를 기준으로 연구진이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표시한 대상자에게는 연구 동의서를 사전에 송부하여 동의를 득하였으며, 2차 인터뷰에는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 조사 내용(비넷의 내용) 구성

선행연구와 1차 심층인터뷰 결과를 혼합하여, 혼합형 방식으로 비넷의 전형적인 사례를 구성하였다(Brunnberg & Cedersund, 2013). 사례 구성 시에는 학대 유형, 신고 경로의 차이, 신고자 특성, 가구 형태, 가해자 특성, 학대의 심각성, 아동에게 끼친 위해의 정도, 증거의 확실성, 고의성 수준, 아동의 연령 및 장애 특성, 아동의 비행 문제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부부싸움 노출 여부, 이혼 준비 여부, 재신고 여부, 알코올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학대 유형 중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중복 학대를 포함하였으며, 신고 경로는 112와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구분하였고 신고자는 신고 의무자 여부와 아동 본인 신고인지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가구 형태는 양 부모와 한부모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부모 중 한 명의 외국 출생 여부와 부부싸움 노출 여부, 이혼 준비 여부, 그리고 가해자의 알코올 사용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가해자를 부모인 경우와 교사인 경우로 구분하여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특성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미취학, 청소년의 사례를 각각 제시하였고, 장애 여부와 아동의 비행 행동 여부도 함께 고려하였다.

일부 비넷을 3단계로 구성했는데, 1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로 진행될수록 학대의 심각성과 아동에게 끼친 위해의 정도, 증거의 확실성이 높아지도록 비넷을 구성하여, 응답자의 의사결정 임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자의 미필적 고의성이 비교적 낮은 사례와 높은 사례를 포함하여 이에 대해 응답자의 의사결정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넷 ①은 Brunnberg and Cedersund(2013)가 개발하고 Hyun and

Adams(2016)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자의 승인을 얻어 Hyun and Adams(2016)의 한국어 번안본(현진희, 2015)을 활용하였다. 비넷 ①의 사례에는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의 증거가 단계별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비넷 ② ~ 비넷 ⑤는 본 연구의 연구진이 개발한 것으로, 비넷 ②는 청소년 본인이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신고한 사례로 보호자와 청소년 본인의 진술이 엇갈리도록 하였으며, 이혼을 준비하는 가정에서 배우자의 신고를 포함하였고,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방임, 청소년의 비행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례로 구성하였다. 비넷 ③은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부부폭력 노출 사례로 112로 신고 경로를 특정하였으며, 가해자의 알코올 사용을 포함하고, 아동의 연령을 영유아로 설정하였다. 비넷 ① ~ 비넷 ③은 세 단계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단계가 올라갈수록 재신고 빈도, 학대의 심각성, 아동에게 끼친 위해의 정도, 증거의 확실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비넷 ④는 학부모가 신고한 교사에 의한 정서학대 사례로 아동의 특성은 학령기의 장애아동으로 설정하였다. 비넷 ⑤는 한부모가정의 방임(방치) 사례로 보호자의 미필적 고의 수준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였다.

비넷을 구성할 때 포함된 단계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학대 판단, 아동의 응급분리 등으로 비넷 시나리오상에 사례 종결 단계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사례 종결 단계의 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비넷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심층인터뷰에서도 사례 종결 결정은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어, 사례 종결에 대한 비넷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표 5-1〉 비넛별 시나리오의 세부 특성

구분	비넛 ①	비넛 ②	비넛 ③	비넛 ④	비넛 ⑤
학대 유형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정서학대 (부부폭력 노출)	정서학대	방임(방치)
신고 경로	지자체	지자체	112	지자체	지자체
신고자 특성	신고 의무자, 이웃 주민	청소년 본인, 배우자, 신고 의무자	이웃 주민, 신고 의무자	학부모	이웃 주민
보호자	부모	한부모	부모	미상	한부모
가해자 특성	20대 보호자	보호자	알코올 사용, 배우자 가해, 보호자	교사	보호자
아동 연령	6세	청소년	영유아	초등 학령	7세
아동 특성	-	비행 문제	2명	경계선 장애	-
가구 특성	-	이혼 준비 (별거)	다문화가정	-	-
재신고 여부	단계별 재신고 횟수 증가			-	-
학대 심각성	단계별 학대 심각성 증가			-	-
위해 수준	단계별 아동 위해 수준 증가			-	-
증거 확실성	단계별 증인(증거) 증가			-	-
미필적 고의	-	-	-	-	미필적 고의 낮음

인터뷰 조사의 질문 내용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한 문제의 사정, 아동학대 사례 시나리오에 대한 단계별 의사결정과 그 이유, 의사결정이 모호하거나 어려웠던 사항, 응답자 특성, 의사결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넛 별로 아동학대 접수-학대 판단-아동 분리 판단을 위한 사례 시나리오(비넛)에 대한 (단계별) 의사결정 결과, 개입의 필요성, 의사결정이 모호하거나 어려웠던 사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특성(업무 경력, 자격, 시군구

의사결정 지원체계), 지역 특성(학대 판단율, 분리보호 비율 등), 개인적 특성(업무 만족도, 어린 시절 경험 등),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표 5-2〉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주요 질문
사정	- 제시된 시나리오 주된 문제(부모의 양육방식, 아동의 안전 위협 등)
의사결정 특성	- 의심 사례 접수 적절성 -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적절성 - 사회복지·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인한 원가정 생활 가능성 - 원가정 분리보호 여부
결정이 어려웠던 경험(사항)	-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사례를 접하는 편인지? - 실제 사례였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인지? - 제시된 시나리오에서 의심, 학대 사례, 분리 여부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이유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업무 특성(업무 경력, 자격, 시군구 의사결정 지원체계 등) - 지역 특성(학대 판단율, 분리보호 비율 등) - 업무 만족도(1~10점 척도) - 개인적인 특성
의사결정 지원 사항	-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자료수집 방법

해당 조사에서는 두 번의 자료수집이 이뤄졌다. 첫 번째로는 원활한 인터뷰 전에 비넷 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비넷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의사결정 결과와 응답자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는 서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정, 의사결정 특성, 결정이 어려웠던 사항,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서면조사와 인터뷰는 2024년 10월 중 3주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비대면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면접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자가 직접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참여 희망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질문 내용, 진행 과정,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보호, 연구 참여 동의 철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연구 참여 전에 송부하였으며, 동의한 희망자에게 한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및 조사 계획서, 비넷 질문지 등을 포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었다 (승인번호 제2024-122호).

6. 조사 참여자의 주요 특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넷 인터뷰에는 총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대도시 및 중소도시 등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는 7명,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는 5명이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들은 모두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인원이 2인 이하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력은 1년 미만이 4인, 1년~3년 미만이 5인, 3년 이상이 3인이었다. 그리고 전체 연구 참여자 중 4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업무 경력이 있었다.

〈표 5-3〉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연구 참여자	지자체 특성	직제	아동학대 관련 업무 경력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경력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수	비고
1	중소도시	일반직	2년~3년	2년~3년	3~5명	
2	중소도시	임기제 혹은 전문경력관	1년~2년	1년 미만	3~5명	
3	농어촌	임기제 혹은 전문경력관	10년 이상	1년~2년	2명 이하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력
4	농어촌	임기제 혹은 전문경력관	2년~3년	2년~3년	2명 이하	
5	중소도시	일반직	1년~2년	1년~2년	6~10명	
6	중소도시	임기제 혹은 전문경력관	5년~10년	2년~3년	6~10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력
7	농어촌	일반직	1년~2년	1년~2년	2명 이하	
8	대도시	임기제 혹은 전문경력관	5년~10년	1년 미만	3~5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력
9	대도시	일반직	2년~3년	2년~3년	10명 이상	
10	대도시	임기제 혹은 전문경력관	5년~10년	2년~3년	3~5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력
11	농어촌	일반직	1년 미만	1년 미만	2명 이하	
12	농어촌	일반직	-	1년 미만	2명 이하	

주: 아동학대 관련 업무 경력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력이 동일하면 회색 음영으로 표기함.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비넷 조사의 참여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 12명의 성별로는 여성이 7명(58.3%), 남성이 5명(41.7%)이었다. 최종학위로는 4년제 대학 졸업인 참여자가 7명(58.3%), 대학원 재학/졸업인 참여자가 5명(41.7%)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전공은 사회복지전공이 6명(50.0%)으로 가장 많고, 심리학, 사회복지와 심리학 복수전공이 각 1명(8.3%)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중 8명(66.7%)이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였으며, 4명

(33.3%)이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이 있었다. 참여자의 아동학대 업무 경력으로는 6년 미만인 8명(66.7%), 6년 이상이 3명(25.0%), 해당 문항 무응답 1명(8.3%)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업무 경력은 2년 미만이 7명(58.3%), 2년 이상이 5명(41.7%)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소속 지자체 특성은 농어촌 지역이 5명(41.7%)으로 가장 많으며, 중소도시 4명(33.3%), 대도시 3명(25.0%)으로 나타났다. 소속 지자체별 업무 배치 인원은 4명 미만(1~3명)이 7명(58.3%), 4명 이상이 5명(41.7%)이다. 참여자 소속 지역의 학대 판단율은 최소 30.0%, 최대 96.0%, 평균 69.7%였다. 참여자들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근무에 대한 근무 만족도는 1점~10점 만점에 보통(7~5점)이 5명(41.7%), 낮음(4~0점)이 4명(33.3%), 높음(10~8점)이 3명(25.0%)으로 나타났다.

〈표 5-4〉 참여자 특성

(단위: 명, %, 연, 점, 총 12명)

구분		빈도
참여자 수		12(100.0)
성별	남성	5(41.7)
	여성	7(58.3)
최종학위	4년제 대학 졸업	7(58.3)
	대학원 재학/졸업	5(41.7)
전공	사회복지	6(50.0)
	심리학	1(8.3)
	사회복지, 심리학	1(8.3)
	기타	4(33.3)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8(66.7)
	사회복지사 2급	4(33.3)
아동학대 업무 경력(연)	6년 미만	8(66.7)
	6년 이상	3(25.0)
	무응답	1(8.3)

구분		빈도
아동학대 공무원 업무 경력(연)	2년 미만	7(58.3)
	2년 이상	5(41.7)
직급	9급	1(8.3)
	8급	6(50.0)
	7급	5(41.7)
소속 지자체 특성	대도시	3(25.0)
	중소도시	4(33.3)
	농어촌	5(41.7)
학대 판단율	최소값-최대값, 평균	30.0-96.0, 69.7
업무 배치 인원	4명 미만(1~3명)	7(58.3)
	4명 이상	5(41.7)
근무 만족도(점)	높음(10~8점)	3(25.0)
	보통(7~5점)	5(41.7)
	낮음(4~0점)	4(33.3)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비넷 조사 결과

1.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가. 【비넷 ①】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

1) 1단계

시나리오 1

■ 사례 1단계

한 소아과 간호사가 수연이가 처한 상황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전화를 걸어 왔다. 그 간호사는 자신의 환자로부터 자신이 사는 지역에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6세 정도 된 작은 여자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연이라는 그 아이는 저녁 늦은 시간에 집 밖에 있었다고 한다. 가끔 부모들이 쇼핑을 갈 때 수연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 같았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제 갓 20세를 넘긴 젊은 부부이다.

출처: “한국과 미국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사정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현진희, 2015, p.8을 현행화하였으며 가명 등 수정함.

비넷 ①의 1단계 상황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다수가 방임을 판단하기에는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다수는 ‘방임’ 의심 정황이 있으므로 의심 사례로 접수는 하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실질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학대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대부분 1단계 상황에서 신고된 아동의 연령(미취학-자기방어 능력이 없음)과 ‘야간’ 및 ‘집 밖’에서의 행위가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제 “혼자 두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건너 건너서,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고, 정확한 지역이나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 물론 통화상에는 어느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 “같았다.” “그렇다고 들었다.” 해서 정확한 시점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정보가 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동학대가 의심만 돼도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접수를 하는 거는 매우 적절하고. (참여자 1)

이 내용상에서도 이제 일단은 아이가 늦은 시간에 집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 정도. 나이는 6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인데, 이런 아이가 지금 혼자 늦은 시간에 그렇게 있다는 부분은 일단 방임이 의심된다. (참여자 10)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는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조사하거나 행정망을 통해 신고 아동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정보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보호자의 방임 우려 행위의 반복성과 미필적 고의, 아동의 공포감, 혼자 남겨진 시간, 아동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의 그런 차선책을 두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 (참여자 1)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에 혼자 있는 건지, 혼자 있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있는지, 또 아이가 느끼는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참여자 3)

그러나 일부는 의심 사례로 접수하는 대신 신고자에게 112로 직접 신고할 것을 안내하겠다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지자체로 신고하는 것보다 112로 신고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단은 아동학대 신고는 112 아니면 지자체에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요. 112에는 인적 사항이 없어도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그냥 예를 들면, 지나가던 행인이 옆에 누가 애를 때리고 있는 걸 봤어. 라고 신고해도 CCTV를 추적하고 이 그때 지나간 사람들의 경로를 추적하고 사람을 확인해서 그걸 아동학대로 접수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말한 환자분이 다시 오셨을 때 아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되시면, 112에 신고하실 수 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참여자 8)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원활하고,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경찰에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좀 독려를 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9)

〈표 5-5〉 【비넷 ①-1단계】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정보 확인 후 접수	X	X
2	정보 확인 후 접수	X	X
3	O	X	X
4	O	조사 후 사실인 경우 O	X
5	O	조사 후 사실인 경우 O	X
6	정보 확인 후 접수	X	X
7	O	X	X
8	X	X	X
9	O	X	X
10	X	X	X
11	O	O	X
12	O	X	X

2) 2단계

시나리오 1

■ 사례 1단계

한 소아과 간호사가 수연이가 처한 상황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전화를 걸어 왔다. 그 간호사는 자신의 환자로부터 자신이 사는 지역에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6세 정도 된 작은 여자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연이라는 그 아이는 저녁 늦은 시간에 집 밖에 있었다고 한다. 가끔 부모들이 쇼핑을 갈 때 수연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 같았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제 갓 20세를 넘긴 젊은 부부이다.

■ 사례 2단계

몇 달 후에 아동보호팀은 같은 가족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

한 이웃 주민이 지자체 아동보호팀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이웃집에서 어린 여자 아이의 비명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마 전에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장면도 보았다고 했다. 그 날 그 이웃집 여자 아이는 몇몇 다른 남자 아이들과 같이 축구를 하다가 창문을 켜었다고 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그 여자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은 아니었으며, 이웃 주민은 그 전에도 그 아버지가 여자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출처: “한국과 미국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사정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현진희, 2015, p.8을 현행화하였으며 가명 등 수정함.

비넷 ①의 2단계에서 응답자들은 만장일치로 신고 건을 접수하여 현장 조사를 신속히 개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수는 2단계에서 학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학대 행위의 직접 목격자 확보, 학대 행위의 반복성, 비명소리와 심한 신체학대 목격, 재신고 등이 학대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고자(목격자)가 아닌 피해아동 본인이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장조사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그러는 것 같았다”에서, “보았다”는 이제 직접적인 진술이 나왔고... 그리고 “처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미 목격자가 여러 명이고, 현장을 봤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자 1)

이웃 주민이 심하게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진술한 부분이랑. 그리고 아버지가 매우 화나 있었다, 라는 모습에서 좀 아버님의 이런 행위들이 고의성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1단계에서는 뭔가 “같았다.”라는 추상적인 진술이었던 반면에, 2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목격하신 부분이 있어서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6)

2단계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에 다수가 동의하였으나, 원가정 분리에는 대부분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으며, 비학대 부모의 보호, 사례관리서비스, 양육지원서비스, 부모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분리 결정에 있어서 일부 응답자는 아동의 연령이 어리므로(미취학)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었으나, 다수는 아동의 의사와 피신고자(가해자)의 반성 여부, 가정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분리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견이었다.

행위자분을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여서, 행위자분의 진짜 사용하시는 그런 훈육 방법이나, 원가정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가정에서 분리가 또 답은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참여자 6)

〈표 5-6〉 【비넷 ①-2단계】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	○	X
2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3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
4	○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5	○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6	○	○	△
7	○	○	조사 후 분리 필요한 경우 ○
8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9	○	X	X
10	○	○	X
11	○	○	X
12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3) 3단계

시나리오 1

■ 사례 1단계

한 소아과 간호사가 수연이가 처한 상황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전화를 걸어 왔다. 그 간호사는 자신의 환자로부터 자신이 사는 지역에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6세 정도 된 작은 여자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연이라는 그 아이는 저녁 늦은 시간에 집 밖에 있었다고 한다. 가끔 부모들이 쇼핑을 갈 때 수연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 같았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제 갓 20세를 넘긴 젊은 부부이다.

■ 사례 2단계

몇 달 후에 아동보호팀은 같은 가족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

한 이웃 주민이 지자체 아동보호팀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이웃집에서 어린 여자 아이의 비명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마 전에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장면도 보았다고 했다. 그 날 그 이웃집 여자 아이는 몇몇 다른 남자 아이들과 같이 축구를 하다가 창문을 켜었다고 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그 여자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은 아니었으며, 이웃 주민은 그 전에도 그 아버지가 여자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 사례 3단계

6개월 뒤, 사회복지사가 수연이의 등에서 몇 개의 멍 그리고 뺨과 팔에 화상자국을 발견하였다. 부모들은 수연이가 매우 활동적인 아이여서 자주 넘어지고 멍이 생기곤 한다고 하였다. 화상자국은 담뱃불 쪽으로 넘어져서 생겼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해보고 수연이가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줄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수연이의 어머니는 딸이 최근에 입맛이 없었고 자주 아팠다고 하였다.

출처: “한국과 미국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사정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현진희, 2015, p.8을 현행화하였으며 가명 등 수정함.

비넷 ①의 3단계 상황은 명확한 신체학대 사례로 인식되었으며, 일부 응답자는 이미 2단계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학대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응답자들은 ‘등에 나타난 멍’, ‘화상자국’과 ‘체중 감소’를 학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며, 피해아동의 신체에 남은 상흔이 확인되는 신체학대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례로 보았다.

응답자들은 ‘등’은 일반적으로 쉽게 멍이 드는 부위가 아니며,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 자연스럽게 생기기 어려운 뺨의 화상자국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하였다. 특히, 보호자가 제시한 ‘담뱃불 쪽으로 넘어졌다’는 설명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이는 보호자의 진술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었다. 또한 성장기 아동의 '체중 감소'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게 된 명확한 지표이자 원가정 분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다.

몸무게가 줄었다는, 성장기 아이가 몸무게가 주는 일은 정말 거의 드물어요. 진짜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생겨서 막 하지 않는 한 사실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근데 그러면 정말 아팠다고 하면 병원을 데려 가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건 거죠. 내 아이가 체중이 줄 정도로 밥을 못 먹는데, 병원을 안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참여자 8)

부모는 아이가 활발해서 멍이 생겼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아무리 아이가 넘어져도 생기는 멍은 등까지 생기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랬고, 담뱃볼 쪽으로 넘어졌다고 하는 이런 상황도 사실 되게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 몸무게도 줄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원가 방임적인 부분에서도 의심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분리 조치가 무조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6)

모든 응답자는 두 번째 재신고가 되었다는 점이 위험도를 높이므로 즉각 분리나 응급조치 등을 통해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동이 분리에 반대하더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위험요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지역 내 분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분리 결정을 하더라도 즉시 분리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였다.

저희 쪽에서는 시설이 없어요. 쉼터나 아동학대 보호시설 같은 게... 저희 지역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같은 경우가 분리보호를 즉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참여자 11)

〈표 5-7〉 【비넷 ①-3단계】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
2	○	○	○
3	○	○	○
4	○	○	○
5	○	○	○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나. 【비넷 ②】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1) 1단계

시나리오 2

■ 사례 1단계

한 15세 남학생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전화를 걸어 왔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병훈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다고 하였다. 어저께 밤에는 친구와 놀다가 늦게 들어온 자신에게 '나가 죽어라', 'XX놈' 같은 상스러운 욕을 하였으며, '왜 그러냐'고 대꾸하자,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싫고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며 쉼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비넷②의 1단계 상황은 청소년이 직접 신고한 사례로, 다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접수는 하되, 즉각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신고한 아동의 연령이 15세로 자기방어 능력은 있으나, 분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였다는 점과 욕설 및 폭언은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욕설과 폭언입니다. 특히나 직접적으로 나가 죽어라. 다음, 그리고 아버지와 무섭다, 같이 있기 싫다, 이런 것들. (참여자 11)

그럼에도 이들이 판단을 보류한 주요 이유는 진술의 신뢰성 문제였다. 실제 응답자들이 경험한 사례에서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이 부모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훈육을 피하거나 가출을 시도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현장조사에서도, 신고 당시 청소년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좀 다른 자치구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만났을 때 피해가, 과장된 피해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청 저를 때렸고 욕했습니다. 막 하고 해서 그러냐 하고, 아동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피해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보호하려고 응급조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보면, 나중에 혐의자였던 부모의 입장을 딱 만나면 정반대의 결과. 네 그래서 아이에게 속아서 오히려 역 민원을 받은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신중을 가해야 하고 아동이 진실된 피해 진술이었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되는 부분이. 좀 그래서 필요했고. (참여자 10)

이런 탈가정인 욕구 때문에 사실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과장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 정도 연령대 나이는 사실상 좀 방어 능력이 있다고 보는 점도 있고. 그런 좀 진술의 신뢰성을 이 아동의 말만 듣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동학대 신고 의심으로 접수는 당연히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버지나 주변인의 진술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말만으로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자 9)

그럼에도 일부 응답자들은 1단계에서도 아동학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응답자는 아동의 직접신고 시 진술이 진실이었던 사례를 담당했던 경험에 기반해서 학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다른 소수 응답자들은 청소년에 의한 본인 신고의 경로가 지자체 아동보호팀이었다는 점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추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맞았다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진짜 맞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일단 학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인제 10개월이 됐는데, 일단 00이 그렇게 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참여자 12)

어쨌든 아이가 이거를 그냥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 신고한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게 약간 다른 게 어쨌든 그냥 정말 도움을 요청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흔히 저희가 다 캠페인을 하거나, 홍보할 때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로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자체 번호를 찾아서 문의했다는 건 정말 뭔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경찰에 말하기는 어려운. (참여자 8)

〈표 5-8〉 【비넷 ②-1단계】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정보 확인 후 접수	X	X
2	○	○	X
3	○	X	X
4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5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6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7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8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9	○	X	X
10	X	X	X
11	○	○	X
12	○	○	X

2) 2단계

시나리오 2

■ 사례 1단계

한 15세 남학생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전화를 걸어 왔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병훈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다고 하였다. 어저께 밤에는 친구와 놀다가 늦게 들어온 자신에게 '나가 죽어라', 'XX놈' 같은 상스러운 욕을 하였으며, '왜 그러냐'고 대꾸하자,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싫고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며 쉼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 사례 2단계

몇 달 후에 아동보호팀은 병훈이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 어떤 여성이 아동보호팀으로 전화를 해, 자신의 아들이 친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남편과 별거 중이며,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아들에게 종종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자기가 걱정할까봐 아들이 맞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남편은 아들이 어릴 적에도 훈육을 하다가 아들을 때린 적이 있고, 지금도 아들을 때리고도 남을 위인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곧 이혼소송을 할 예정이며,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아동학대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비넷 ②의 2단계 상황은 이혼소송을 앞둔 배우자가 재신고한 사례로, 다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접수 후 진술의 신뢰성을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결과 사실일 경우 학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아동학대 가해를 배우자 귀책 사유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고 의도와 진술의 신뢰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일부 응답자는 만약 1단계(청소년 본인의 신고) 없이 배우자가 먼저 신고했다면, 이혼소송과 관련된 양육권 분쟁의 일부로 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로 접수하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분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게 좀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제 좀 보호자인 아빠를 만나서 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여자 9)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불순한 동기다. 이혼 소송을 이걸 좀 이용하고,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아동학대로 쓰려고 하는 거를, 아동학대 얘기보다는 이 내용의 진술이 조금 그런 부분에 더 가깝겠다 싶어서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참여자 10)

2단계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단계 청소년 본인의 신고와 2단계 배우자의 신고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학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대 판단의 주요 근거로는 훈육을 넘어선 부의 폭력적인 행동(아동을 때린 경험, 소리 지르며 욕설하는 행위), 한부모 가정에서 비학대 보호자(보호 요인)가 부재한 점, 그리고 아동이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사실이 맞다. 좀 예전부터 훈육할 때 늘 좀 체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게 강도가 어느 정도 심했다 이러면은 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상담하고 사례관리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친모인 거잖아요. 아이의 친모도 아이랑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대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여진 거고요. (참여자 8)

일부는 2단계에서 가정 내 비학대 보호자가 없고, 아동이 분리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었으나, 즉각적인 아동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신, 사례관리 서비스, 부모 교육, 그리고 아동의 비행 문제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일단은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하고 사춘기 때 아동에게 좀 부모가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 기술 훈련이라든가,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할, 연계를 할 것 같고. 아동이 혹시 이 뭔가 자꾸 문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심리 상담을 연계하거나.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갈등이 둘이 생겼을 때 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족 관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연계하거나, 가족 상담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참여자 9)

〈표 5-9〉 【비넷 ②-2단계】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2	○	○	X
3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4	○	○	○
5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6	○	○	조사 후 분리 필요한 경우 ○
7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8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9	○	X	X
10	X	X	X
11	○	○	X
12	○	○	○

3) 3단계

시나리오 2

■ 사례 1단계

한 15세 남학생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전화를 걸어 왔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병훈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다고 하였다. 어저께 밤에는 친구와 놀다가 늦게 들어온 자신에게 '나가 죽어라', 'XX놈' 같은 상스러운 욕을 하였으며, '왜 그러냐'고 대꾸하자,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싫고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며 쉼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 사례 2단계

몇 달 후에 아동보호팀은 병훈이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

어떤 여성이 아동보호팀으로 전화를 해, 자신의 아들이 친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남편과 별거 중이며,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아들에게 종종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자기가 걱정할까봐 아들이 맞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남편은 아들이 어릴 적에도 혼욕을 하다가 아들을 때린 적이 있고, 지금도 아들을 때리고도 남을 위인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곧 이혼소송을 할 예정이며,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아동학대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사례 3단계

6개월 뒤, 한 학교의 교사가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전화를 해, 자신의 반에 가끔 무단결석을 하는 한 남학생이 있는데,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 남학생은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으며, 최근 무단결석이 잦았다고 하였다. 교사는 무단결석에 대해 상의하고자 그 학생의 아버지와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는 화가 난 말투로 아들이 매일 늦게 들어오고 담배를 피워서 자신이 매를 들어 혼욕했더니 대들고 반항하다가, 며칠 전 말도 없이 가출을 했으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학생이 등교한 날 교사가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았더니 아버지가 '나가라'고 해서 집을 나왔으며, 지금은 친구네 집이나 찜질방 같은 곳에서 머무른다고 하였다. 그 학생의 얼굴과 팔에 멍이 들어있었다고 하였다.

비넷 ②의 3단계 상황은 중학교 담임교사가 재신고한 건으로, 대다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이 단계에서 명확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학대 판단의 근거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서 거짓 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민원 발생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신고 내용에 신뢰가 간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아동의 얼굴과 팔에 상흔이 있으며,

아버지가 직접 매를 들어 훈육했다고 인정한 점, 그리고 아동이 가출하여 위험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신고자가 교사시잖아요. 교사나 어쨌든 아이를 보는 제 3자의 신고는 조금 더 특징으로 봐요. 이 교사가 굳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거짓말로 신고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피신고자에 의한 신고는 조금 더 꼼꼼 엄하게 기준을 높게 보거든요.... 신고하면 민원이 터지거든요. 보통 피신고자들이 왜 신고했냐. 피신고자 노출이 안 되게 하지만, 추측하시니까. 애가 학교에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왔다 그러면 학교가 신고자인 거잖아요. 그런 민원을 감내하고도 신고하는 거니까. 정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높다. (참여자 8)

다수의 응답자는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분리 희망 의사를 표명한 점, 무단 결석과 가출 등 비행 문제가 나타난 점, 그리고 세 차례의 신고와 반복적인 아버지의 폭력적 행동이 양육 부적합 요소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아동의 신체에 남은 멍과 상흔이 아버지의 체벌로 인한 것이라면, 분리 조치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호 조치를 하려고 하면, 친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판단을 해야 하겠죠. 뭐 학교에 안 갔으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해서, 아이가 가출했다. 라는 내용을,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 아니면 112에 가출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지속해서 무단결석이 아이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가출로 인해서 찾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적절한 보호자로 현재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참여자 3)

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례에서의 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원가정 지원이나 분리 조치로도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비행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기존에 경험해 본 사례들에서 간혹 통고제도를 통해 아동이 변화되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례 관리가 더 효과적이기보다는 사실 그게 더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비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통고라는 걸 했거든요. 통고제도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원에서 보호 관찰을 시켜요. 보호관찰소로 보내요,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도 조금 자기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개념은요.

예를 들자면 보호관찰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이가 봉사 명령 같은 것처럼 봉사도 해야 되고, 출결해서 교육도 받아요. 그런 것들이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강제적으로는 못 하거든요. 아이가 사례 관리 수업 안 할 거예요 하면 아무리 전화하고 찾아가도 안 만나주면 애가 그만이에요. 근데 이 통고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보호 관찰을 하게 되면 비행 청소년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강제성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비행을 먼저 보고, 학대보다는 비행 문제를 먼저 좀 더 접근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아버지도 제 경험상 부모님들이 더 감사해하고 오히려 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참여자 10)

반면, 일부 응답자는 아동을 쉼터에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쉼터에서 가출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아동의 비행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오히려 원가정 내에서 사례관리, 부모 교육, 갈등 대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아이는 쉼터로 보내달라는 것이 가출하거나, 아바로부터 정정당당하게 독립하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장소로 쉼터나, 이런 분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런 친구들이 쉼터나 이런 시설에 오면 시설에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쉼터에,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쉼터로 데려왔는데, 쉼터에서 다시 가출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보호자들도 당신들이 데려갔으니, 이제 알아서 해라. 하고 아예 그냥 떠넘기고, 아이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대화나,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가정에 조금 더. 부모님과 사이를 좀 관계 개선하는 기회를 계속 좀 더 주는 걸로, 바로 분리하기는 조금. (참여자 1)

〈표 5-10〉 【비넷 ②-3단계】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
2	○	○	○
3	○	○	○
4	○	○	○
5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6	○	○	○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7	○	○	○
8	○	○	○
9	○	○	X
10	○	X	X
11	○	○	○
12	○	○	○

다. 【비넷 ③】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1) 1단계

시나리오 3

■ 사례 1단계

한 지역 주민이 낮 시간에 이웃집에서 성인들 간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당 집에는 부부와 영유아가 살고 있다고 하였으며, 아이들의 어머니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지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웃 주민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간혹 술에 취해서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고 하였다.

비넷 ③의 1단계 상황은 이웃 주민이 부부싸움을 한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대다수의 응답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일부 응답자는 해당 신고가 아동학대보다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요거는 일단은 보통 이런 신고가 가정폭력으로 접수돼서 저한테 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통 부부 상담 쪽으로... 현장에서 일단, 이 정도 1회로 저한테 전화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참여자 7)

1단계의 부부폭력 노출이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뢰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만약 이웃 주민의 신고가 사실이라면 학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간혹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보복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무고성 신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저는 이 뜻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위해서 조사를 나가야 한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아동학대로 판단하기에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있었다고 하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으로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참여자 3)

일단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이웃집에 들릴 정도면, 어쨌든 그다음에 아동이 노출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 그게 조금 의문일 것 같기는 해요. 1회여도 학대이긴 한데, 하고 이웃분이 어떤 의도로 신고가 됐는지, 신뢰성 검토를 한번 해볼 것 같기는 해요. 층간 소음 때문에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참여자 2)

학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학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외부에서도 들릴 정도로 다툼이 반복되었다는 점, 자녀가 영유아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행위가 정서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일단 영유아가 컸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영유아여서 좀 더 응급으로 봤던 부분이 있고, 이제 술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부분에서 좀 위험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뭔가 응급하게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6)

반면, 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자들은 이웃 주민이 성인 간의 다툼 소리를 들었을 뿐 직접 부부싸움을 목격한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황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학대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애기들이 지금 3세하고, 10개월 된 애기들이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툼이 애들한테 좀 정서적으로 안 좋긴 한데, 이 3세하고 10세 된 아동을 부모님이 과연 분리할 하도록, 그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라든지, 그런 상황이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으면은 좀 어떻게 강제로 설득이라도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은 부부싸움의 상황에서 아동에 노출된 거라서. (참여자 12)

〈표 5-11〉 【비넷 ③-1단계】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2	○	○	X
3	○	X	X
4	○	○	○
5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6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7	X	X	X
8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9	○	X	X
10	X	X	X
11	○	○	X
12	○	X	X

2) 2단계

시나리오 3

■ 사례 1단계

한 지역 주민이 낮 시간에 이웃집에서 성인들 간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당 집에는 부부와 영유아가 살고 있다고 하였으며, 아이들의 어머니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지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웃 주민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간혹 술에 취해서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고 하였다.

■ 사례 2단계

몇 달 후에 한 이웃 주민이 또다시 112에 신고했다.

한밤중에 부모 간에 큰 싸움이 발생했으며, 어린 윤지와 윤수가 계속 울고 있었다. 신고한 주민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윤지가 자주 집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밖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부부폭력이 있었으며, 아이들이 그 상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사건을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조사 의뢰했다. 어머니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으며, 자녀로는 3세 여아 윤지와 10개월 된 남아 윤수가 있다. 어젯밤 윤지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싸웠으며 싸움 도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이 있었다. 윤지의 아버지는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설명했으며, 싸우는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윤지의 어머니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

비넷 ③의 2단계는 경찰이 부부 폭력 발생을 확인한 상태에서, 부부 폭력 노출 의심 사례로 접수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폭력이 발생하였다면, 대다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이를 정서학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대 판단의 근거로는 보호자 간의 부적절한 행위(부부싸움, 욕설 등)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하였다. 한두 차례에 불과하더라도 한밤중에 격렬한 다툼은 학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직접 부부싸움을 목격하지 않고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부 폭력에 노출된 것이므로, 정서학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게 경찰 조사 시 이런 부분이 확인했다, 그러면 당연히 학대로는 판단이 되고, 아버님에 의한 정서학대로 판단이 되겠소. (참여자 8)

여기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뭐 실제 상흔이 남는 사례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이러한 신고들이 주민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신고가 됐다는 내용으로. 네 여기서 아동학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참여자 3)

아동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조치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분리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동들의 연령이 너무 어려 시설 보호가 어려운 점(영아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 내에 없거나, 시설보호가 영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간주)을 들었다.

과연 아동이 분리됐을 때 이 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갔을 때 과연 괜찮을까. 특히나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고, 그게 좀 많이 걸렸습니다. (참여자 11)

〈표 5-12〉 【비넷 ③-2단계】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	○	X
2	○	○	X
3	○	○	○
4	○	○	○
5	○	○	X
6	○	○	X
7	○	○	X
8	○	○	○
9	○	X	X
10	X	X	O(가정폭력으로 분리)
11	○	○	X
12	○	○	X

3) 3단계

시나리오 3

■ 사례 1단계

한 지역 주민이 낮 시간에 이웃집에서 성인들 간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당 집에는 부부와 영유아가 살고 있다고 하였으며, 아이들의 어머니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지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웃 주민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간혹 술에 취해서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고 하였다.

■ 사례 2단계

몇 달 후에 한 이웃 주민이 또다시 112에 신고했다.

한밤중에 부모 간에 큰 싸움이 발생했으며, 어린 윤지와 윤수가 계속 울고 있었다. 신고한 주민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윤지가 자주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밖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부부폭력이 있었으며, 아이들이 그 상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사건을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조사 의뢰했다. 어머니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으며, 자녀로는 3세 여아 윤지와 10개월 된 남아 윤수가 있다. 어젯밤 윤지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싸웠으며 싸움 도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이 있었다. 윤지의 아버지는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설명했으며, 싸우는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윤지의 어머니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

시나리오 3

■ 사례 3단계

6개월 뒤, 윤지의 어린이집 교사는 윤지의 상황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서 지자체 아동보호 팀에 연락을 하였다. 교사의 말로는 윤지가 유치원에서 자주 불안해하며,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최근에는 밥을 잘 먹지 않아 체중이 줄었다고 하였다. 최근에 어린이집에 입학한 윤수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상담을 위해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눈 주위와 팔에 멍이 있었으나, 한국어가 서툴러 상담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윤지 아버지는 이번에도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넷 ③의 3단계 상황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는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명확한 아동학대 및 배우자 폭력의 근거가 있는 재신고 사례로 판단하며, 아동학대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일부 공무원들은 이 사건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동학대로 판단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근거로 제시했다. 첫째,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한 사례로, 신고자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둘째, 만 3세 아동의 체중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정서학대로 인한 피해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어머니의 신체에 배우자 학대 의심 상흔이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의 태도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학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어린이집 교사도 신고 의무자시거든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고 체중이 줄었다. 이걸 되게, 특히 이, 만 3세 아이가 체중이 준다는 거는 되게 심각한 학대 의심 징후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럴 일이 없어요. (참여자 8)

이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에 의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눈 주위에 팔에 멍이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좀 가정폭력 수위가 좀 상당하다고 느껴졌고요.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부분도 좀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제 좀 상당 수준까지 정서적인 영향이 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아동 학대 판단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참여자 9)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어머니 또한 아동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학대 가해자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의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분리 조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분리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의견은 아동이 아직 어리므로 어머니와 함께 가정폭력 보호 시설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비가해자인 어머니와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친구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어리잖아요. 영유아이고. 근데 이 어린 친구를 저희가 분리를 해보니까, 또 단점도 있어요. 보호를 해주는 부분에 대한 아이를 안전하게 했다, 라는 거는 그래서 엄마와 떨어져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애착 관계나 아이의 발달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건강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게 다 지연되고 있다라는 진단까지 받은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시설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면 물론 거기에 또 전문 인력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좀 어린아이의 시기에는 차라리 어머니 하고 같이 있는 게 아이의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참여자 10)

두 번째 의견은 현장조사를 통해 어머니가 보호자로서 적절한지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함께 분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동만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어머니가 적극적인 보호자가 아니거나, 어머니에 의한 방임이 확인된다면, 자녀들은 별도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대부분 가정폭력이 자기들끼리 화해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엄마도 적절한 보호자로 보기는 어렵다.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아이들만 재분리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여자 3)

분리해야 되는데 아기가 어려서,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분리를 하는 거를 어머니도 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어머니까지 같이 분리하는 거를 쓰긴 했는데. 근데 애들만 따로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머니들이 비자 때문에 다시 아버님께 돌아와요. 결혼 비자로 사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영주권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아빠를 못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위험한데. (참여자 8)

한편,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다문화 가정에서 배우자 폭력과 아동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이들 지역의 일부 응답자들은 어머니가 한국어가 서툴고, 국적 문제 등으로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아, 분리를 시키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분리 조치보다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례관리, 부모교육, 다문화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외국 출신 어머니의 배경 특성을 학대 판단 시 고려하지는 않으나, 아동 분리 시에는 일부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라리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에 이 여자가 아직 귀화를 안 한 그냥 외국인. 아직 한국 문화가 아직 없는 수준이라면, 그냥 그래도 분리 조치하는 게 맞고. 이거는 좀 다문화가족센터랑 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능력치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7)

〈표 5-13〉 【비넷 ③-3단계】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O	O	O
2	O	O	O
3	O	O	O
4	O	O	O
5	O	O	조사 후 사실인 경우 O
6	O	O	O
7	O	O	O
8	O	O	O
9	O	O	O(친모와 함께)
10	X	X	O(가정폭력으로 분리)
11	O	O	O(큰 아이만 분리)
12	O	O	O

라. 【비넷 ④】 학교교사 - 장애아동 - 정서학대 우려

시나리오 4

한 학부모가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전화를 걸어 왔다.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자녀(동욱)를 담임하는 교사인 김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바보', '멍청이' 등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자주 한다고 하였다.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어 학습이 느린 동욱이는 매번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교사의 언행으로 인해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학교에 가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넷 ④ 상황은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한 사례로, 대다수의 응답자는 해당 신고를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일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 접수 전에 학부모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가 업무를 하던 도중에 사실 초등학교 그 문제가 한 번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00초. 그 뒤로도 저희는 또 되게 더 민감하게 좀 봐요. 좀,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만날 수 있는 주변인은 충분히 다 만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학교나 학원이나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는 좀 무조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어쨌든 피해의심아동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신뢰성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참여자 6)

아시겠지만,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작년부터 되게 뜨거운 화재였는데 이게 아이 어머니만의 진술로는 판단은 불가해요. (참여자 8)

신고 건을 접수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다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 또한 학대 판단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조사를 통해 신고된 정보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된 개별 아동뿐 아니라 학급 전체를 포함한 집단 사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대 판단의 주요 요소로는 행위의 반복성('매번 지적', '자주'), 공개적인 비난,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 그리고 피해 아동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등교 거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된 거면 다 아동학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자주 했다. 공개적으로 비난. 요 부분입니다. (참여자 3)

일단 아동이 스트레스받고 있고, 학교에 거부할 정도면은... 그냥 아동에 대한 심리 검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참여자 5)

바보 멍청이를 욕으로 사실은, 구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이런 정서 학대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학대니까 이 애가 진짜 정서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정말 버릇없는 청소년이 부모랑 서로 욕하면서 싸웠어요. 엄마가 욕한 것 아무 상관없다. 나도 욕했으니까. 이러면 정서 학대가 아니예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 받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게 다른 애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 속상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일이 진짜 팩트로 있었다면 정서 학대라고 할 수 있겠죠. (참여자 8)

한편, 특정 지자체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 지자체는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의견서만 통보받는 특수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은 교육청에서 통지된 의견서를 전적으로 따르는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넷 ④에 제시된 수준의 언어 폭력이라면 교육청에서도 ‘의견 없음’(즉, 정당한 학습지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게 00초 사건 이후로 이제 저희가 학교 조사를 하지 않아요... 자치구에서는 이제 진행하지 않고 교육청, 교육감 의견서로 이 사건은 물론 접수는 하지만,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서를 활용해, 그래서 판단을 해야 할 거라면 하고. 현재는 바뀐 이후에는 교육청에 있는 저희처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이 계셔서, 교사에 대한 진행, 조사를 진행,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받는 거예요. (참여자 10)

전반적으로, 00초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에 의한 교사 학대 신고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검토와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응답자 전수가 교육청의 의견서를 참고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청 의견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과 교육청 의견과 상관없이 현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대체로 아동학대 조사 경험이 많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일수록 자신의 판단이 교육청 의견서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는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이것이 현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의견에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영향을 네 저는 안 받습니다. 네네 저의 경우에는, 이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그러니까 적절한 교수법으로 판단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아동학대로 그대로 판결, 판단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경험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런 사례라든지 비슷한 사례들을 이미 경험해 봤고. 그렇게 판단해 와서, 뭐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 뭐 경험도 있을 것이고 했을 때, 이걸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경험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3)
(교육감 의견서가) 거의 100% 영향을 줍니다. (참여자 7)

일부는 교육청 의견서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는 경향이 있어, 학대 판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우며, 교육청 의견서가 오기까지 판단을 지연해야 하는 부담감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몫이 된다고 절차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의한 학대 의심 사례의 경우,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사례회의나 사례결정위원회 등의 공동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교육청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은 정당한, 정당한 학습 지도도. 학습 지도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아직 판단하기 직전인데, 교육감도 정당한 학습 지도라고 하고, 경찰에서도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만 이걸 학대라고 하는 상황이 되게 지금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몇 달째 들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저희가 빨리 또 판단을 못 하는 것이 경찰도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고, 교육감도 끌고. 이게 변호사가 오다 보니, 변호사가 이분들이 즉각적으로 막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아마 시간 끌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참여자 1)

일단 공개적으로 아동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교원이기 때문에. 근데 교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교육감 의견서 받고 있고, 자체 회의가 아닌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서 아동학대 판단하고 있어요. (참여자 2)

아동에게 미친 영향(스트레스와 등교 거부를 호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상황에서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분리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부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교 차원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분리(학급 교체, 수업담당 교체, 동선 분리 등)하게 된다고 응답하였고, 일부는 학교에 요청하여 교사로부터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이게 분리가. 저희가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장이 학교장이 수업을 분리하거나, 동선을 분리하는 경우는 저희는 봤습니다. (참여자 2)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 교사의 수업을 아이가 안 듣게 하는 조치거든요. 그 아이를 사실에 빼는 분리 조치가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면 교사를 잠깐 휴직 처리한다든지, 혹은 다른 반에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애가 다른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듣게 한다. 이런 조치는 학교에서 사실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학교 재량이긴 해요. 학교 재량이긴 한데 보통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민원이 너무 심하니까. (참여자 8)

〈표 5-14〉 【비넷 ④】 학교교사 - 장애아동 - 정서학대 우려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	○	○
2	○	○	X
3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4	○	○	X
5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6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7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8	○	X	X
9	○	X	○
10	X	X	X
11	○	○	X
12	○	○	X

마. 【비넷 ⑤】 한부모가정 - 방임 우려

시나리오 5

한 이웃 주민이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전화를 걸어 왔다. 이웃집에 7세 아이(지수)가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을 자주 비우고 아이를 홀로 남겨두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은 자신의 아이(지수)가 그 7세 아이와 놀이터에서 친해져서, 종종 집에 데려와 함께 놀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이 되어도 아이가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아서 물어보니, “엄마가 일하러 가서 밤늦게 오기 때문에 집엔 아무도 없고, 여기서 더 놀라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이웃 주민이 우연히 7세 아이의 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어 물어보니, 어머니의 직업이 간호사라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날에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4~5시간 정도 집에 혼자 있게 되지만, 자야 할 시간이니 괜찮을 거라고 했다고 하였다.

비넷 ⑤ 상황은 한부모 가정에서 어머니의 야간 근로로 인해 아동이 방치되었다는 신고 사례로, 응답자들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다. 첫째,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 둘째, 접수는 하되 학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셋째, 접수와 학대 판단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먼저, 접수와 판단이 모두 불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보호자가 한부모 가정으로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으며,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방치의 경우, 보호자의 미필적 고의가 매우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학대로 판단할 경우, 해당 가족에게 낙인이 형성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상황의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가 혼자 잘 놀고 들어오고 엄마도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이런 게 그러면 의도는 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일부러 이이를 이 시간까지 있게 막, 혼자 있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어머니의 훈육 방법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어머니도 좀 아이를 좀 혼자 키우는 어머니로서 좀 남에게 안 좋은 인식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개선 교육이 필요하지, 이걸 아동학대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우리가 낙인을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참여자 10)

반면, 접수는 하되 학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응답자들은 아동의 연령이 어린 편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한 신뢰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하되, 이웃 주민의 진술 신빙성, 아동이 실제 방치되었는지 여부, 아동이 혼자 있는 동안 보호자와 연락을 유지하는지, 집에 CCTV 등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방치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아동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 어머니의 학대 인식 및 연계 자원 활용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웃 주민분이란 불화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들 때문에 조금 더 이 사례의 신뢰성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참여자 6)

요 사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조사해 보고 더 위험성이 있는지 이 아이와 대면해보고, 혹시 이전에 뭐 위험 상황이 발생했는데 적절하게 대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이력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복지적인 개입 차원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개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단순히 이 내용만으로는 아동학대로 조금 판단한다, 이 내용만 무조건 판단한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3)

어머님이 이것도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도움 필요 없다. 애 그냥 혼자 잘 있는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어머님이 심각성을 모르시는 걸로 판단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몰랐다 주의하겠다고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식이면 사실은 학대 판단하지 않고, 가정에 조금 보호 지원을 연계해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참여자 8)

한편, 신고 건을 접수해서 방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아동이 7세로 연령이 낮은 점, 야간 시간대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방치 자체보다는 방치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한 응답자는 아동이 여기서 더 놀다 가고 싶다고 말한 점을 들어, 혼자 남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방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거는 일단 아동 연령이 어리고요.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자주 비운다는 거, 혼자 남겨져 있는 거 그런 거 했고, 네 아동도 좀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참여자 5)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방임과 방치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비넷 ⑤ 상황에 의사결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업무 지침상 방임과 방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몇 세 미만은 몇 시간 혼자 두었을 때 방임 등), 보호자의 미필적 고의성이 낮은 상황에서 방임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보호자와 아동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게 사실 항상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방임과 요보호 아동 사이에 있는 그 경계가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여기도 엄마, 이게 방임을 판단을 할 때는 사실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한부모 가정인 것 같고, 엄마가 이제 일을 해야만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아이가 4~5시간 혼자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참여자 9)

〈표 5-15〉 【비넷 ⑤】 한부모가정 - 방임 우려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참여자	접수 판단	학대 판단	분리 결정
1	○	△	X
2	○	○	X
3	○	X	X
4	○	○	X
5	○	○	X
6	○	조사 후 사실인 경우 ○	X
7	○	X	X
8	○	X	X
9	○	X	X
10	X	X	X
11	○	○	X
12	○	X	X

2. 단계별 의사결정 생태체계에 따른 영향요인

이번에는 비넷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신고 접수, 학대 판단, 분리 판단 등의 의사결정의 영향요인을 의사결정 생태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서면 조사 결과와 일대일 인터뷰 녹취록을 연구자가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서, 조사 참여자가 의사결정 단계별로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요인들을 참여자 별로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영향요인을 단계별로 취합하여 의사결정 생태학에 따른 4가지 차원 - 의사결정자 개인 요인, 사례 요인, 조직 요인, 외부 요인 - 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 신고 건의 접수 결정

비넷 조사 결과, 일부 응답자를 제외하면, 과반이 전체 신고 건에 대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 접수하겠다고 응답하여 접수 결정의 선별성을 두지 않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일부 응답자는 신고 건의 접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안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로, 지자체 차원에서 접수가 가능한 수준의 충분한 정보(인적 정보로 특정 가능한가)가 신고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신고 내용에 학대 의심 정황이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접수 결정을 보류한 응답자의 답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생태체계별로 접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분한 결과, 사례 요인, 외부 요인, 개인 요인이 확인되었다. 먼저, 사례 요인으로는 신고 사례의 내용이 충분한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비넷 ①의 1단계에서 피해의심아동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 불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접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는 경찰신고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이 있었다. 정보가 부족한 신고 건(비넷 ①의 1단계)이 들어왔을 때, 경찰은 정보가 희박해도 직접 수사를 통해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12 신고로 유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지자체 내 경찰이 학대 조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개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 신고 건에 대해 112로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개인 요인으로는 이전에 담당했던 유사한 사례 경험이 접수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아동학대 조사 경험이 많은 일부 응답자들에게서 청소년 본인 신고가 허위인 경험,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학대 가해 의심 전화를 많이 받아 본 경험, 이웃 주민의 신고가 층간 소음이나 다른 이해 관계에 얽힌 보복형 신고였던 경험이 많았다. 이들은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접수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신고자의 신고 의도를 먼저 확인한 후에 접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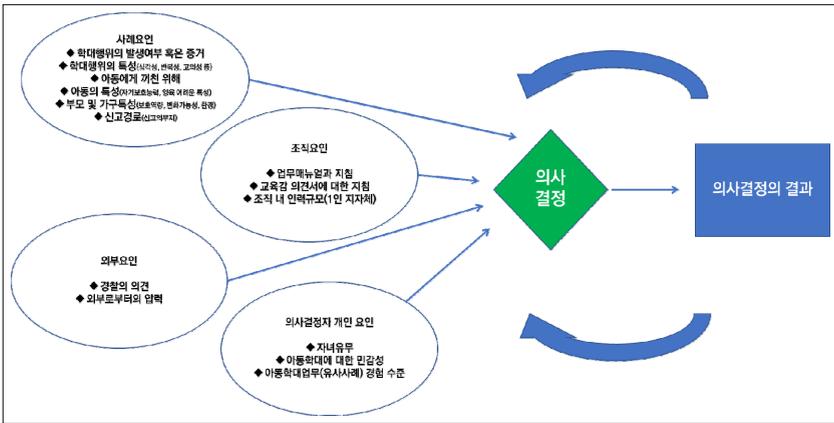
〈표 5-16〉 신고 건의 접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요인

구분	세부 요인	
개인 요인	기존 사례 경험	청소년 본인 신고는 허위인 경험이 많아 접수 전에 내용 확인 필요
		학부모에 의한 교사 학대 신고 민원 경험이 많아 접수 전에 내용 확인 필요
		이웃 주민의 신고는 층간 소음, 보복 등 다른 의도가 있었던 사례 경험이 많아 접수 전에 신고 의도 점검 필요
사례 요인	신고 내용상 정보 부족	
외부 요인	경찰 신고로 접수 유도	소극적인 경찰 개입 유도
		경찰은 수사를 통한 신상정보 확인 가능
		가정폭력 노출 사건은 경찰(가정폭력 담당)이 관할하여 처리하는 것 선호

나. 학대 판단 결정

조사 결과,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자 개인 요인, 사례 요인, 조직 요인, 외부 요인의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요인을 도식화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5-1] 학대 판단의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영향요인



1) 개인 요인

학대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 개인 요인으로는 기존 사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기존 사례 경험은 학대 판단을 수월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저해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일부 참가자는 담당하였던 대부분의 신고가 학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학대 판단이 수월하였으며, 기존 유사 사례의 판단을 많이 해 본 경험을 떠올림으로써 학대 판단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반면, 청소년 본인 신고 건이 거짓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로 밝혀져 민원 폭탄을 받거나, 교사에

의한 학대 의심 신고 건이 학대가 아니었는데 교사는 퇴직해야 했던 경험 등이 있는 응답자들은 비교적 학대 결정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의사결정 이전에 철저한 조사와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응답자들은 자녀 유무, 성격 등도 학대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자녀를 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부모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학대 판단 시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성격이 예민한지 둔감한지에 따라서도 학대 판단의 민감성이 좌우된다고 하였다.

〈표 5-1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개인 요인

구분	세부 요인
기존 사례 경험	기존 유사 사례 판단 경험이 많음
	의심 사례의 진술(청소년 본인 신고, 학부모의 교사 학대 신고)이 거짓이거나 과장이어서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험이 많음
	기존 유사 사례를 경험해 보지 못함
개인 특성	자녀 유무
	민감한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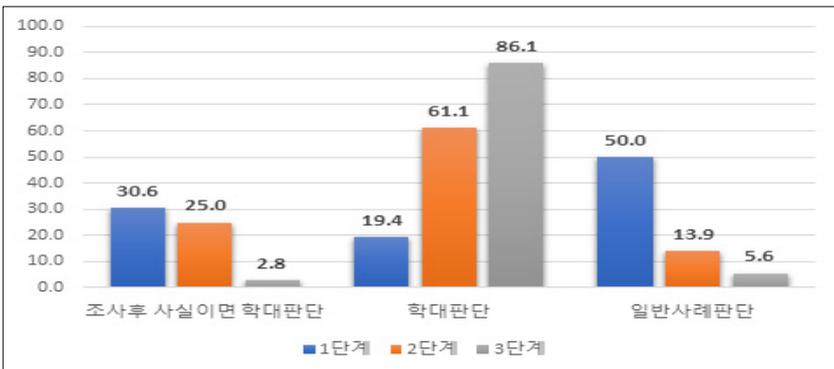
2) 사례 요인

사례 요인으로는 크게 학대 행위, 아동에게 끼친 위해, 아동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신고 경로 특성 등이 학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는 학대 판단의 가장 주요한 기본 요소로 보았으며, 언어 폭력(정서학대), 신체적 학대, 부부싸움 노출(정서학대), 방임 등 비뚤에 제시된 해당 행위가 발생했음이 확인되어야 학대 판단이 가능하였다. 학대 행위의 특성, 즉 행위의 심각성, 행위의 반복성(재신고 등), 행위의 고의성 등도 학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는데, 경미한 학대 행위이거나, 일회성의 행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행위 등은 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경미한 학대 행위인데 반복적으로 신고가 되었거나 일회성 행위의 심각성이 상당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대 행위의 특성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방치 사례의 경우, 사회통념상 방임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넷 ①~비넷 ③은 시나리오의 단계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점차 높아질수록 행위의 심각성, 행위의 반복성, 아동에게 끼친 위해의 수준이 증가한다. 따라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례 요인이 추가되면 학대로 판단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넷 ①~비넷 ③의 1단계에서는 평균 19.4%에 그쳤던 학대 의사결정 비율은 2단계에서 평균 61.1%, 3단계에서 평균 86.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일반 사례 판단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1단계에서 평균 50%였던 일반 사례 의사결정 비율은 2단계에서 평균 13.9%로 3단계에서는 평균 5.6%로 감소하였다.

[그림 5-2] 비넷 ①~비넷 ③ 단계별 응답자의 평균 학대 판단 결정 비율



‘아동에게 끼친 위해’는 신체적 위해와 정서적 위해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신체 상흔, 체중 감소, 아동의 스트레스, 등교 거부 및 분리 희망 의사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신체와 정서를 통해 드러나는 위해는 아동 학대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학대 판단의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의 연령, 장애 여부 등이 자기보호 능력을 의미하므로 아동이 어리거나 장애가 있을수록 학대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향, 문제행동으로서 아동의 분리 희망 의사, 비행 등 학대 유발 요인 같은 ‘양육이 어려운 아동 특성’은 학대로 판단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부모 및 가구 특성’으로는 부모의 보호역량으로 가구 내 비학대 보호자의 유무와 보호역량의 수준 등을 고려하게 되며, 부모의 향후 변화 의지, 학대 인식 수준, 아동 안전에 대한 관심 등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을 위해 평상시 가족관계와 가정 상황 및 환경이 아동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신고 경로’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인 경우, 일부 응답자들은 이를 신뢰가 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반영하는 경향도 보였다.

〈표 5-1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례 요인

구분	세부 요인	
학대 행위	학대 행위 발생 여부	욕설, 폭언, 수치심을 주는 발언(바보, 멍청이 포함), 공개 비난
		때리는 행위, 체벌
		심한 부부싸움 노출
		방임
	학대 행위의 특성	행위의 심각성
		행위의 반복성(재신고 포함)
		행위의 고의성
		사회통념상 학대 행위에 대한 기준 고려

구분	세부 요인	
	학대 행위의 증거	학대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비가해 보호자 진술 일치
아동에게 끼친 위해	신체적 위해	신체상흔(멍, 화상, 멍의 형태)
		체중 감소
	정서적 위해	아동의 스트레스
		등교 거부 아동의 분리 희망 의사
아동 특성	자기보호능력	아동의 연령
		아동의 장애 여부
	양육 어려운 아동	아동의 성향
		문제행동으로서 아동의 분리 희망 의사 비행 등 학대 유발 요인
부모 및 가구 특성	보호역량	부모의 보호역량
		가구 내 비학대 보호자 유무
	변화 가능성	부모의 변화 의지
		부모의 학대 인식 수준
		부모의 아동 안전에 대한 관심
가족관계 및 환경	평상시 부모-자녀 관계 가정 상황	
신고 경로 특성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3) 조직 요인

조직 요인으로는 업무 매뉴얼과 지침, 조직과 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지침과 판례대로 정확히 판단한다고 하였으며,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취합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지침이 신설되어, 교육감의 의견서가 판단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별 교육감 의견서의 반영 비율은 응답자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현장조사부터 100%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따르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교육청의

의견서를 참고만 할 뿐 현장조사와 판단을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가 있었다.

조직과 인력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인인 지자체 혹은 3인 미만인 지자체에서 학대 판단에 대해 상의할 사람이 없어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1인 배치 지자체에서 모든 아동 업무를 혼자 감당하고 있어, 학대에 관한 사안이 접수되어도 밀린 다른 아동 업무를 하느라 학대 사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조직 요인

구분	세부 요인	
업무 매뉴얼과 지침	정부의 지침에 따라 판단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지침과 판례대로 판단
		학교 사례는 교육감 의견서 절차 거침
	지자체와 개인의 차이	지자체 지침으로 학교 사례는 교육청에서 직접 현장조사
교육감 의견서 100% 반영		
조직과 인력	업무(판단) 효율성 저하	교육감 의견서는 참고만 할 뿐 판단은 직접 함
		담당자가 1인인 지자체로 아동 업무를 모두 혼자 감당함
		의사결정을 상의할 사람이 없음

4)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은 경찰의 의견과 외부의 압력으로 구분되었다. 현장조사 시에 경찰의 의견을 듣거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이 선행된 경우, 그러한 판단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된다고 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삭제해도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쉬우며, 통합 사례회의와 같이 외부 전문가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의사결정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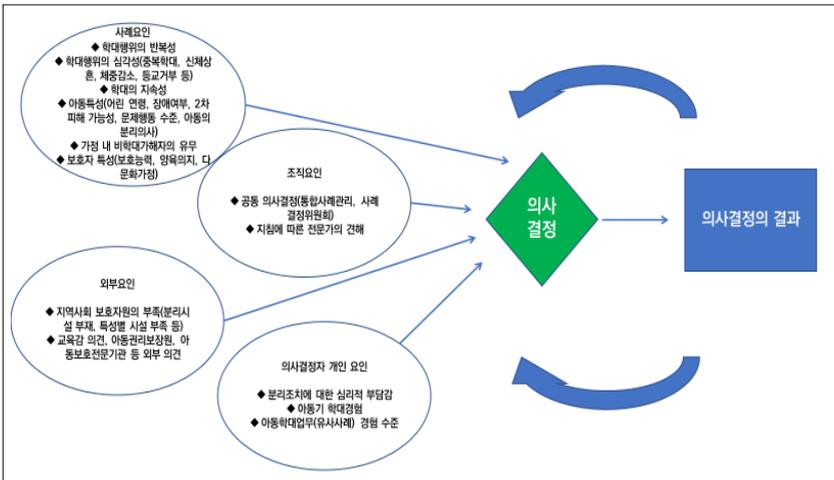
〈표 5-20〉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인

구분	세부 요인
경찰의 의견	경찰의 판단을 참고
	부부싸움에 대한 경찰 조사와 증거 참고
외부로부터의 압력	농어촌 지역일수록 좁은 사회라 통합 사례회의 시에 회의 참석자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들어오기도 함

다. 아동 분리 결정

조사 결과,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자 개인 요인, 사례 요인, 조직 요인, 외부 요인의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요인을 도식화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5-3] 아동 분리의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영향요인



1) 개인 요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개인 요인으로는 기존 사례 경험, 분리 조치에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특성,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 부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존에 비넛에 제시된 사례와 동일한 특성의 사례를 조치했던 경험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 사례 경험은 아동 분리 결정의 임계값을 높이기도 하고(엄격한 결정), 낮추기도 하였다(쉬운 결정).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과 학대의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한 응답자는 원가정 분리가 결국 청소년이나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비넛 ②의 3단계에서도 청소년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 반면, 심한 부부 폭력 사례의 경험이 많은 다른 응답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분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수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아동의 분리가 아동의 학대 판단보다 의사결정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아동의 분리 조치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아동의 분리 조치 결정에 있어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 응답자는 학대 경험이 없는 본인으로서 신체적 학대의 상흔이나, 학대 행위에 대해 들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분리를 고려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표 5-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개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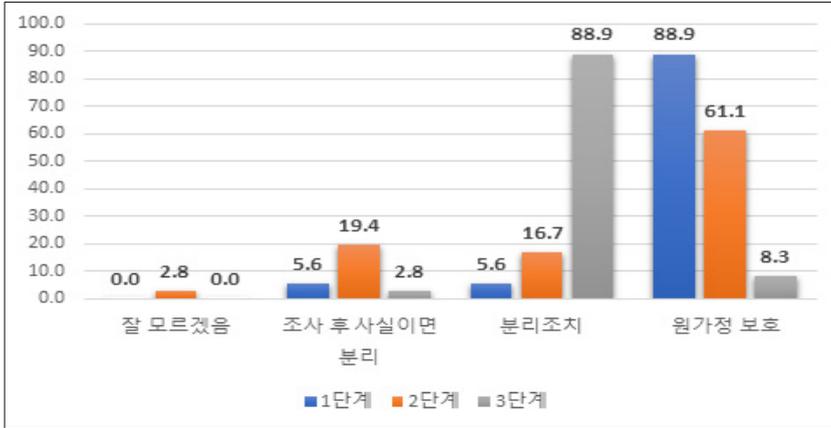
구분	세부 요인
기존 사례 경험	청소년 비행+학대의 복합 사례를 많이 다루어본 경험
	동일한 특성의 사례를 조치했던 경험
	근무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리 조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분리 조치에 대한 감정적 부담과 스트레스
어린 시절 학대 경험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없어서, 신체적 학대로 인한 위해를 적극적으로 고려

2) 사례 요인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사례 요인에는 학대 행위의 심각성, 아동 특성 및 부모 특성 등이 포함되었다. 학대 행위의 심각성은 행위의 반복성, 중복 학대, 학대로 인한 상흔, 체중감소, 등교 거부 등이 있었는지, 학대 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행위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학대 판단의 사례 요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넷 ①~비넷 ③의 아동 분리 조치 결정 비율을 살펴보았다. 비넷 ①~비넷 ③의 1단계에서는 평균 5.6%에 불과하던 분리 조치 결정은 2단계에서 평균 16.7% 이었다가, 3단계에서 평균 88.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원가정 보호 조치 비율은 1단계에서 평균 88.9%이었다가, 2단계에서 평균 61.1%로, 3단계에서는 평균 8.3%로 감소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서 학대 판단 결정보다 분리 조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분리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임계값은 학대 판단의 임계값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다고 추정된다.

[그림 5-4] 비넷 ①~비넷 ③ 단계별 응답자의 평균 아동 분리 결정 비율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 경우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분리를 하기에 어렵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아동이 어릴 경우, 자기보호 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어린 연령에서는 아동의 분리 자체가 트라우마이고 애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의 장애 여부와 2차 피해 가능성, 분리 희망 의사 등은 분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분리의 저해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분리 후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기피하거나 혹은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등으로 인해 아동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 특성’으로는 비학대 가해자의 유무, 보호능력, 양육 의지 등과 다 문화가정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응답자가 비학대 가해자의 유무와 보호 및 양육 능력 그리고 양육 의지가 원가정에서 보호 하도록 결정하는 데에 기여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면 다문화

가정의 외국 출생 보호자의 한국어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리보호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례 요인

구분	세부 요인
학대 행위의 심각성	학대 행위의 반복성(재신고, 반복된 행위)
	중복 학대
	신체적 상흔(화상, 멍)
	체중 감소
	등교 거부
	학대의 지속성(체벌)
	행위의 심각한 수준
아동 특성	아동의 연령(저연령, 고연령-15세 이상 청소년쉼터 자의 입소 가능)
	장애 여부
	2차 피해 가능성(학교)
	문제행동 수준
	아동의 분리 희망 의사
부모 특성	비학대 가해자의 유무와 보호 능력, 양육 의지
	다문화가정(한국어 능력)

3) 조직 요인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조직 요인으로는 학대 행위가 아동에게 끼친 위해에 대한 의료진의 의학적 견해와 통합 사례회의 및 사례결정 위원회 등을 통해 취합된 전문가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 법학, 심리학 등 각 영역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의사결정이 더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2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조직 요인

구분	세부 요인
전문가의 의견	의료진의 의학적 견해(진술)
	통합 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견

4) 외부 요인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으로는 지역 내에 보호시설의 부재 혹은 부족, 그리고 외부 의견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관내에 전혀 없거나 혹은 특성별로 배치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여, 분리 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영아의 경우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위탁가정이 충분하지 않아 가정위탁보호로 일시보호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아동 분리 결정 시에 참고하는 외부 의견으로는 교육감 의견서(학교 사례)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인

구분	세부 요인
지역사회 보호 자원의 부족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조치 어려움
	아동 특성별로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이 관내에 부족하여 어려움
	가정폭력 심터에 남아 연령 입소 제한이 있어 보호자와 함께 분리 어려움
	영유아는 가정위탁보호 절차가 복잡하고, 위탁가정이 충분하지 않아 가정보호할 수 없음
외부 의견 참고	교육감 의견서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자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의

제3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인을 대상으로 비넷 조사와 일대일 인터뷰를 병행하여 가상의 아동학대 신고 상황 및 단계별로 이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특성과 영향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조사 참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자의 개인 요인에 따라 학대 판단이나 아동 분리 의사결정 결과가 상반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학대 업무 경험이 비교적 적은 조사 참여자의 경우 학대 판단과 분리 판단에 비교적 적극적이었으며, 특정 유형의 사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된 경우에는 학대 판단과 분리 판단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둘째, 조사 결과,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조사 참여자별로 아동학대 판단 여부와 분리 여부 결정에 차이가 나타났다. 비넷에 제시된 시나리오 중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청소년 본인 신고 사례, 부부폭력 노출 사례, 교사에 의한 학대 의심 사례, 정서학대 사례 등에서 학대 판단과 아동 분리에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엇갈렸다. 이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판단 기준과 아동 분리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활용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참여자 다수가 아동 분리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데에 반해, 아동 분리 결정 시 척도의 활용 필요성은 없다고 응답하여, 의사결정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척도의 도움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 분리에 대한 척도와 기준을 개선하고, 일관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 신규

인력의 의사결정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조사 참여자들이 경미한 사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해당 가구에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는 학대 판단이 없이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반증한다. 일반 사례에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지원의 선행요인으로 학대판단이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경우, 응답자들은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외국에서의 출생 배경이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아동 분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들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과 연계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사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지자체별로 대응 방식이 상이하였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이 학대피해 발견의 차이로 돌아오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침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현장조사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일부 놓여진 지자체의 경우, 분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하거나 부족하여 분리 조치 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자원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이 배치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배치 인원을 증원하여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방임(방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동 방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준과 척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적 개선 방안

제 6 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아동보호의 국가 책임성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이들이 수행하는 주요 의사결정 업무의 어려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 핵심 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존 이론과 선행연구, 법제도 현황,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외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의 주요 단계와 양상을 파악하였다. 단순한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의사결정 생태체계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 단계별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과 어려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과 당면한 어려움을 의사결정의 정책적 기준과 체계,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의 실천적 경험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사례 종결보다는 학대 판단과 분리 결정의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함에도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호소하고 있었다. 신고 접수 결정은 대체로 비선별적이었으며, 사례 종결 결정은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다. 이들이 아동의 (응급) 분리 결정을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였으며, 분리 조치를 위한 자원에 있어서도 지역적 격차가 나타났다.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감은 업무 경험이 장기화될수록 완화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인력에 대한 배치 전 교육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슈퍼비전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강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수준이 낮아 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전담공무원의 의견도 확인되었다.

2. 국외 사례 분석의 주요 결과

국외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제로 신고된 사례의 접수 선별성을 높여, 과잉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접수를 결정하는 인력의 역할이 크고 전문적이며, 단독 판단이 아닌, 팀 단위(미국)와 다기관 차원(영국)의 의사결정을 활용하여, 학대 판단과 분리 결정에 대한 인력의 소진과 사례 부담을 줄이고, 신고된 아동과 가족을

불필요하게 조사하는 단계로의 진입을 줄이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아동학대의 여부에 대한 결정보다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한다. 학대 판정 이전이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예방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외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과 슈퍼비전 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며 이행되고 있었다. 업무 투입 전에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와 필수로 상의하거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시한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점이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는 경찰-사회복지-의료 등의 기관이 필수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의 위험 수준과 지원 필요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에서 다기관·다전문가 협업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신고 접수-학대 판단-분리보호-사례 종결의 전반적인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다기관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의사결정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의 주요 결과

비넷 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의사결정 현황과 어려움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 분리 결정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제기되었고, 아동 분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척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별로 학대 판단과 분리 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청소년 본인 신고 사례, 부부폭력 노출 사례, 교사에 의한 학대

의심 사례, 정서학대 사례 등에서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결정자 개인 요인에 따라서도 학대 판단이나 아동 분리 의사결정의 결과가 상반되기도 하였는데, 업무 경험의 축적 정도와 사례 관련 경험이 학대 혹은 분리 결정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경미한 사례임에도 서비스 지원과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대 사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학대 판단 없이도 아동학대 관련 전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자원의 부족은 분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분리보호 시설(가정)이 부재하여 아동 분리 결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사에 의한 학대 의심 사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대응 방식에 있어서 지자체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규모에 따른 어려움도 1인 배치 지자체에서 매우 높게 보고되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이 분리 결정 등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아동 방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2절 정책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의사결정 생태체계별로 제안하였다. 의사결정자 개인 요인, 사례 요인, 조직 요인, 외부 요인의 체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과 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개인 요인의 개선 방안

가. 배치 전 사전 교육 - 의사결정 업무 수행 전 수련 기간의 제도화

본 연구 결과 의사결정자 개인의 업무 경험과 사례관련 경험의 축적 정도가 의사결정의 숙련도와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업무 경험의 축적 수준과 개인적인 성향 및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등 의사결정자 개인의 영향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철저한 사전 교육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사전 교육의 수준은 개인 요인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 교육 과정의 내용, 시간(횟수)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전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개발하고 수행될 필요가 있다.

배치 이후에는 본격적인 의사결정 업무의 수행 이전에 현장의 직접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경험이 전무한 인력의 경우, 수련 기간 동안 경력자와 동행하여 의사결정 방법과 노하우를 직접 익히고 터득할 필요가 있다.

배치 전 사전 교육과 의사결정 업무 수행 전 수련 기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신규 배치된 인력이 사전 교육을 받는 동안 의사결정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자와 동행하는 방식의 수련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의 중복배치 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신규 담당자와 경력자 간의 의사결정 격차가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향과 상황(결혼 여부, 자녀 여부, 성별 및 연령,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아동기 학대 경험 여부)의 영향력을 완화하여, 의사결정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코칭 및 슈퍼바이저 인력 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확대가 요구된다. 플로리다주의 슈퍼바이저, 현장 코치(coach/trainer), 현장 자문가(field consultant) 모델을 참고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슈퍼바이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조사업무에 대한 실무적 지원과 승인 기능, 그리고 정서적 지지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슈퍼바이저의 역할 외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코치와 현장 자문가 등 보조적 전문 인력이 기능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현장 코치는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사정, 면담 기법, 서류 작성 등 실무 기술에 대한 실습 지도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현장 조사에 동행하여 실시간 코칭을 제공하고, 이후 후속 피드백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 자문가는 판단이 어렵거나 복잡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사례

회의 등에 참여하여 실천적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장 자문가는 슈퍼바이저처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정서적 지원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복잡한 사례에 대한 컨설팅 및 실천적 조언 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들 인력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과 자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시군구 단위로 이들을 전면 배치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으므로, 권역별 배치, 혹은 고위험 시군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 배치 지역 등 우선순위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의 도입이 5년을 경과하는 현행 시점에서는 슈퍼바이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공인력의 모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만으로 충원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조사 경험 또는 아동보호 실무경력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공공-민간 연계 방식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채용하여 운영하는 형태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2.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사례 요인의 개선 방안

가. 의사결정의 임계점을 포함토록 지침 및 척도의 보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판단 시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은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청소년 본인 신고 사례, 부부폭력 노출 사례, 교사에 의한 학대 의심

사례, 정서학대 사례 등에서 가중되었으며, 본 연구의 비넷 조사 결과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판단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응답자의 주요 의사결정에 편차가 나타난 사례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척도를 정교화하고, 복잡하고 불명확한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침과 자료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이거나 다양한 요인이 의사결정의 기준과 서로 상충하는 사례에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 시 감안해야 하는 사례 요인의 임계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방임 사례에 있어서 지침의 미비로 인해 조사 응답자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임 사례에 대한 판단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의 고의성이 낮은 아동 방치 혹은 방임 사례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선이 제시되어야 한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학대 지수(Child maltreatment index)'를 통해 방임 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요소와 고려 대상이 아닌 요소, 그리고 학대 판단을 위한 검증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아동보호 조사관이 조사 시 참고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 역시 위생, 가정 내 안전, 정서적 감수성 등 방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척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형별 방임 수준을 1단계(낮음)부터 5단계(높음)까지 구분하여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아동의 원가정 분리 의사결정의 척도와 체계 개선 필요

무엇보다 아동 분리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척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대 신고 횟수에 기반한 분리 결정 보다는 아동의 안전여부와 원가정 내에서 개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예: 플로리다주의 ‘안전 계획 분석’)가 제공된다면, 아동학대 판정과는 별도로 아동분리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아동학대 위험도 판단 척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통해 기존 척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외 사례에서는 학대피해로 인한 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을 법원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아동 분리 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일반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 분리(즉각 분리)에 대해서 법원의 사후 확인(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경미한 사례 지원을 위한 차등적 대응체계 및 예방적 서비스 확충

본 연구 결과, 일부 사례의 경우 경미한 사례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대 사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제도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어야만 심리치료, 부모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 등의 대상이 된다. 일반 사례에 대해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기지원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상 사례와 사업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외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부모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 등의 서비스 지원이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사례 판단 전에 서비스 제공과 일반 사례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향후 경미한 사례에 있어서 학대 판단 없이도 아동학대 관련 전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동학대 판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수월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의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이주연 외, 2023), 경미한 사례에 대한 학대판단 대신 안전보장과 지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과 연계가 보장될 필요

국의 선행연구에서 인종은 아동학대 판단과 분리 판단의 적극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guire-Jack et al., 2020, Dettlaff et al., 2011), 본 연구의 비넷 조사 결과에서도 몇몇 응답자의 다문화가정 아동 분리 결정은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례 대상이 다문화 가정인 경우,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외국 출생 보호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아동학대 판단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를 대부분 감안하지 않았으나, 아동 분리 결정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학대피해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로 신고된 다문화가정과 외국 출생 보호자의 다층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서비스가 연계되고 보장될 필요가 있다. 외국 출생 보호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가정 내 아동의 보호역량 또한 강화하고, 아동 분리 결정의 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다문화가정 내 학대피해아동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지원의 확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조직 요인의 개선

가. 지자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규모를 충분히 확보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이 배치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해당 전담공무원은 주요 의사결정 단계별로 단독 결정을 하기도 하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거나 슈퍼비전을 받을 수 없어 의사결정을 할 때 더 큰 부담을 느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가 1~2인인 지자체는 통상 지자체 내 아동 수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등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배치된 인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풍부한 사례 경험이나 의사결정 경험을 축적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들 지역의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학대 판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적어도 3인 수준까지 증원할 필요가 있다.

나. 순환보직체계의 단점 완화 방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업무단절, 의사결정의 전문성 악화, 업무 경험이 부족한 인력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기피 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승진에 대한 가점 및 추가 수당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대일 인터뷰 결과 그러한 조치들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감수하는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에 비하면,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 및 의사결정 경험이 있는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조사 결과, 한 지자체의 경우 전문경력관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전문경력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슈퍼바이저 직급에 전문경력관 제도가 활용되어야 하며, 차츰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 슈퍼비전의 체계화: 슈퍼바이저 제도 도입

앞에서 제안한 슈퍼바이저와 현장코치, 현장자문가는 의사결정의 개인차를 완화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숙련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학대 사례가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사례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의사결정 현장에서 전문지식의 활용도와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기 어렵다. 국외에서는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주요 의사결정 시, 면밀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 내에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슈퍼비전은 의사결정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의 개인차를 상쇄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고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례별, 상황별 의사결정에 필요한 슈퍼비전이 수시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 슈퍼비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지자체 조직 내부에 슈퍼비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슈퍼바이저’라고 지칭하는 인력이 조직 내에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정부가 2024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아동학대 대응 핵심 요원제도는 슈퍼바이저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시범적으로 검토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요원의 규모는 소수로, 수시로 필요한 슈퍼비전을 제공하기에는 접근성 등의 제약이 크고, 이들 또한 지자체 내에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현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슈퍼비전 업무만을 집중할 수는 없는 체계이다. 따라서 지자체 조직 내부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적인 검토 의견과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슈퍼바이저의 역할, 자격 및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립하여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슈퍼바이저로 채용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 학대 피해아동 보호 인력 대비 슈퍼바이저의 적정 비율 및 인원 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슈퍼비전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슈퍼비전이 반드시 요구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사항 및 시한 등을 매뉴얼에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의사결정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외 사례에서와 유사하게 학대 판단, 아동 분리 등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슈퍼비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지자체별 대응 방식이 상이한 절차의 개선

조사 결과, 특정 지자체에서는 교사에 의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교육청에서 수행하였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받아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의 인력은 교육청 현장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적으로 부여된 현장조사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학대 판단 결정의 핵심 근거 자료가 되는 현장조사가 제3의 주체에 의해서 수행된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의심아동을 직접 만나지 못한 채 조사된 자료만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보호 조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침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현장조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교,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교정시설 같은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조사는 기관 조사로 명명하고, 기관 조사는 일반 아동보호 조사관이 아니라 특수기관조사팀(Specialized institutional investigation unit)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가 가정 내 학대와는 조사 대상, 조사 내용, 평가도구, 협력기관, 법적 대응 등이 상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뿐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조사의 일관성 및 개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관 조사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외부 요인의 개선

가. 신고 접수 단계의 개선

국내 아동학대 신고 사례의 접수 결정은 대체로 비선별적이었으며, 신고 내용에서 학대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만 일반상담 사례로 제외되는 등 접수되지 않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에서는 신고 사례에 대한 접수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이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 기준 및 선별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심각한 해(significant harm)’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보호 조사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또한 신고 접수 매뉴얼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고 접수를 받는 핫라인 상담사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학대 의심 사례 접수의 일관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 신고 접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선별성을 높이는 이유는 과잉 조사로 인한 인력의 피로도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신고된 대상자의 거부감을 완화하며, 실제 학대 위험이 높은 사례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었다.

국내에서도 신고 접수 단계의 선별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판단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2023년 기준 56.2%), 그만큼 일반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의사결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추가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학대 의심 사례의 선별 적합성을 제고하고, 행정 자원의 낭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의사결정 단계별 다기관 논의체계 강화

국내 아동학대 판단과 아동 분리 및 사례 종결 등의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통합 사례회의 및 사례결정위원회 등 다기관·다전문가가 논의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의사결정 단계별로 필수적으로 협업해야 하는 기관(전문가)의 범위나 다기관 논의 수행 시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 사례의 경우 다기관 논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체가 사회복지-사법-의료 기관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의 상황과 사례 요인을 고려하여 논의에 참여할 기관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전체 접수 사례를 대상으로 다기관 논의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접수된 사례 중 지자체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 통합 사례회의와 사례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적용되는 사례가 제한적이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대응 초기 단계에 다기관 논의를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사회복지, 경찰, 보건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한 후 아동보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조사 초기부터 기관 간의 정보가 공유되어 중복조사나 정보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지만, 이후에는 각 기관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정보 공유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 초기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경찰, 보건·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다기관·다전문가 협업을 중시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의료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아동의 위험 수준과 지원 필요성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아동보호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종결까지 주요한 의사결정 단계별로 다기관 논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사회 내에 보호 자원의 격차 해소

조사 결과,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아동분리 보호를 위한 자원(시설 및 가정위탁 등)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일부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분리 결정에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였다. 전국적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과 위탁 가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자원이 부족하여 아동의 분리 결정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안전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사회에 따라 아동을 적절하게 분리보호할 수 있는 자원이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 시 아동이 위험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데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강지영, 장화정, 김경희, 김미경. (2017). 가정 내 영유아학대사례의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 : 학령기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이해를 병행하여. **아동과 권리**, 21(2), 177-202. <https://doi.org/10.21459/kccr.2017.21.2.177>
- 강지영.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7), 1-33. <https://doi.org/10.24300/jkscw.2019.09.67.1>
- 관계부처 합동. (2023).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 김기현, 염동문, 유비. (2019). 현장 아동학대위험도 평가기반 학대발생가족 유형화 연구. **피해자학연구**, 27(1), 163-189.
- 김민주, 배소라. (2022). 부산지역 공공아동체제 현황 및 발전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김세원, 강현아, 정익중. (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학대 일반사례 대응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4(3), 1-32. <https://doi.org/10.19034/KAYW.2022.24.3.01>
- 김세원, 김지혜, 김경희.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결정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3), 33-68. <https://doi.org/10.22867/kaqsw.2019.13.3.33>
- 김세원, 박지명, 김경희. (2020).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과 권리**, 24(4), 665-690.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65907>
- 김호현. (202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제도적 문화기술키. **한국아동복지학**, 73(3), 31-69.
- 김유승. (2024.09.18.) 1년만에 짊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평균 근속 14.9개월, 뉴스1. <https://www.news1.kr/economy/trend/5543095>
- 박용치, 송재석. (2006). **최신 행정학원론**. 서울: 경세원.

- 배태상, 이희영. (202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경찰학연구**, 22(1), 135-158.
- 보건복지부. (2018-2022).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1&conn_path=I2,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I - 아동학대조사.
- 보건복지부. (2021-2022).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1&conn_path=I2,
- 보건복지부. (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4a).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 보건복지부. (2024b).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보건복지부. (2025).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n.d.).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 로부터 인출
- 구 아동복지법(2025.4.1. 법률 20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20218호 (2024).
- 아동복지법 시행령(2024. 10. 22.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4952호 (2024).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2. 20., 법률 제205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19832호 (2023).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2.12.27. 일부 개정) 제10조제2항, 법률 제19101호 (2022).
- 오석홍. (2007). **행정학 제3판**. 박영사.
- 윤선길. (2015). **휴리스틱과 설득**.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수재, 이민호, 채종현. (2008).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 이경은, 김미정. (201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분리보호 수행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207-234.
- 이경은, 염동문, 김미정. (2014).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 89-118.
- 이경은, 염동문, 김미정, 김경희, 장화정. (2017). 아동학대 위험사정 문항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3(3), 73-100.
- 이승현, 탁희성, 류정희, 이주연, 소라미, 손여옥, 김예원. (2022). **아동학대 초기 대응 강화방안 연구: 수사체계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은주, 김미숙, 고윤정. (202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도입 후 아동학대 대응 현장 분석. **동광**, 118(1), 29-57.
- 이재혁. (2022.09.08.). **아동학대는 매년 느는데...지자체 88%, 전담 공무원 배치 '미충족'**. 메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3464718610>
- 이주연, 한선희, 박세경, 양미연, 손여옥, 서영민. (2023). 해외아동학대 대응체계 탐색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선. (2021). 공공 아동보호체계의시군구 운영 현황: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동광**, 116, 80-96.
- 이혜진, 성유경, 강채련. (2024). 경상남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지원 방안. 경남연구원.
- 장영인. (2022).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3(3), 51-83.
- 전민경, 손선옥, 임예슬. (2020). 경기도 공공형 아동학대 대응모델 개발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선옥, 김형태, 김미숙, 공영숙, 이수천. (2023).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43(2), 215-232.
- 초·중등교육법(2023. 10. 24., 일부 개정), 법률 제19740호 (2023).
- 참여연대. (2021.5.1.) 아동권리 관점에서 바라본 개편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와

- 과제.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93412>.
-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1&conn_path=12
- 현진희. (2015). 한국과 미국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사정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Akin, B. A. (2011). Predictors of foster care exits to permanency: A competing risks analysis of reunification, guardianship, and adop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6), 999-1011.
- Allan, H., Hollinshead, D., Rockwell, K., Ender, K., Antwi-Boasiako, K., O'Leary, D., ... & Fluke, J. (2025). Illuminating the complexity of decision making in child welfare using the decision making ecology: A scoping review.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8121.
- Argyll & Bute Council. (n.d). Convening and participating in Interagency Referral Discussions (IRD).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4>
- Argyll & Bute Council. (n.d). Identifying Child Protection Concerns.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0>
- Argyll & Bute Council. (n.d). Making a Child Protection Referral.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1>
- Argyll & Bute Council. (n.d.). *Inter-agency Referral Discussions* [PowerPoint slides].
- Argyll & Bute Council. (n.d.). *The Child Protection Process* [PowerPoint slides].

- Argyll & Bute Council. (n.d.). Time table 2023 [Word document].
- Argyll & Bute Child Protection Committee. (2023). Participating in child protection planning meetings & core groups practice note. Retrieved from <https://www.argyll-bute.gov.uk/sites/default/files/2023-05/PARTICIPATING%20IN%20CHILD%20PROTECTION%20PLANNING%20MEETINGS%5B827%5D.pdf>
- Argyll & Bute Council. (2024). Conducting joint investigative interviews. Retrieved December 17, 2024, from <https://www.argyll-bute.gov.uk/social-care-and-health/child-protection/step-by-step/argyll-and-bute-multi-agency-child-2>
- Ayrshire and Arran. (n.d.). Child protection planning meeting (CPPM) for parents/carers. Retrieved September 17, 2024, from <https://hscp.south-ayrshire.gov.uk/article/52199/Child-Protection-Planning-Meeting-CPPM-for-parents-carers>
- Bartelink, C., Van Yperen, T. A., Ten Berge, I. J., & Knorth, E. J. (2021). The use and usability of decision-making theory in child welfare policy and practice. *Decisionmaking and judgement in child welfare and protec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37-262.
- Barter, C., & Renold, E. (2000). 'I wanna tell you a story':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vignettes in qualitative research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3(4), 307-323.
- Baumann, D. J., Fluke, J. D., Dalglish, L., & Kern, H. (2014). The decision-making ecology. From evidence to outcomes in child welfare: An international reader, 24-40.
- Benbenishty, R., & Fluke, J. D. (2021). Frameworks and models in decision-making and judgment in child welfare and protection.

- In Decision-making and judgment in child welfare and protection (pp. 3-26). Oxford University Press.
- Brunnberg, E., & Cedersund, E. (Eds.). (2013). New tools in welfare research. NSU press.
- Children Act 1989 제31조 10항 (1989).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section/31#:~:text=%E2%80%9CCharm%E2%80%9D%20means%20ill%2Dtreatment,physical%20or%20mental%20health;%20and>
- Children (Scotland) Act 1995 제76조 1항 (1989).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5/36/contents>
- Children's Hearing Scotland. (n.d.). Volunteer with us. Retrieved September 17, 2024, from <https://www.chscotland.gov.uk/volunteer-with-us/>
- Children's Hearings (Scotland) Act 2011. (2011).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asp/2011/1/section/37>
- Citizens Advice Scotland. (n.d.). Children who are looked after by the local authority. Retrieved September 17, 2024, from <https://www.citizensadvice.org.uk/scotland/family/children-and-young-people/children-who-are-looked-after-by-the-local-authority-s/>
- Cross, T. P., & Casanueva, C. (2009). Caseworker judgments and substantiation. *Child Maltreatment*, 14(1), 38-52. <https://doi.org/10.1177/1077559508318400>
- Dettlaff, A. J., Rivaux, S. L., Baumann, D. J., Fluke, J. D., Rycraft, J. R., & James, J. (2011). Disentangling substantiation: The influence of race, income, and risk on the substantiation decision in child welf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9), 1630-1637.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11.04.005>

- Devaney, J., Hayes, D., & Spratt, T. (2017). The influences of training and experience in removal and reunification decisions involving children at risk of maltreatment: Detecting a 'beginner dip'.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7*(8), 2364-2383.
<https://doi.org/10.1093/bjsw/bcw175>
- Dundee Child Protection Committee. (n.d.). What to expect when your child is involved in a child protection investigation. Retrieved August 8, 2024, from <https://www.dundeeprotectschildren.co.uk/useful-information-parent/investigation#:~:text=It%20shall%20be%20carried%20out,review%20panel%20will%20be%20final>
- English, D. J., Marshall, D. B., Coghlan, L., Brummel, S., & Orme, M. (2002).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substantiation decision in Washington State Child Protective Servi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4*(11), 817-851.
- Evans, S. C., Roberts, M. C., Keeley, J. W., Blossom, J. B., Amaro, C. M., Garcia, A. M., ... & Reed, G. M. (2015). Vignette methodologies for studying clinicians' decision-making: Validity, utility, and application in ICD-11 field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15*(2), 160-170.
- Florida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ies. (n.d.). Module 2: Present and impending danger, child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capacity.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kids/kids-training/trainers-corner/florida-safety-methodology-elearning-modules>
-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5a). Module 5: he Family Functioning Assessment - Investigation and Safety Planning.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3-10/Modu>

le%205%20The%20FFA%20Investigation%20and%20Safety%20Planning%20_TG_03202015.pdf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5b). Module 8: Safety and risk.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3-10/Core-M8PG.pdf>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a). CFOP 170-2. Completing hotline intake assessment.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3-09/CFOP%20170-02%20Completing%20Hotline%20Intake%20Assessment.pdf>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b). CFOP 170-9. Family assessment and case planning.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3-09/CFOP%20170-09%20Family%20Assessment%20and%20Case%20Planning.pdf>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3c). Results-Oriented Accountability (ROA) annual performance report 2022-23.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3-11/ROA%20Annual%20Performance%20Report%202022-23.pdf>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a). CFOP 170-1: Florida child welfare practice model.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4-06/CFOP%20170-01%20Florida%20Child%20Welfare%20Practice%20Model_0.pdf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b). CFOP 170-4. Child maltreatment index. Retrieved from

-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2-12/cfop_170-04_child_maltreatment_index.pdf
-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c). CFOP 170-5. Child protective investig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4-04/CFOP%20170-05%20Child%20Protective%20Investigations.pdf>
-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4d). CFOP 170-7. Develop and manage safety plans. Retrieved from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4-01/CFOP%20170-07%20Develop%20and%20Manage%20Safety%20Plans.pdf>
- 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n.d). Safety Intervention Across the Child Welfare System. <https://www.myflfamilies.com/sites/default/files/2023-10/Core-PostersSafetyInterventionAcrossCWSystem.pdf>
- Florida Statutes § 39.01 (2024). Definitions. Retrieved from <https://www.flsenate.gov/Laws/Statutes/2024/39.01>
- Florida Statutes § 39.201 (2024). Mandatory reports of child abuse, abandonment, or neglect; Mandatory reports of death. Retrieved from <https://www.flsenate.gov/Laws/Statutes/2024/39.201>
- Fluke, J. D., Corwin, T. W., Hollinshead, D. M., & Maher, E. J. (2016). Family preservation or child safety? Associations between child welfare workers' experience, position, and perspectiv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9, 210-218.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6.08.012>
- Fluke, J. D., López, M. L., Benbenishty, R., Knorth, E. J., & Baumann, D. J. (Eds.). (2021). Decision-making and judgment in child welfare and protec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Font, S. A., & Maguire-Jack, K. (2015). Reprint of "Decision-making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Influences at multiple levels of the social ecology". *Child abuse & neglect*, 49, 50-62.
<https://doi.org/10.1016/j.chiabu.2015.10.011>
- Font, S. A., & Warren, E. J. (2013). Inadequate housing and the child protection system respons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11), 1809-1815.
- Freeman, J. B., Levine, M., & Doueck, H. J. (1996). Child age and caseworker attention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investigations. *Child Abuse & Neglect*, 20(10), 907-920.
[https://doi.org/10.1016/0145-2134\(96\)00080-4](https://doi.org/10.1016/0145-2134(96)00080-4)
- GIRFEC Aberdeenshire. (n.d). The National Practice Model.
<https://www.girfec-aberdeenshire.org/about-girfec/how-we-work/>
- Graham, J. C., Dettlaff, A. J., Baumann, D. J., & Fluke, J. D. (2015). The decision making ecology of placing a child into foster car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Child abuse & neglect*, 49, 12-23.
- Grimaldi, V., Pérez-Padilla, J., Garrido, M. Á., & Lorence, B. (2019). Assessment and decision-making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Risk situations kept-at-home versus out-of-home care. *Child Indicators Research*, 12, 1611-1628.
- Hainmueller, J., Hangartner, D., & Yamamoto, T. (2015). Validating vignette and conjoint survey experiments against real-world behavi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8), 2395-2400.
- Horwitz, S. M., Hurlburt, M. S., Cohen, S. D., Zhang, J., & Landsverk, J. (2011). Predictors of placement for children who initially remained in their homes after an investigation for abuse or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35(3), 188-198.

- Hyun, J., & Adams, S. R. (2016). A comparative study of child abuse risk assess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0(2), 210-224.
- Janis, I. L. (1989). *Crucial decisions: Leadership in policymaking and crisis management*. Simon and Schuster.
- Janis, I. L., & Mann, L. (1977).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Free press.
- Jent, J. F., Eaton, C. K., Knickerbocker, L., Lambert, W. F., Merrick, M. T., & Dandes, S. K. (2011). Multidisciplinary child protection decision making about physical abuse: Determining substantiation thresholds and bias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9), 1673-1682.
- Keddell, E., & Hyslop, I. (2020). Networked decisions: Decision-making thresholds in child protec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50(7), 1961-1980. <https://doi.org/10.1093/bjsw/bcz131>
- Khoo, E. G., Hyvönen, U., & Nygren, L. (2003). Gatekeeping in child welfare: A comparative study of intake decisionmaking by social workers in Canada and Sweden. *Child Welfare*, 82(5), 507-525. <https://www.jstor.org/stable/45390139>
- Kopasz, M., Bartus, T., & Husz, I. (2024). The role of the family's ethnicity and correlates in social workers' risk perceptions: Evidence from a vignette study in Hunga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6, 107950.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4.107950>
- Maguire-Jack, K., Font, S. A., & Dillard, R. (2020). Child protective services decision-making: The role of children's race and county fac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90(1), 48-62. <https://doi.org/10.1037/ort0000388>

- McNellan, C. R., Gibbs, D. J., Knobel, A. S., & Putnam-Hornstein, E. (2022). The evidence base for risk assessment tools used in US child protection investigations: A systematic scoping review. *Child Abuse & Neglect, 134*, 105887.
- McSweeney, L. W. (2010).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6*(1), 238-258.
https://static.aminer.cn/upload/pdf/1700/343/450/53e9a23fb7602d9702b47f9c_0.pdf 로부터 인출
- Munro, E. (1999). Common errors of reasoning in child protection work. *Child abuse & neglect, 23*(8), 745-758.
- Scottish Children's Reporter's Administration. (n.d.). Questions and answers. Retrieved August 28, 2024, from
https://www.scra.gov.uk/young_people/questions-and-answers/
- Scottish Government. (2019). Protect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Child protection committee and chief officer responsibilities. Retrieved July 10, 2024, from
<https://www.gov.scot/publications/protecting-children-young-people-child-protection-committee-chief-officer-responsibilities/pages/2/>
- Scottish Government. (2022).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 (GIRFEC). Retrieved July 8, 2024, from
<https://www.gov.scot/policies/girfec/>
- Scottish Government. (2023a). National guidance for child protection in Scotland 2021 - updated 2023. Retrieved July 8, 2024, from
<https://www.gov.scot/publications/national-guidance-child-protection-scotland-2021-updated-2023/documents/>
- Scottish Government. (2023b).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Scotland: 2021 to 2022. Retrieved July 24, 2024, from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hildrens-social-work-statistics-scotland-2021-22/pages/child-protection/>
- Scottish Government. (2023c).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 (GIRFEC): Child's plan - practice statement. Retrieved August 28, 2024, from <https://www.gov.scot/publications/getting-right-child-girfec-practice-statement-girfec-childs-plan/pages/3/>
- Scottish Government. (2024). Children's social work statistics 2022-23 - Child protection. Retrieved July 28, 2024, from <https://www.gov.scot/publications/childrens-social-work-statistics-2022-23-child-protection/documents/>
- Stokes, J., & Schmidt, G. (2011). Race, poverty and child protection decision mak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1(6), 1105-1121.
- Stokes, J., & Taylor, J. (2014). Does type of harm matter? A factorial survey examining the influence of child neglect on child protection decision-making. *Child care in practice*, 20(4), 383-398. <https://doi.org/10.1080/13575279.2014.905456>
- The City of Edinburgh Council. (2023). Edinburgh and the Lothians multi-agency child protection procedures.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25). Child Maltreatment 2023. Retrieved from <https://acf.gov/cb/report/child-maltreatment-2023>
- Vanderfaeillie, J., Van Holen, F., Verheyden, C., Van Puyenbroeck, B., & Benbenishty, R. (2023). Decision-making on out-of-home care: The case of Flande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55, 107288.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3.107288>
- Wells, S. J., Lyons, P., Doueck, H. J., Brown, C. H., & Thomas, J. (2004). Ecological factors and screening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10), 981-997.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04.05.002>

Yelick, A. (2018). Decision making: An experimental study examining potential child welfare professionals' biases of family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부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1차 심층인터뷰 조사표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쟁점 파악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일대일 인터뷰 질문지(1차)

■ 심층 인터뷰 질문

1.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의심사례로 접수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19 신고 후 경찰 판단 / 지자체 신고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판단 후 아동학대의심 사례로 접수되는 사례에서 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기준은?
 -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사례들인지?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판단주체, 사례판단 기준, 아동학대 판단척도의 현장 적용 등과 관련된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례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부 요인, 내부 요인 등)
 - 사례판단을 하는데 어려운 점, 지원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사례들은 주로 어떠한 사례들이며, 사례판단을 위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학대피해아동 분리 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판단주체, 분리결정의 기준 등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분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부 요인, 내부 요인 등 포함)
 - 분리 결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 지원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 원가정 분리로 결정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사례들은 주로 어떠한 사례들이며,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사례 종결 경험은 어떠합니까?
 - 판단주체, 종결 기준 등을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례종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부 요인, 내부 요인 등 포함)
 - 사례종결 결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 지원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 종결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사례들은 주로 어떠한 사례들이며,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308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5.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다양한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결정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 의사결정 단계별 슈퍼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학대판단-분리보호결정-사례종결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교육, 기존 업무경력, 학력 등은 신고접수-학대판단-분리보호결정-사례종결 등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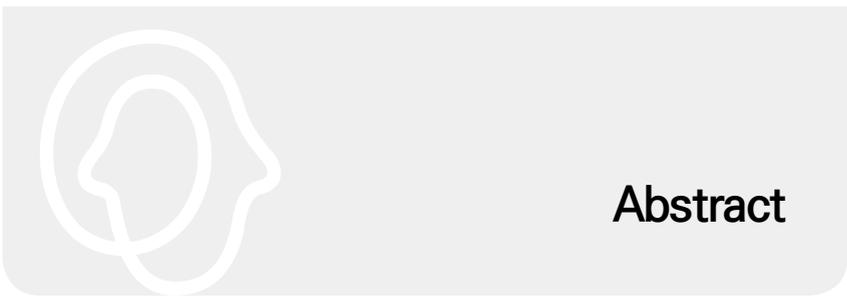
- 인터뷰 내용은 2차 심층인터뷰에 활용할 가상 시나리오 및 아동학대 현장전문가 대상 서면조사 문항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학력	1) 고졸 이하 2) 2-3년제 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전공	1) 사회복지 2) 아동복지 및 아동학과 3) 보육학과 4) 심리학과 5) 기타(구체적으로:)
자격증 취득 현황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기타(구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경력	년 개월
		공무원 경력	년 개월
아동학대 관련 업무경력	년 개월	아동학대전담공 무원 경력	년 개월
		직급	

■ 기타사항

지자체 특성 ①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지자체 특성 ②	1) 아동학대 판단율 2) 아동분리 판단율 3) 신고접수에서 사례종결까지의 평균 기간
지자체 내 아동학대전담공 무원 배치인원	명	담당업무	1) 아동학대업무 2) 기타 업무 (구체적으로:)



Abstract

A Study on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 Abuse Victims

Project Head: Lee, Juyeon

Child protection workers in local government confront situations where children are at risk of maltreatment. Part of their role involves protecting these children by making decisions that are often influenced by multiple factors, such as the worker's prior experiences, the agency and local contexts, a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case. However, not enough resear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caseworkers make decisions and which factors influence them since 2020, when the public sector replaced private caseworkers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public child protection workers in local governments. It aim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these workers and develop measures to improve both the means and the outcomes of their decision-making. To achieve this, this study first reviews relevant prior research, theoretical models, and concepts related to child protection decision-making, including Decision Making Ecology (DME). Secondly, it examines the public child maltreatment response system and explores child protection workers' decision-making experiences during various work processes,

Co-Researchers: Ryu, Jeonghee · Yang, Miyeon · Baek, Jiseon · Jo, Hwiraе · Yang, Eunjeong

such as intake, substantiation, removal, and case closure.

Thirdly, 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child protection workers in Florida, US, and Scotland, UK, to draw lessons that may be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Lastly, a vignette method is employed, involving interviews with 12 child protection worker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decision-making at various levels of DME.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an effective job training system for caseworkers prior to role assignment and a supervision system to reduce decision-making gaps due to varying levels of work experience. Incentives for workers, along with a specialized career track for caseworkers, should be expanded, and detailed decision-making guidelines need to be developed. In add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ecision-making, the procedures for intake and child removal should be enhanced.

Key words: Child Maltreatment, Child Protective Service Decision-Making, Investigative Workers' Decision-making Experience, Vignette Study